

2022 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시행사업 세부 매뉴얼

제 ① 장

**2022년  
인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 변경사항**

## 2022년 인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주요 변경사항

※ 아래 도표는 1월 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히 나타낸 것이며 이후 연중 발생한 변경사항은 함께 첨부된 '시행사업 세부매뉴얼 수정 및 개정사항'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사업명	실시지역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 검사도구)	①사전,사후검사 (연 2회) ▶ 미 취 학 아 동 : 포 테 이 지 검 사 , KISE-BAAT 총2종 ▶ 취학아동: KISE-BAAT시행 ②인지학습 ③학부모상담 및 서비스 수행내용 설명 및 욕구조사 ④월별 사례회의	①사전,사후검사 (연 2회) ▶ 미 취 학 아 동 : 포 테 이 지 검 사 ( <u>필수</u> ), KISE-BAAT <u>또는 NISE-B·ACT</u> ▶ 취학아동: KISE-BAAT <u>또는</u> <u>NISE-B·ACT</u> ②인지학습 ③학부모상담 및 서비스 수행내용 설명 및 욕구조사 ④월별 사례회의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중복제한	사회성증진을 위한 또래교실(부평구),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자녀언어발달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생정신건강심층검사 및 진료비 지원사업(인천시 교육청)	<u>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u> , 사회성증진을 위한 또래교실(부평구),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자녀언어발달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생정신건강심층검사 및 진료비 지원사업(인천시 교육청)
			제공인력 자격기준 ( <u>슈퍼바이저</u> )	21년도 진입 제공기관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며 대표자, 관리책임자, 제공인력과 함께 아래기준을 충족하는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포함하여 구성해야 함(대표자나 제공인력이 아래자격을	<u>제공기관은 제공기관의 인력(대표자, 제공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해야 함.(외부 초빙 인정불가)</u> - 심리, 상담, 언어·놀이·미술·인지재활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p>충족하는 경우 겸직가능)</p> <p>- 심리, 상담, 언어·놀이·미술·인지재활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이면서 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p> <p>※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의 경우 권고사항임.</p>	<p>전공 학사학위 이상이면서 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p> <p>※2021년도 진입 제공기관부터 적용(1인 이상)</p> <p>※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의 경우 권고사항임.</p>
3	성인심리상담서비스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연령기준	만 18세 이상	<u>만 19세 이상</u>
			우선순위	<p>1: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2:신청하고자 하는 세부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3: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p>	<p>1: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2:신청하고자 하는 세부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3: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u>임산부(산모수첩, 임신확인서 택1 제출), 자녀연령이 만 3세미만인 출산모</u></p>
			중복제한	-	<u>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미추홀구)</u>
4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중복제한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미추홀구)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미추홀구), <u>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상담서비스</u>

5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기준중위소득 <u>150%이하</u>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및 선정기준	<p><b>다음 ①,②,③,④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b></p> <p>①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p> <p>②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p> <p>③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자 중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 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p> <p>④6개월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추천공문 제출)</p> <p>*④는 우선 선정대상이며, 선정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p>	<p><b>다음 ①,②,③,④,⑤,⑥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b></p> <p><b>(중략)</b></p> <p><u>⑤임산부(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u></p> <p><u>⑥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택1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출산 후 2년 미만자</u></p>
			등급기준	단일등급	<p>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p> <p>2등급: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p>

					<p>급자가 아닌 자</p> <p>3등급:기준중위소득 120%초과~140% 이하</p> <p>4등급:기준중위소득 140%초과~150% 이하</p>
			정부지원금	144,000원	<p>1등급:144,000원</p> <p>2등급:128,000원</p> <p>3등급:112,000원</p> <p>4등급:96,000원</p>
			본인부담금	16,000원	<p>1등급:16,000원</p> <p>2등급:32,000원</p> <p>3등급:48,000원</p> <p>4등급:64,000원</p>
			서비스 형태	<p>기관방문형</p> <p>※ 거동불편자 대상 재가방문 허용, 제공기관과 동일 소재지의 경로당·복지관 추가확보시설 활용 가능</p>	<p>기관방문형</p> <p>※ 거동불편자 대상 재가방문 허용, <b>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p>
			제공기관 등록기준	사무실, 전용공간 구성	<b>별도 사무실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기준을 충족</b> 하는 것으로 봄(전용공간은 33㎡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함.)
6	노인수중운동교실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제공기관 등록기준	<p>1.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군구(수영장 소재지 기준)에 각각 등록해야 함</p> <p>2.등록 군구 내에서 이용권을 선정받은 이용자에 대해서만 서비스 제공 가능</p>	<p>1.등록 군구 내에 사무실과 서비스 제공장소(수영장)이 모두 소재해야 함.</p> <p>※ 기존 등록 제공기관 유효기간 : ~22년 12월 31일까지</p> <p>2.인천시 노인수중운동교실 실시지역 내에서 이용권을 선정받은 이용자에</p>

					계 모두 서비스 제공 가능(등록 군 구 무관함.)
7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옹진군	제공인력 자격기준 (기초검사 및 운동처방 제공인력)	체육학 또는 특수체육학 전공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체육학 또는 특수체육학 전공 석사이상 학위취득 후 장애인 대상 운동지도 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8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미추홀구	중복제한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젝트, 정신건강 토달케어서비스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젝트, 정신건강 토달케어서비스, 성인심리상담서비스
9	도서지역 어르신 삶의 질 활력증진 서비스	강화군, 옹진군	제공기관 등록기준 (전용공간)	102.3㎡ 이상	[옹진군] 69.3㎡ 이상 [강화군] 102.3㎡ 이상
			제공인력 자격기준 (여가프로그램)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레크레이션지도자 자격 소지자,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여가활동 관련 민간 자격 소지자,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집단규모	○여가프로그램 1:30 이하 ○심리지원 1:10 이하 ○건강관리 1:10 이하	○여가프로그램 [옹진군] 1:20 이하 [강화군] 1:30 이하 ○심리지원 1:10 이하 (강화군 옹진군 공통) ○건강관리 1:10 이하 (강화군 옹진군 공통)

제 2 장

**2022년  
인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매뉴얼**

---

I.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

II. 사업별 세부 매뉴얼(제공기관 필수 준수사항)

---

(금액 단위: 천원)

연번	구분	제공 지역	사업명	코드 번호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사업내용	서비스 형태	재판정(회)	페이지
계		총 26개 (전국표준형 1, 시도 개발형 4, 시군구 공동개발형 15, 시군구 자체개발형 6)								
1	시군구 공동개발	옹진군 제외	아동정서발달서비스	030105	160~180	20~40	클래식 악기교육 및 정서순화프로그램	기관 방문	1	17
2	시도 개발	10개 군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010105	126~162	18~54	언어/인지/놀이/미술재활 프로그램 및 상담	기관 방문	1	23
3	시도 개발	10개 군구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080105	96~144	16~64	마사지, 지압 등 안마서비스	기관 방문		31
4	시군구 공동개발	옹진군 제외	정신건강 토탈케어	090105	180	20	위기상황개입/증상관리, 일상생활지원	재가 방문	2	36
5	전국 표준형	10개 군구	장애인보조기기렌탈	070101	84~108	12~36	보조기기 렌탈 및 유지보수서비스	재가 방문	5	41
6	시군구 공동개발	옹진군 제외	장애인 재활승마	200205	176~198	22~44	재활승마 및 상담	기관 방문	1	45
7	시군구 공동개발	옹진군 제외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	130305	112~128	32~48	비전형성교육/체험활동(4개월) 직업탐색교육/체험활동(8개월)	기관 방문		49
8	시군구 공동개발	강화군 제외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 운동서비스	200305	150~170	20~40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 및 운동서비스 제공	기관 방문		58
9	시군구 공동개발	옹진군 제외	노인수중운동교실	050805	110	10	건강상태 점검, 수중운동	집단 활동		63
10	시군구 공동개발	강화군, 옹진군 제외	장애아동 학습지원서비스	210205	144~162	18~36	장애아동 인지 및 일상생활훈련	재가 방문	1	68
11	시도 개발	10개 군구	성인심리상담서비스	180305	160~180	20~40	성인대상 심리상담지원	기관 방문	1	72
12	시도 개발	10개군구	오감쑥쑥서비스	290505	78~104	26~52	놀이지도, 미술활동, 동화구연	재가 방문		76
13	시군구 공동개발	강화군, 옹진군 제외	부모유아 관계증진서비스	170305	80~90	10~20	영아와 부모 대상 놀이프로그램	기관 방문		79
14	시군구 공동개발	미추홀구, 옹진군 제외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젝트	100205	144	16	인지건강관리를 통한 치매예방강화	기관 방문		82
15	시군구 공동개발	9개 군구	나를 찾는 5060	190205	112~144	16~48	중장년층 대상 악기교육 및 정서지원프로그램	기관 방문		85
16	시군구 자체개발	옹진군	섬마을 행복나눔서비스	290105	180~200	20~40	클래식 악기교육, 가족정서프로그램	집단 활동	1	88
17	시군구 자체개발	미추홀구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	100105	126	14	노인정서지원, 분야별서비스 제공	재가+기관 방문		92
18	시군구 공동개발	옹진군, 강화군	도서지역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예술교육	170205	90	10	영아와 부모 대상 놀이프로그램	기관 방문		96
19	시군구 공동개발	중구, 동구, 미추홀구, 서구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	130205	120~135	15~30	아침영양제공 및 신체활동서비스, 부모교육 및 상담	집단 활동		100
20	시군구 공동개발	옹진군, 강화군	도서지역 어르신 삶의 질 활력 증진서비스	190105	140	10	심리지원서비스, 여가프로그램, 건강관리	기관 방문		103
21	시군구 공동개발	중구, 동구	꼬마작가 만들기 프로젝트	290605	104~117	13~26	표현·기획능력향상 및 정서발달지원	기관 방문		107
22	시군구 공동개발	옹진군, 강화군	섬마을 꼬마작가서비스	290705	120~135	15~30	표현·기획능력향상 및 정서발달지원	기관 방문		111
23	시군구 자체개발	부평구	사회성증진을 위한 또래교실	210305	112~144	16~48	발달지연아동 대상 집단 사회성증진프로그램	기관 방문		114

연번	구분	제공 지역	사 업 명	코드 번호	정 부 지원금	본 인 부담금	사 업 내 용	서비스 형태	재관정 (회)	페이지
24	사군구 자체개발	남동구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프로그램	210405	160~180	20~40	성인발달장애인 대상 집단 사회성프로그램	기관 방문		118
25	사군구 자체개발	계양구	어르신 관절건강지킴 프로그램	200405	108	12	맨손 또는 기구를 활용한 관절건강 기능향상 운동프로그램	기관 방문		121
26	사군구 자체개발	부평구	돌봄틈새제로서비스	990405	270	30	돌봄 사각지대 노인 대상 맞춤형개입서비스 지원	재가 방문		124

II

**사업별 세부 매뉴얼 (제공기관 필수 준수사항)**

**1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시·군·구 공동개발) / 사업코드 030105**

항 목	내 용									
목 적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마출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	○	○	○	○	○	○	X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8세(2014년생)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2010년생) (*연령 : 2010.01.01.~2014.12.31.)
	선정기준	<p>다음 ①,②,③,④,⑤ 중 한 가지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p> <p>①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p> <p>②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p> <p>③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p> <p>④ 6개월 이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아동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추천서 제출)</p> <p>⑤ 6개월 이내에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아 추천공문과 임상심리평가 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임상심리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지로 갈음할 수 있음.)</p> <p>☞ ④, ⑤는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p>
	유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선정기준 ①~③의 경우 전문가가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심리상담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소견서 또는 추천서 발급 시,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 외톨이, 문화결핍 아동 등)</p> <p><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p>

항 목	내 용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31 315 475 479">우선순위</td> <td data-bbox="475 315 1439 479">           1.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아동정서발달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td> </tr> <tr> <td data-bbox="331 479 475 542">중복제한</td> <td data-bbox="475 479 1439 542">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td> </tr> </table>	우선순위	1.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아동정서발달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중복제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우선순위	1.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아동정서발달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중복제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자신청 구비서류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⑤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⑥-1.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추천서), 자격증 사본          ⑥-2.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 자격증 사본          ⑥-3.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 자격증 사본          ⑥-4. <b>[우선 선정]</b>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⑥-5. <b>[우선 선정]</b>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드림스타트센터·Wee센터 추천공문, 임상심리평가 결과지</p> <p>➔ ⑥-1~⑥-5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됨.</p> <p>※ 추천서 "사업별서식 제18호" 활용</p>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b></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41 1223 517 1480">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td> <td data-bbox="517 1223 1439 1480">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 : 별도 면적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 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전용공간(프로그램실) : 총 33㎡이상의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td> </tr> <tr> <td data-bbox="341 1480 517 1570"></td> <td data-bbox="517 1480 1439 15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첼로 중 2가지 이상 악기 구비 (이용자 모집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량 구비 필수)</li> </ul> </td> </tr> </table>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41 1585 517 1928">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td> <td data-bbox="517 1585 1439 1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래식(음악)교육 제공인력 - 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첼로 중 <b>2가지 이상</b> 제공가능하도록 제공인력을 채용해야 함.</li> <li>-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전공 악기 증빙 필수 - 특히 학력증명서에 전공악기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성적증명서, 졸업연주회 팸플릿 등 학위소지자 및 전공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p> </div> </td> </tr> </table>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 : 별도 면적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 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전용공간(프로그램실) : 총 33㎡이상의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첼로 중 2가지 이상 악기 구비 (이용자 모집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량 구비 필수)</li> </ul>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래식(음악)교육 제공인력 - 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첼로 중 <b>2가지 이상</b> 제공가능하도록 제공인력을 채용해야 함.</li> <li>-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전공 악기 증빙 필수 - 특히 학력증명서에 전공악기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성적증명서, 졸업연주회 팸플릿 등 학위소지자 및 전공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p> </div>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 : 별도 면적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 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전용공간(프로그램실) : 총 33㎡이상의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첼로 중 2가지 이상 악기 구비 (이용자 모집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량 구비 필수)</li> </ul>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클래식(음악)교육 제공인력 - 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첼로 중 <b>2가지 이상</b> 제공가능하도록 제공인력을 채용해야 함.</li> <li>-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전공 악기 증빙 필수 - 특히 학력증명서에 전공악기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성적증명서, 졸업연주회 팸플릿 등 학위소지자 및 전공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음.</p> </div>						

항 목	내 용
-----	-----

<b>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b>	<p>○ 사전사후검사·정서순화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학위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정서프로그램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p> <p>②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민간자격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p> <p>③ 강화군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강화군만 해당):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모든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 및 민간자격과 연관된 내용으로써,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i.or.kr">pqi.or.kr</a>(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조회바람</p>
--------------------------------	---

<b>서비스 가격/ 제공기간</b>	<b>서비스 가격</b>	<p>▶ 월 20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0%;">(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 style="width: 45%;">(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80,000원(90%)</td> <td>160,000원(8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000원(10%)</td> <td>40,000원(20%)</td> </tr> </tbody> </table>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22,500원 / 2등급:20,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2,500원 / 2등급:5,000원씩 산정</p>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b>이용자별 제공기간</b>	<p>12개월 (1회 재판정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p>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b>서비스 내용/ 제공절차</b>	<b>구분</b>	<b>서비스 내용</b>	<b>서비스횟수/ 집단규모</b>
	<b>사전사후검사</b>	<p>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p>	<p>연 2회 ***1:1실시</p>
	<b>클래식(음악) 이론 및 실기</b>	<p>바이올린, 플룻, 클라리넷, 첼로 중 택 1하여 개인 및 그룹지도 → 서비스 참여기간이 4개월 이상인 아동은 최소 월 1회 이상은 참여 아동 합주를 실시(서비스 참여 4개월차부터 실시)</p>	<p>주 1회 (회당 60분) ***1:3이하</p>
<b>정서순화프로그램</b>	<p>악기를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놀이 및 예술 치료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 서비스 제공 → 상담일지 별도첨부</p>	<p>주 1회 (회당 60분) ***1:3이하</p>	

항 목	내 용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집단규모
		1. 일반연주회 관람 (반기별 1회) : 입장권 사진, 참석자명단 등 별도첨부 ※다수의 제공인력이 함께 연주하는 것을 관람하는 활동 인정불가함에 유의 (외부연주회 관람) 2. 향상음악회 참여 (반기별 1회) : 사진, 참석자명단 등 별도첨부 ※ 전문교재 기준 연 4곡 이상 연주 3. 제공기관의 무상 악기대여 (1개월 서비스 참여 후, 대여 가능) ※ 분실, 파손 등 악기관리 관련 책임규정은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 하에 정할 수 있음.(21년 7월 추가) 4. 이용자별 사례회의 및 보호자에 '서비스 제공보고서' 제공(월 1회)	※ 1~4 모두 시행해야하며, 제공 기록지 기록 및 별도 증빙서류관리 필수 ⇨ 현장점검 확인대상  <b>(바우처 결제불가)</b>
	<b>▶ 서비스 제공절차</b> 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 ② 2단계 :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사전검사 의무 실시) ③ 3단계 : 클래식 이론 및 악기, 정서순화프로그램, 연주회, 음악회 등 기본서비스 실시 ④ 4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제공인력과 음악 프로그램 제공인력 간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b>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안내</b> ⑤ 5단계 : 피드백·재조정 후 서비스 지속 실시 및 종결(종료 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b>○ 서비스 형태</b> - 기관방문형으로 <b>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b> 에서만 서비스 제공 (추가확보시설 활용불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지역아동센터는 서비스 제공장소가 될 수 없음. (미 준수시 행정처분)               ※「<b>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안내</b>」中              지역아동센터의 공간은 지역아동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타 복지사업, 타 기관이나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은 보조금을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됨(<b>보조금 반환명령에 해당</b>)               ※「<b>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b>」中              지역아동센터 내에서 또는 지역아동센터 돌봄시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중복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바우처 결제 시 환수)           </div> <b>○ 서비스 집단규모 1:3이하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3명 이내로 진행)</b> ※ <b>사전사후검사는 1:1로 진행해야 함에 유의</b>  <b>○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b>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정서순화프로그램의 경우, 서비스 내용 및 아동에 대한 상태·평가, 부모 전달사항을 <b>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b> -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		

항 목	내 용						
	<p>○ <b>사전·사후 검사 ( 집단규모 1:1로 진행 )</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li> <li>-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li> <li>☞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li> <li>- 검사도구 : 아동의 심리·성격, 정서 순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선택하여 실시</li> <li>- 제공기관에서 <b>직접</b>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b>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b>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2회기(120분) 중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 주 2회기(120분) 중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60분이상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p> </div> <p>○ <b>클래식(음악) 이론 및 실기, 정서순화 프로그램 외에 기본서비스 내 프로그램 모두 실시해야 함</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b>일반연주회(외부) 관람, 향상음악회 참여</b></td> <td style="padding: 5px;">-반기별 1회씩 실시 -참석자 명단, 사진, 입장권 등 별도 구비</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b>무상악기대여, 참여 아동 합주</b></td> <td style="padding: 5px;">제공기록지에 기록 ※무상악기 대여의 경우 분실, 파손 등 악기관리 관련 책임규정은 <b>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b> 하에 정할 수 있음.(21년 7월 추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5px;"><b>월 사례회의 및 서비스 제공보고서 배부</b></td> <td style="padding: 5px;">-매월 제공인력 간 사례회의 실시 후 작성 -1부는 보호자에 제공, 1부는 이용자 파일에 보관</td> </tr> </table> <p>☞ 모든 내용은 현장점검 시, 확인 대상임.</p> <p>○ <b>결제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b>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b>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 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p>○ <b>보강 실시 방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b>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b> 실시할 수는 없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b>연달아서</b> 할 수 없음.</li> </ul> <p>○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 / 방법 자율)</p> <p>○ <b>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p>	<b>일반연주회(외부) 관람, 향상음악회 참여</b>	-반기별 1회씩 실시 -참석자 명단, 사진, 입장권 등 별도 구비	<b>무상악기대여, 참여 아동 합주</b>	제공기록지에 기록 ※무상악기 대여의 경우 분실, 파손 등 악기관리 관련 책임규정은 <b>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b> 하에 정할 수 있음.(21년 7월 추가)	<b>월 사례회의 및 서비스 제공보고서 배부</b>	-매월 제공인력 간 사례회의 실시 후 작성 -1부는 보호자에 제공, 1부는 이용자 파일에 보관
<b>일반연주회(외부) 관람, 향상음악회 참여</b>	-반기별 1회씩 실시 -참석자 명단, 사진, 입장권 등 별도 구비						
<b>무상악기대여, 참여 아동 합주</b>	제공기록지에 기록 ※무상악기 대여의 경우 분실, 파손 등 악기관리 관련 책임규정은 <b>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b> 하에 정할 수 있음.(21년 7월 추가)						
<b>월 사례회의 및 서비스 제공보고서 배부</b>	-매월 제공인력 간 사례회의 실시 후 작성 -1부는 보호자에 제공, 1부는 이용자 파일에 보관						

항 목	내 용
<p>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li> <li>- 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사업별서식 제4호 참고)</li> </ul> </li> <li>○ 제공기관 등록 시, 정서순화 및 음악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b>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b>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바이올린 이론 및 실기 매뉴얼 1부, 플룻 이론 및 실기 매뉴얼 1부, 정서순화프로그램 매뉴얼 1부 총 3가지 매뉴얼 제출</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li> </ul>

## 2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시·도 개발) / 사업코드 010105

항 목	내 용									
목 적	아동청소년 심리문제의 조기 발견과 개입을 통하여 문제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 발전을 막아 긍정적 성장 지원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	○	○	○	○	○	○	○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정의 만 18세이하(2004년생) 아동 (*연령 : 2004.01.01.~)								
	선정기준	<p>다음 ①~⑧ 중 한 가지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li> <li>②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li> <li>③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li> <li>④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자체 소견서 또는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li> <li>⑤ 6개월이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아동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 제출)</li> <li>⑥ 6개월이내에 아래 ㉠~㉣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부터 발급받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천서와 직접 실시한 심층사정평가 결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li> <li>㉡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li> <li>㉢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li> </ul>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를 자율 선택하여 추천서를 발급한 자가 직접 실시하여야 함.                 </li> <li>⑦ [언어재활 희망 신청자에 한하여 적용] 6개월이내 발급받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의한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지, 자격증 사본 (19년 추가 / 그 외에도 ①~⑦ 중 발급가능한 것으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li> <li>⑧ 6개월 이내에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로부터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아 추천공문과 임상심리평가 결과지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임상심리평가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외부 기관에서 실시한 평가 결과지로 갈음할 수 있음.) - 21년 추가</li> </ul> <p>☞ ⑤, ⑧은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p>								

항 목	내 용	
서비스 대상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선정기준 ①,②,③,④,⑥,⑦의 경우 전문가가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심리상담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21년 추가) <input type="checkbox"/> 자격기본법에 의한 방과후지도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추천서는 인정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우선순위	1.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b>※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b>
	★ 중복제한 (22년 1월 변경)	사회성증진을 위한 또래교실(부평구),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자녀언어발달사업(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학생정신건강심층검사 및 진료비 지원사업(인천시 교육청), <b>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22년 1월 추가)</b>

이용자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8세이하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⑤-1.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⑤-2.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⑤-3.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추천서)와 자격증 사본 ⑤-4.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청소년상담사 소견서(추천서)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사본 ⑤-5. <b>[우선 선정]</b>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6. 문제행동위험군과 관련하여 다음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6개월이내 발급받은 <b>추천서와 심층사정평가도구 결과서</b> 함께 제출(다음 중 택1하여 제출)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 ⑤-7.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언어재활사 1급 소지자 소견서와 언어지연 관련 검사결과지, 자격증 사본(언어재활 희망 신청자에 한함) ⑤-8. <b>[우선 선정]</b>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드림스타트센터, Wee센터 추천공문, 임상심리평가 결과지(21년 추가) <b>➔ ⑤-1~⑤-8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됨.</b> <b>※ 추천서 “사업별서식 제18호” 활용</b>		

항 목	내 용
<p>제공기관 및 슈퍼바이저, 제공인력 기준 (22년 수정)</p>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u>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u>되어야 함.</p>
	<p><b>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b></p> <p><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 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li>▪ 놀이, 언어, 인지, 미술재활프로그램 중 <u>3가지 이상</u> 제공가능한 환경 조성(전용공간 및 기타 교구 등)</li> </ul>
	<p><b>★ 슈퍼바이저 기준 (22년 수정)</b></p> <p>▶ 제공기관은 <b>제공기관의 인력(대표자,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중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해야 함.</b>(대표자나 제공 인력이 아래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겸직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 상담, 언어·놀이·미술·인지재활 등 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이면서 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학위 이상이면서 학위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li> </ul> <p>※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단위 지역의 경우 권고사항임.          ※ 2021년 진입 제공기관부터 적용됨.          ※ <b>외부 초빙 인정불가</b></p>
<p><b>제공인력 기준 (제공하고자 하는 3가지 이상의 세부 프로그램에 맞춰 구성)</b></p> <p>○ <b>놀이프로그램 담당 제공인력 자격기준 : ①, ②, ③ 중 택 1</b></p> <p>① 다음 중 한 가지 자격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li> <li>㉡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li> <li>㉢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li> <li>㉣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li> </ul> <p>② 놀이·음악재활,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놀이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③ 놀이·음악재활, 심리, 상담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놀이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1년 이상</li> <li>㉡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놀이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6개월 이상</li> <li>㉢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놀이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3개월 이상</li> </ul> <p>○ <b>언어프로그램 담당 제공인력 자격기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를 취득한 자</li> </ul>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항 목	내 용
<p>제공기관 및 슈퍼바이저, 제공인력 기준 (22년 수정)</p>	<p><b>제공인력 기준 (제공하고자 하는 3가지 이상의 세부 프로그램에 맞춰 구성)</b></p> <p>○ <b>인지프로그램 담당 제공인력 자격기준 : ①, ②, ③ 중 택 1</b></p> <p>① 다음 중 한 가지 자격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li> <li>㉡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li> <li>㉢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li> <li>㉣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li> </ul> <p>② 인지·행동재활,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③ 인지·행동재활, 심리, 상담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1년 이상</li> <li>㉡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6개월 이상</li> <li>㉢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인지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3개월 이상</li> </ul> <p>○ <b>미술프로그램 담당 제공인력 자격기준 : ①, ②, ③ 중 택 1</b></p> <p>① 다음 중 한 가지 자격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li> <li>㉡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li> <li>㉢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li> <li>㉣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li> </ul> <p>② 미술재활,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③ 미술재활, 심리, 상담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1년 이상</li> <li>㉡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6개월 이상</li> <li>㉢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재활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3개월 이상</li> </ul> <p style="text-align: right;"><i>다음 페이지에 계속</i></p>

항 목	내 용																																
<p>제공기관 및 슈퍼바이저, 제공인력 기준 <b>(22년 수정)</b></p>	<p>○ 심리운동프로그램 담당 제공인력 자격기준 : ①, ②, ③ 중 택 1</p> <p>※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 중 3개 프로그램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제공기관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실시가능</p> <p>① 다음 중 한 가지 자격에 해당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li> <li>㉡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li> <li>㉢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li> <li>㉣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li> </ul> <p>② 심리운동,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운동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③ 심리운동, 심리, 상담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운동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1년 이상</li> <li>㉡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운동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6개월 이상</li> <li>㉢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취득 후 아동청소년 대상 심리운동 프로그램 제공경력이 3개월 이상</li> </ul> <p>※ 위 자격기준에서 규정하는 모든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 및 민간자격과 연관된 내용으로써,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j.or.kr">pqj.or.kr</a>(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조회바람</p>																																
<p>서비스가격/ 제공기간</p>	<table border="1"> <tr> <td colspan="4" data-bbox="336 1426 1433 1480">▶ 월 18만원</td> </tr> <tr> <td data-bbox="336 1480 480 1688">서비스 가격</td> <td data-bbox="480 1480 890 1688">구분</td> <td data-bbox="890 1480 1182 1688">(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d> <td data-bbox="1182 1480 1433 1688">(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d> </tr> <tr> <td></td> <td></td> <td data-bbox="480 1688 890 1742">(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td> <td></td> </tr> <tr> <td></td> <td>정부지원금</td> <td>162,000원(90%)</td> <td>144,000원(80%)</td> </tr> <tr> <td></td> <td>본인부담금</td> <td>18,000원(10%)</td> <td>36,000원(20%)</td> </tr> <tr> <td></td> <td></td> <td>54,000원(30%)</td> <td></td> </tr> <tr> <td colspan="4" data-bbox="336 1704 1433 1861">▶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40,500원 / 2등급:36,000원 / 3등급:31,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4,500원 / 2등급:9,000원씩 / 3등급:13,500원씩 산정</td> </tr> <tr> <td data-bbox="336 1861 480 1942">이용자별 제공기간</td> <td colspan="3" data-bbox="480 1861 1433 1942">12개월 (1회 재판정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td> </tr> </table>	▶ 월 18만원				서비스 가격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90%)	144,000원(80%)		본인부담금	18,000원(10%)	36,000원(20%)			54,000원(30%)		▶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40,500원 / 2등급:36,000원 / 3등급:31,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4,500원 / 2등급:9,000원씩 / 3등급:13,500원씩 산정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1회 재판정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 월 18만원																																	
서비스 가격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90%)	144,000원(80%)																														
	본인부담금	18,000원(10%)	36,000원(20%)																														
		54,000원(30%)																															
▶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40,500원 / 2등급:36,000원 / 3등급:31,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4,500원 / 2등급:9,000원씩 / 3등급:13,500원씩 산정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1회 재판정 가능,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항 목	내 용			
서비스내용/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			
	구분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사전 · 사후 검사	▶ 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 ■ 객관적 평가도구 1종, 주관적 평가도구 1종을 포함하여 총 2종 실시(단, 만 3세 이하의 유아는 객관적 평가도구 활용 제외 가능) ■ 검사도구는 다음 페이지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내용에 준수하여 활용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심리 상담 서비스	▶ 아동 및 부모를 위한 심리상담 제공  ※부득이하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동조기개입서비스를 50분 제공해야 함.	주1회씩 월4회 (회당 10분내외)
	기본 서비스	아동 조기개 입 서비스	※사전·사후 검사 및 상담을 통해 아동의 상태를 파악하여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 (상담일지 별도 작성) ▶ 놀이프로그램 : 모래놀이, 음악놀이 등을 통하여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 사회성, 정서발달 등 지원 ▶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 대한 개인의 내적/환경적 원인을 분석하고 증상별 재활계획을 수립 및 제공하여 잠재된 언어능력을 극대화시켜 의사소통을 향상 ▶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 발달수준·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여 아동의 인지발달을 촉진시켜 학습에 어려움을 갖는 아동의 인지발달 향상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학습지 활용X) ▶ 미술프로그램 : 다양한 미술매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자존감 향상 및 감각발달 향상  ◎심리운동 프로그램 : 운동을 통한 심리재활프로그램 ※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 중 3개 프로그램 이상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제공기관에 한하여 실시가능(단순 체육활동, 운동지도 불가) ※심리운동프로그램 실시 사유 증빙자료 보관(보호자확인서 등)	주1회씩 월4회 (회당40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바우처 결제불가)	필요시
		부모 훈련	▶ 아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바우처 결제불가)	수시
▶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전검사 의무 실시) ② 2단계: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 또는 혼합하여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조사(종료 시 사후검사 의무 실시)				

항 목	내 용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 형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방문형으로 <b>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b>에서만 서비스 제공 (추가확보시설 활용불가)</li> </ul> <p>○ 서비스 집단규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 서비스 실시(제공인력 1명당 1명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li> <li>※단, 서비스 종료 1개월 전에 한하여 종료일이 동일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1:3 이하 집단프로그램 제공가능</li> </ul> <p>○ 사전·사후 검사 (21년 2월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이며 객관적 평가도구 1종, 주관적 평가도구 1종을 포함하여 총 2종을 선택하여 실시(단, 만 3세 이하의 유아는 객관적 평가도구 활용 제외 가능)</li> </ul> <table border="1" data-bbox="400 801 1426 1016"> <thead> <tr> <th data-bbox="400 801 639 846">구분</th> <th data-bbox="639 801 1426 846">평가도구</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00 846 639 936">객관적 평가</td> <td data-bbox="639 846 1426 936">PRES, REVT, SELSI, U-TAP(APAC), P-FA, 덴버검사, K-CDI, YSR, MMPI, MMPI-A, K-CBCL, K-ARS, RCMAS, K-PRC</td> </tr> <tr> <td data-bbox="400 936 639 1016">주관적 평가</td> <td data-bbox="639 936 1426 1016">상호작용기능평가, 언어자발화분석, HTP, K-HTP, KFD, SCT, KSD, MT-MAP, IMTAP</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li> <li>☞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li> <li>- 제공기관에서 <b>직접</b>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b>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b>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li> </ul> <div data-bbox="384 1223 1417 134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주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p> </div> <p>○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b>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li>-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상태·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b>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b></li> </ul> <p>○ 인지프로그램 제공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논술지도, 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li> <li>-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li> </ul> <p>○ 심리운동 프로그램 제공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체육활동, 운동지도 서비스 실시 불가</li> <li>- 심리운동 프로그램 실시 사유 증빙자료 보관 (보호자 확인서 등)</li> <li>- 심리운동 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아동의 문제행동의 개선 정도를 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록</li> </ul>	구분	평가도구	객관적 평가	PRES, REVT, SELSI, U-TAP(APAC), P-FA, 덴버검사, K-CDI, YSR, MMPI, MMPI-A, K-CBCL, K-ARS, RCMAS, K-PRC	주관적 평가	상호작용기능평가, 언어자발화분석, HTP, K-HTP, KFD, SCT, KSD, MT-MAP, IMTAP
	구분	평가도구					
객관적 평가	PRES, REVT, SELSI, U-TAP(APAC), P-FA, 덴버검사, K-CDI, YSR, MMPI, MMPI-A, K-CBCL, K-ARS, RCMAS, K-PRC						
주관적 평가	상호작용기능평가, 언어자발화분석, HTP, K-HTP, KFD, SCT, KSD, MT-MAP, IMTAP						

항 목	내 용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결제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b>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b>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li> <li>○ <b>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u>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u></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li> </ul> </li> <li>○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li> </ul>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p>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대인/대물 보상)</li> <li>- 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b>사업별서식 제4호 참고</b>)</li> </ul> </li> <li>○ 제공기관 등록 시, 세 가지 이상의 세부 프로그램 <b>각각</b>에 대한 <b>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b>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b>서비스 내용</b>'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놀이/언어/미술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계획한 경우, 세 가지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매뉴얼 1부씩 제출</p> </div> </li> </ul>

### ③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시·도 개발) / 사업코드 080105

항 목	내 용									
목 적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마추출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	○	○	○	○	○	○	○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22년 1월 변경)	★ 소득 (22년 1월 변경)	기준중위소득 <b>150%이하</b>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연령 및 선정기준 (22년 1월 변경)	<p>다음 ①,②,③,④,⑤,⑥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p> <p>①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b>택 1</b>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b>(1962년생)</b> 이상인 자 (*연령:~1962.12.31.)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p> <p>② 지체 또는 뇌병변 등록장애인 <b>(연령기준 없음)</b></p> <p>③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b>택 1</b>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b>(연령기준 없음)</b>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p> <p>④ 6개월 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 ☞ ④는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p> <p>⑤ 임신부(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제출 / 연령기준 없음)</p> <p>⑥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b>택 1</b>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출산 후 2년 미만자(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 연령기준 없음)</p>
	우선순위	<p>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p> <p>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3.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중복제한	어르신 관절건강지킴(계양구)서비스
	유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대상자는 탄력적으로 연령 적용(최소 만 55세(1967년생) 이상)</p> <p><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p>

항 목	내 용		
<b>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22년 1월 변경)</b>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 카드신청 관련사항은 카드사에 별도 문의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12 495 762 629"> <b>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①,④에 해당하는 경우</b> </td> <td data-bbox="762 495 1481 629">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b>※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b> </td> </tr> </table>	<b>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①,④에 해당하는 경우</b>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b>※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b>
	<b>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①,④에 해당하는 경우</b>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b>※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b>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12 636 762 741"> <b>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②,③,⑤,⑥에 해 당하는 경우</b> </td> <td data-bbox="762 636 1481 741">           ㉠만14세이상~만19세미만            ■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td> </tr> </table>	<b>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②,③,⑤,⑥에 해 당하는 경우</b>	㉠만14세이상~만19세미만 ■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b>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②,③,⑤,⑥에 해 당하는 경우</b>	㉠만14세이상~만19세미만 ■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12 748 762 909"> <b>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②,③,⑤,⑥에 해 당하는 경우</b> </td> <td data-bbox="762 748 1481 909">           ㉡만19세이상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b>※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b> </td> </tr> </table>	<b>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②,③,⑤,⑥에 해 당하는 경우</b>	㉡만19세이상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b>※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b>	
<b>소득기준이 부합하면서 '연령 및 선정기준' ②,③,⑤,⑥에 해 당하는 경우</b>	㉡만19세이상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b>※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b>		
	⑤소득기준에 부합한 경우, 다음 ㉠,㉡,㉢,㉣,㉤,㉥중 해당사항에 맞추어 제출 ㉠ '연령 및 선정기준' ①에 해당하는 자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b>택 1</b>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 '연령 및 선정기준' ②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지체 또는 뇌병변) ㉢ '연령 및 선정기준' ③에 해당하는 자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b>택 1</b>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 <b>[우선 선정]</b> '연령 및 선정기준' ④에 해당하는 자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추천공문 <b>★㉤ '연령 및 선정기준' ⑤에 해당하는 자</b> -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b>★㉥ '연령 및 선정기준' ⑥에 해당하는 자</b>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의사처방전 중 <b>택 1</b>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포함)		

항 목	내 용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22년 1월 변경)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b>되어야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b>★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22년 1월 변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마원 개설신고가 완료된 기관</li> <li>※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개설자 준수사항(특히 제5호, 퇴폐·음란·도박 관련사항) 위반사례 및 우려가 없는 기관이어야 함</li> </ul> <p><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b>별도 사무실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2022년 변경)</b></li> <li>※ 참고 : 사업 운영과 관련된 서류 보관 및 이용자 상담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공기관의 고려는 필요함.</li> <li>▪ 전용공간(안마 제공장소)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p>※ <b>2022년도부터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b>제공인력 기준</b></p> <p>“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p> </div>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22년 1월 변경)	<p>▶ 월 160,000원 (정부지원 60~90% / 본인부담 10~40%)</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th> <th>(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th> <th>(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th> <th>(4등급)중위소득 140%초과~150%이하</th> </tr> </thead> <tbody> <tr> <td>정부</td> <td>144,000원(90%)</td> <td>128,000원(80%)</td> <td>112,000원(70%)</td> <td>96,000원(60%)</td> </tr> <tr> <td>본인</td> <td>16,000원(10%)</td> <td>32,000원(20%)</td> <td>48,000원(30%)</td> <td>64,000원(40%)</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f2f2f2; padding: 5px;">~2021년 선정이용자까지는 기존 금액 적용</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 월 160,000원</p> <p>[정부지원금] 144,000원</p> <p>[본인부담금] 16,000원</p> </div> <p>※ <b>2022년 선정이용자부터 차등화 적용</b></p> <p>▶ 회차별 금액(정부/본인)</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f2f2f2;">~2021년 선정이용자</th> <th style="background-color: #f2f2f2; color: red;">2022년 선정이용자부터 ~</th> </tr> </thead> <tbody> <tr> <td>36,000원씩/4,000원씩 산정</td> <td style="color: red;">           [1등급] 36,000원씩 / 4,000원씩 산정            [2등급] 32,000원씩 / 8,000원씩 산정            [3등급] 28,000원씩 / 12,000원씩 산정            [4등급] 24,000원씩 / 16,000원씩 산정         </td> </tr> </tbody> </table> <p><b>이용자별 제공기간</b> 12개월</p>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4등급)중위소득 140%초과~150%이하	정부	144,000원(90%)	128,000원(80%)	112,000원(70%)	96,000원(60%)	본인	16,000원(10%)	32,000원(20%)	48,000원(30%)	64,000원(40%)	~2021년 선정이용자	2022년 선정이용자부터 ~	36,000원씩/4,000원씩 산정	[1등급] 36,000원씩 / 4,000원씩 산정 [2등급] 32,000원씩 / 8,000원씩 산정 [3등급] 28,000원씩 / 12,000원씩 산정 [4등급] 24,000원씩 / 16,000원씩 산정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4등급)중위소득 140%초과~150%이하																
정부	144,000원(90%)	128,000원(80%)	112,000원(70%)	96,000원(60%)																
본인	16,000원(10%)	32,000원(20%)	48,000원(30%)	64,000원(40%)																
~2021년 선정이용자	2022년 선정이용자부터 ~																			
36,000원씩/4,000원씩 산정	[1등급] 36,000원씩 / 4,000원씩 산정 [2등급] 32,000원씩 / 8,000원씩 산정 [3등급] 28,000원씩 / 12,000원씩 산정 [4등급] 24,000원씩 / 16,000원씩 산정																			

항 목	내 용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li> </ul> <table border="1" data-bbox="304 432 1473 685"> <thead> <tr> <th>구분</th> <th colspan="4">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노 인</td> <td>· 전신안마 · 운동요법</td> <td>· 마사지 · 자극요법</td> <td>· 지압</td> <td>· 발마사지</td> <td rowspan="3">주 1회 (회당 60분)</td> </tr> <tr> <td>장애인</td> <td>· 전신안마 · 운동요법</td> <td>· 마사지 · 체형교정</td> <td>· 지압 · 자극요법</td> <td>· 발마사지</td> </tr> <tr> <td>기타 질환자(특화사업)</td> <td>· 전신안마 · 운동요법</td> <td>· 마사지 · 체형교정</td> <td>· 지압 · 자극요법</td> <td>· 발마사지</td> </tr> </tbody> </table> <p>※ 단, '의료법' 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p>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단계 : 신청자의 증상·욕구조사(이용자의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수준의 초기상담 및 초기상담기록지 작성 필수) → 사업별서식 제3호 활용</li> <li>② 2단계 :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li> <li>③ 3단계 : 서비스 종료 시,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li> </ol>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노 인	· 전신안마 · 운동요법	· 마사지 · 자극요법	· 지압	· 발마사지	주 1회 (회당 60분)	장애인	· 전신안마 · 운동요법	· 마사지 · 체형교정	· 지압 · 자극요법	· 발마사지	기타 질환자(특화사업)	· 전신안마 · 운동요법	· 마사지 · 체형교정	· 지압 · 자극요법	· 발마사지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노 인	· 전신안마 · 운동요법	· 마사지 · 자극요법	· 지압	· 발마사지	주 1회 (회당 60분)																		
장애인	· 전신안마 · 운동요법	· 마사지 · 체형교정	· 지압 · 자극요법	· 발마사지																			
기타 질환자(특화사업)	· 전신안마 · 운동요법	· 마사지 · 체형교정	· 지압 · 자극요법	· 발마사지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22년 1월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규모 1:1 서비스 실시가 원칙이며, 안마사 1인당 주 40시간이하 제공가능 (2017년 8월부터 적용)</li> <li>○ 제공장소와 관련하여 제공인력별 월 근무현황표(사업별서식 제24호)를 익월 첫째주까지 등록 군·구에 제출 <div data-bbox="319 1200 1444 1272"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홍길동 제공인력의 5월 근무현황표를 6월 첫째주까지 등록 군·구에 제출</p> </div> </li> <li>○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ul> </li> <li>○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li> <li>○ 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 <div data-bbox="354 1825 1452 1960"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li> <li>-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li> </ul> </li> </ul>																						

항 목	내 용
<p>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b>(22년 1월 변경)</b></p>	<p>★○ 서비스 형태(22년 1월 변경) : 기관방문형 원칙 - 등록 군·구에 <u>신고된 전용공간에서만</u> 서비스 제공 가능</p> <p>※ <b>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p> <p>※ <b>이용자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인 또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거동불편 사실이 확인가능한 이용자의 경우 재가방문형 허용(제공기관 등록 군구와 이용자의 거주 군구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허용)</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재가방문형 제공 이용자 관련 제공기관이 구비해야하는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동이 불편한 장애, 뇌병변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이용자 관리파일에 구비</li> <li>▷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거동불편 사실이 확인가능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동불편 사실이 명시되어 있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u>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u></li> </ul> </li> </ul> <p>※ <b>이용자와의 계약 및 초기상담 단계에서 증빙자료를 전달받아 파일에 보관</b></p> </div> <p>○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 이상)</p> <p>○ <b>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p>
<p>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b>(22년 1월 변경)</b></p>	<p>○ <b>제공기관 등록</b> : 안마원개설신고증명서 별도 제출</p> <p>○ <b>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b> - 제공기관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대인/대물 보상) ※<b>계약자의 특성으로 인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 제공기관에 대한 화재보험만으로 예외적 인정</b></p> <p>○ <b>해당 사업 등록 희망 제공기관은 별도로 연간매뉴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b></p> <p>○ <b>2022년부터 별도 사무실 시설이 없는 경우에도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전용공간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되며, 사업운영과 관련된 서류 보관 및 이용자 상담 등을 위한 공간이 필요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제공기관의 고려는 필요함.</b></p>

#### ④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시·군·구 공동개발) / 사업코드 090105

항 목	내 용									
목 적	정신질환자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	○	○	○	○	○	○	X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22년 1월 변경)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 및 선정기준	<p>다음 ①,②,③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p> <p>① <b>만 65세이상</b>이면서 <b>정신장애인</b>에 해당하는 자(*연령:~1957.12.31.) ※ 만 65세이상의 경우, 정신장애인 이외에 신청불가함.</p> <p>② <b>만 64세이하</b>면서 정신장애인에 해당하거나 또는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소견서)가 제출가능한 자 (*연령:1958.01.01.~)</p> <p>③ 6개월 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p> <p>☞ ③는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p>								
	우선순위	<p>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p> <p>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3.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p>								
	★ 중복제한 (22년 1월 변경)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미추홀구), <b>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성인심리상담서비스(22년 1월 추가)</b>								
	유의사항	<p><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한 자는 퇴원일로부터 60일 경과 후 신청가능</p> <p><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p>								

항 목	내 용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33 472 780 607">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td> <td data-bbox="780 472 1476 607">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td> </tr> </table>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33 607 780 703">신청자가 만14세이상~ 만19세미만인 경우</td> <td data-bbox="780 607 1476 703">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b>※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b> </td> </tr> </table>	신청자가 만14세이상~ 만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b>※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b>		
신청자가 만14세이상~ 만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b>※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b>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33 703 780 799">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td> <td data-bbox="780 703 1476 799">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b>※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b> </td> </tr> </table>	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b>※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b>		
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b>※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b>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⑤ <b>소득기준이 부합한 경우</b> , 다음 중 택 1하여 제출 ⑤-1.정신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정신장애) ⑤-2 장애인등록증(정신장애) 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⑤-3. <b>[우선 선정]</b>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추천공문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 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b>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33 1099 512 1339"> <b>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b> </td> <td data-bbox="512 1099 1476 1339"> <b>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 음에 유의)</li> <li>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td> </tr> <tr> <td data-bbox="333 1361 512 1666"> <b>제공인력 기준</b> </td> <td data-bbox="512 1361 1476 1666"> <b>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b>※ 제공기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월사례회의 시 슈퍼바이저 자격으로 월 1회 만 초빙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점검 시 확인사항)</b></li> <li>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li> </ul> </td> </tr> </table>	<b>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b>	<b>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 음에 유의)</li> <li>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b>제공인력 기준</b>
<b>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b>	<b>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 음에 유의)</li> <li>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b>제공인력 기준</b>	<b>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b>※ 제공기관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월사례회의 시 슈퍼바이저 자격으로 월 1회 만 초빙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점검 시 확인사항)</b></li> <li>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또는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li> </ul>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33 1666 472 1906" rowspan="2">서비스 가격</td> <td data-bbox="472 1666 1476 1787"> <b>▶ 월 20만원</b>            [정부지원금] 18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td> </tr> <tr> <td data-bbox="472 1787 1476 1906"> <b>▶ 회차별 금액</b>            [정부지원금] 45,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5,000원씩 산정         </td> </tr> </table>	서비스 가격	<b>▶ 월 20만원</b> [정부지원금] 18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b>▶ 회차별 금액</b> [정부지원금] 45,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5,000원씩 산정
	서비스 가격		<b>▶ 월 20만원</b> [정부지원금] 18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b>▶ 회차별 금액</b> [정부지원금] 45,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5,000원씩 산정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33 1906 472 1984">이용자별 제공기간</td> <td data-bbox="472 1906 1476 1984">12개월(2회 재판정 가능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td> </tr> </table>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2회 재판정 가능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2회 재판정 가능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항 목	내 용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질환의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li> </ul>			
	구분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검사 및 상담	<p>▶ 이용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도구 <b>2종 이상</b> 실시 (우울척도 등)</p> <p>▶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p> <p>➔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p>	서비스횟수 연 2회
		증상에 따른 개입서비스	<p>※사전·사후 검사 및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상태를 파악하여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p> <p>▶ <b>위기상황 개입</b> : 위기상황에서 안정할 수 있도록 가족 및 이용자에게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입·퇴원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의 료서비스를 연계</p> <p>▶ <b>증상관리(약물관리)</b> : 증상악화·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확인관리 및 의료시스템과 연계된 약물 관리 지원, 현실과 증상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지재활 제공 및 역할·과제부여를 통한 증상완화 지원</p> <p>▶ <b>일상생활지원</b> :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의 욕구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매체를 이용하여 지원함</p> <p>▶ <b>사회적응 및 취업지원</b> :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참여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고, 취업에 필요한 기술 및 취업 후 안정적 적응을 위한 상담서비스 제공</p> <p>➔ 상담일지 별도첨부</p>	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 이상)
	<p>(바우처 결제불가)</p> <p>1. <b>가족교육</b> : 가족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용자를 이해하고 케어력을 향상</p> <p>2. <b>여가활동</b> : 가족, 이웃과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등의 여가활동 제공</p>		선택적 제공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단계 : 증상, 기능에 대한 평가 및 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의 구체적 계획 수립 (시작 시 사전검사 2종 이상 의무 실시)</li> <li>② 2단계 : 개인별 증상이나 기능의 수준에 따라 개입서비스를 선별·혼합하여 제공</li> <li>③ 3단계 : 이용자의 취업, 사회관계망, 이용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서비스 성과를 측정함 (종료시 사후검사 2종 이상 의무 실시)</li> </ol>				

항 목	내 용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재가방문형</li> <li>○ 서비스 집단 규모 1:1 (제공인력 1명당 1명의 이용자에 서비스 제공)</li> <li>○ 사전·사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li> <li>-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li> <li>- 검사도구 : 우울척도 검사 등 2종 이상 실시</li> <li>- 검사와 함께 이용자의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지역사회 자원 등 점검</li> <li>-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b>각 1회씩</b>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주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p> </div> </li> <li>○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li>-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상태·평가 등은 <b>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b></li> </ul> </li> <li>○ 특히 이용자 개별 관리에 유의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별 초기상담, 욕구사정 결과 및 자원 동원 계획, 개인별 연간/월간 서비스 계획 작성·관리 철저</li> </ul> </li> <li>○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b>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b>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 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li> <li>○ 정신건강전문요원 채용 및 활용 : 정신건강전문요원의 1명 이상 채용 또는 월 1회 이상 초빙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의한 <b>월1회 이상의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제공인력 교육 등</b> 필수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b>근로계약 체결 필수</b></li> <li>- 사례회의 및 슈퍼비전 제공 ➔ 사례회의 내용 및 대상자별 슈퍼비전 내용 <b>별도 관리</b></li> <li>-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 제공 ➔ 제공인력 교육일지 등으로 교육내용 <b>별도 관리</b> (교육이수시간에는 산정되지 않음)</li> </ul> </li> </ul>

항 목	내 용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b>보강 실시 방법(21년 변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u>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u></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p>○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p> <p>○ <b>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p>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p>○ <b>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대인/대물 보상)</li> <li>-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 보상)</li> </ul> <p>○ 제공기관 등록 시, <b>세부 개입서비스 내용을 포함한</b>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 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전국표준형) / 사업코드 070101

항 목	내 용									
목 적	장애아동의 보조기기, 자세유지도구 구입 및 리폼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특수 장애아동의 신체발달 지원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마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	○	○	○	○	○	○	○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 타 시·도 제공기관 이용 가능										
서비스 대상 ※소득, 연령,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소득	없음								
	연령	만 24세(1998년생) 이하 장애인 (*연령:1998.01.01.~ ) ※단, 6세 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선정기준	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자 ② 척수장애, 근이영양증(근디스트로피/muscular dystrophy)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장애(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로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지체/뇌병변)을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자로 인정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신청자가 만19세이상~만24세이하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⑤-1.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를 가진 아동 : 장애인등록증(지체/뇌병변) ⑤-2. 척수장애 또는 근이영양증(근디스트로피/muscular dystrophy)을 가진 아동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척수장애 또는 근이영양증에 대한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 ⑤-1과 ⑤-2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제출 ※예외 경우 인정에 따른 필요서류(만 6세 미만이면서 지체·뇌병변장애가 예견되는 아동)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지체·뇌병변장애 예견에 대한 의사진단서 ※예외 경우 인정에 따른 필요서류2(정신적 장애이면서 지체·뇌병변장애 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자) - 장애인등록증 (부장애 : 지체/뇌병변)										

항 목	내 용														
<p>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p>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b>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27 392 1471 600"> <tr> <td data-bbox="327 392 502 600"> <p>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p> </td> <td data-bbox="502 392 1471 600"> <p><b>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327 622 1471 1406"> <tr> <td data-bbox="327 622 502 1406"> <p>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p> </td> <td data-bbox="502 622 1471 1406"> <p><b>다음 ①,②,③,④,⑤,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b></p> <p>① 보조공학, 재활공학, 장애인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p> <p>㉠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써,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div> <p>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p> <p>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에 의한 의지·보조기 기사</p> <p>④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또는 물리치료사</p> <p>⑤ "노인복지법"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p> <p>⑥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 재활에 관한 민간자격 소지자</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j.or.kr">pqj.or.kr</a>(<b>민간자격정보서비스</b>) 에서 조회바람</p> </td> </tr> </table>	<p>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p>	<p><b>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p>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p>	<p><b>다음 ①,②,③,④,⑤,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b></p> <p>① 보조공학, 재활공학, 장애인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p> <p>㉠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써,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div> <p>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p> <p>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에 의한 의지·보조기 기사</p> <p>④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또는 물리치료사</p> <p>⑤ "노인복지법"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p> <p>⑥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 재활에 관한 민간자격 소지자</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j.or.kr">pqj.or.kr</a>(<b>민간자격정보서비스</b>) 에서 조회바람</p>										
	<p>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p>	<p><b>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p>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p>	<p><b>다음 ①,②,③,④,⑤,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b></p> <p>① 보조공학, 재활공학, 장애인 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p> <p>㉠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 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분야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써,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div> <p>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p> <p>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에 의한 의지·보조기 기사</p> <p>④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또는 물리치료사</p> <p>⑤ "노인복지법"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p> <p>⑥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 재활에 관한 민간자격 소지자</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j.or.kr">pqj.or.kr</a>(<b>민간자격정보서비스</b>) 에서 조회바람</p>														
<p>서비스 가격/ 제공기간</p>	<p>▶ 월 12만원 (정부지원 70~90% / 본인부담 10~30%)</p> <table border="1" data-bbox="478 1467 1471 1697"> <thead> <tr> <th data-bbox="478 1467 630 1568">구분</th> <th data-bbox="630 1467 885 1568">(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 data-bbox="885 1467 1189 1568">(2등급) 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h data-bbox="1189 1467 1471 1568">(3등급) 중위소득 140%초과 ~</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78 1568 630 1630">정부 지원금</td> <td data-bbox="630 1568 885 1630">108,000원(90%)</td> <td data-bbox="885 1568 1189 1630">96,000원(80%)</td> <td data-bbox="1189 1568 1471 1630">84,000원(70%)</td> </tr> <tr> <td data-bbox="478 1630 630 1697">본인 부담금</td> <td data-bbox="630 1630 885 1697">12,000원(10%)</td> <td data-bbox="885 1630 1189 1697">24,000원(20%)</td> <td data-bbox="1189 1630 1471 1697">36,000원(30%)</td> </tr> </tbody> </table> <p>▶ 바우처 : 반기분 생성</p> <p>▶ 장애아동이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등급씩 하향조정 (3등급→2등급, 2등급→1등급)</p> <table border="1" data-bbox="327 1836 1471 1946"> <tr> <td data-bbox="327 1836 454 1946">이용자별 제공기간</td> <td data-bbox="454 1836 1471 1946">12개월 (5회 재판정 가능 / <b>최대 72개월까지</b> 지원 - 2019년 확대적용) ※ 생애 한번 이용 가능</td> </tr> </table>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40%초과 ~	정부 지원금	108,000원(90%)	96,000원(80%)	84,000원(70%)	본인 부담금	12,000원(10%)	24,000원(20%)	36,000원(30%)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5회 재판정 가능 / <b>최대 72개월까지</b> 지원 - 2019년 확대적용) ※ 생애 한번 이용 가능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 중위소득 140%초과 ~												
정부 지원금	108,000원(90%)	96,000원(80%)	84,000원(70%)												
본인 부담금	12,000원(10%)	24,000원(20%)	36,000원(30%)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5회 재판정 가능 / <b>최대 72개월까지</b> 지원 - 2019년 확대적용) ※ 생애 한번 이용 가능														

항 목	내 용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p><b>1) 서비스 내용</b></p> <table border="1" data-bbox="316 353 1471 719"> <thead> <tr> <th data-bbox="316 353 459 398">구분</th> <th data-bbox="459 353 1254 398">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54 353 1471 398">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16 398 459 551">보조기기 렌탈서비스</td> <td data-bbox="459 398 1254 551"> <b>1. 보조기기 및 자세유지도구 등 맞춤형 렌탈서비스</b>            -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보조기기 렌탈            * 렌탈품목 : 이너, 카시트, 자전거, 목욕의자, 스탠더 등         </td> <td data-bbox="1254 398 1471 551">12개월</td> </tr> <tr> <td data-bbox="316 551 459 719"></td> <td data-bbox="459 551 1254 719"> <b>2.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b>            - 정기점검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변경, 맞춤보정 등  <b>(반기별 최소1회 이상)</b>            - 수시점검 :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정기점검 이외의 점검         </td> <td data-bbox="1254 551 1471 719">           정기점검 (연 2회 이상)             수시점검 (제한없음)         </td> </tr> </tbody> </table> <p><b>2) 서비스 제공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단계 : 신청자의 증상·욕구조사  <b>(이용자의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수준의 초기상담 및 초기상담기록지 작성 필수)</b>        ➔ <b>사업별서식 제3호 활용</b></li> <li>○ 2단계 : 이용자와의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물품인도확인서 작성)</li> <li>○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 및 회수 등 서비스 제공</li> <li>○ 4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욕구 조사</li> </ul>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b>1. 보조기기 및 자세유지도구 등 맞춤형 렌탈서비스</b> -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보조기기 렌탈 * 렌탈품목 : 이너, 카시트, 자전거, 목욕의자, 스탠더 등	12개월		<b>2.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b> - 정기점검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변경, 맞춤보정 등 <b>(반기별 최소1회 이상)</b> - 수시점검 :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정기점검 이외의 점검	정기점검 (연 2회 이상)  수시점검 (제한없음)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b>1. 보조기기 및 자세유지도구 등 맞춤형 렌탈서비스</b> -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성장단계에 적합한 보조기기 렌탈 * 렌탈품목 : 이너, 카시트, 자전거, 목욕의자, 스탠더 등	12개월								
	<b>2. 점검 및 유지보수 서비스</b> - 정기점검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변경, 맞춤보정 등 <b>(반기별 최소1회 이상)</b> - 수시점검 : AS, 소모품교환, 수리, 교정 등 정기점검 이외의 점검	정기점검 (연 2회 이상)  수시점검 (제한없음)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형태 : 재가방문형</li> <li>○ 서비스 집단규모 1:1</li> <li>○ 반드시 <b>1년 단위로 계약</b>하여야 하며, <b>1년 단위 소요가능금액</b>으로 렌탈이 가능해야 함.        - 등록기관은 등록조건 및 준수사항을 준용하여 서비스 운영</li> <li>○ 초기 단계에 이용자에게 렌탈가능한 목록 및 제품인도 소요시간 고지할 것        ➔ <b>물품인도확인서 필수 작성</b></li> <li>○ 사전·사후 검사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는 서비스 효과성 측정을 위한 '사전·사후검사'를 '<b>초기상담기록지</b>'로 갈음할 수 있음. 단,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인정</li> <li>○ 이용자 상담 및 보조기기 점검 관련 <b>초기상담기록지, 제공계약서, 제공기록지 등 작성 철저 (사업별서식 제3-1호, 제3-2호, 제17호 활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계약 시 보조기기 종류, 명칭, 가격 기록(가격 대비 종료월 관리)</li> <li>- <b>제공기록지</b> : 보조기기 납품(대상자 수령), AS, 특이사항 상세히 기록            -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li>- <b>정기·수시점검 별지 작성</b></li> <li>- 초기상담기록지 : 이용자 욕구사정, 기본정보,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상세히 기록</li> <li>- <b>최소 반기별 1회 이상 반드시 점검 및 유지보수서비스 제공</b></li> </ul> </li> </ul>									

항 목	내 용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결제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u>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u>이 직접 결제</li> <li>- 이용자가 보조기기를 수령한 후, 정부지원금 결제 (선결제 불가) ➡ <b>반기별 결제</b></li> </ul> </li> <li>○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연 2회이상)</li> <li>○ <b>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li> </ul>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대인/대물 보상)</li> <li>-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 보상)</li> </ul> </li> <li>○ <b>해당 사업 등록 희망 제공기관은 별도로 연간매뉴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됨</b></li> </ul>

## ⑥ 장애인 재활승마 서비스 (시·군·구 공동개발) / 사업코드 200205

항 목	내 용									
목 적	재활승마를 통해 자세교정 및 균형감각을 향상, 자발적인 행동 증가로 심리적 안정 및 사회성을 향상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	○	○	○	○	○	○	X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및 선정기준	만 6세(2016년생) 이상의 등록장애인(*연령:~2016.12.31.)								
	우선순위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인재활승마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li> <li>■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li> </ul>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9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li> </ul>								
	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li> <li>※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li> </ul>								
⑤장애인등록증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b> 되어야 함.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신고된 승마장을 소유한 기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전용공간(승마장)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li>■ 2015년 이전 등록기관 : 계약 중인 전용시설과의 계약사항을 군구에 제출하여 보고(시설이용확인서 별도 제출)</li> <li>■ 2015년 이후 등록기관 : 승마장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어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받은 전용시설을 소유한 기관만 등록 가능함</li> </ul>								

항 목	내 용												
	<p><b>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b></p> <p><b>서비스 1회 제공 시 교관1인, 리더1인, 사이드 워커2인 동시 참여</b></p> <p>○ <b>교관 제공인력은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인)</b>          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로 자격취득 이후의 승마지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② 마필관련학 전공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취득 이후 승마지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말산업육성법" 제12조에 따른 재활승마지도사          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승마관련 지도자(지도자 보조자격은 제외)로서 승마지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①,②,④에서 규정하는 실무경력은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에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을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b>리더 제공인력은 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1인)</b>          ① 사이드워커 경력 100회 이상인자(실제 제공횟수가 기입된 경력증명서 제출)          ②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승마관련 지도자 민간자격증 소지자</p> <p>○ <b>사이드 워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2인)</b>          - 교관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10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자(교육확인증 제출)</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i.or.kr">pqi.or.kr</a>(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조회바람</p>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p>▶ 월 22만원(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p> <table border="1" data-bbox="475 1070 1469 1256">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h>(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th> </tr> </thead> <tbody> <tr> <td>정부 지원금</td> <td>198,000원(90%)</td> <td>187,000원(85%)</td> <td>176,000원(80%)</td> </tr> <tr> <td>본인 부담금</td> <td>22,000원(10%)</td> <td>33,000원(15%)</td> <td>44,000원(20%)</td> </tr> </tbody> </table> <p>* 2018년부터 서비스 가격 조정 및 차등화 적용</p> <p>▶ <b>회차별 금액</b>          [정부지원금] 1등급:49,500원 / 2등급:46,750원 / 3등급:44,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5,500원 / 2등급:8,250원씩 / 3등급:11,000원씩 산정</p> <p><b>이용자별 제공기간</b> 12개월 (재판정1회, 최대 24개월까지 지원가능)</p>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정부 지원금	198,000원(90%)	187,000원(85%)	176,000원(80%)	본인 부담금	22,000원(10%)	33,000원(15%)	44,000원(2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정부 지원금	198,000원(90%)	187,000원(85%)	176,000원(80%)										
본인 부담금	22,000원(10%)	33,000원(15%)	44,000원(20%)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20 1563 1477 2007"> <thead> <tr> <th>구 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제공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본서비스</td> <td>1. 사전·사후 검사 -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성기능 등 현재 상태 파악 - 검사지 : 기초신체검사, 기승평가검사 실시 2종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r> <td>2. 재활승마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신뢰관계 형성 - 각 회당 준비시간 10분, 기승 20분, 부모상담 10분 - 재활승마프로그램 실시 →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주1회씩 월 4회 (회당 40분)</td> </tr> </tbody> </table>	구 분	서비스 내용	제공 횟수	기본서비스	1. 사전·사후 검사 -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성기능 등 현재 상태 파악 - 검사지 : 기초신체검사, 기승평가검사 실시 2종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2. 재활승마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신뢰관계 형성 - 각 회당 준비시간 10분, 기승 20분, 부모상담 10분 - 재활승마프로그램 실시 → 상담일지 별도첨부	주1회씩 월 4회 (회당 4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제공 횟수											
기본서비스	1. 사전·사후 검사 -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성기능 등 현재 상태 파악 - 검사지 : 기초신체검사, 기승평가검사 실시 2종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2. 재활승마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신뢰관계 형성 - 각 회당 준비시간 10분, 기승 20분, 부모상담 10분 - 재활승마프로그램 실시 → 상담일지 별도첨부	주1회씩 월 4회 (회당 40분)											

항 목	내 용
	<p>▶ 서비스 제공 절차</p> <p>① 1단계 :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성기능 등 현재 상태파악 및 상담(사전검사 2중 의무 실시)</p> <p>② 2단계 : 승마프로그램 실시</p> <p>③ 3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및 만족도검사(사후검사 2중 의무 실시)</p>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p> <p>○ 서비스 집단규모 4:1 (제공인력 4명과 이용자 1명 매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서비스 제공시 <u>이용자 1명당 교관 1명+리더 1명+사이드 워커 2명</u> 필요</li> <li>- 교관 1인이 동시에 이용자 3명 서비스 제공가능</li> </ul> <p>○ 사전·사후 검사 : <b>기초신체검사, 기승평가검사 총 2중 실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li> <li>-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일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일 실시</li> <li>☞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li> </ul> <p>○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b>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li>-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상태·평가 등은 <b>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b></li> </ul> <p>○ 결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b>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b>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p>○ 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u>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u></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u> 할 수 없음.</li> </ul> <p>○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 이상)</p> <p>○ <b>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p>

항 목	내 용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00 387 683 427">구 분</th> <th data-bbox="683 387 1495 427">세부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0 427 683 555">2015년 이전 등록제공기관</td> <td data-bbox="683 427 1495 555">-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 보상) -서비스 제공장소로 신고한 시설(승마장)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보상)</td> </tr> <tr> <td data-bbox="300 555 683 629">2015년 이후 등록제공기관</td> <td data-bbox="683 555 1495 629">-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보상)</td> </tr> </tbody> </table>	구 분	세부사항	2015년 이전 등록제공기관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 보상) -서비스 제공장소로 신고한 시설(승마장)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보상)	2015년 이후 등록제공기관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보상)
	구 분	세부사항					
	2015년 이전 등록제공기관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대인/대물 보상) -서비스 제공장소로 신고한 시설(승마장)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보상)					
	2015년 이후 등록제공기관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대인/대물 보상)					
- 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보호 대책안' 수립 필수 (사업별서식 제14호 참고)							
○ 제공기관 등록 시, <a href="#">체육시설업(승마장) 신고증명서</a> 제출 필수							
○ 제공기관 등록 시, 세부 프로그램에 대한 <a href="#">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a>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7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 (사·군·구 공동개발) / 사업코드 130305

항 목	내 용									
목 적	진로발달과정상 진로인식 단계에 해당되는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비전형성과 진로탐색 교육 및 체험을 실시하여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직업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 및 진로에 대한 정보 안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진로발달을 도모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마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	○	○	○	○	○	○	X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	만 7세(2015년생)~만 15세(2007년생) 이하 아동·청소년 (*연령 : 2007.01.01.~2015.12.31.)								
	우선순위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li> <li>■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li> </ul>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5세이하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b> 되어야 함.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6.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b>[추가확보시설 인정범위]</b>                      강화군, 중구 용유도에 한하여 등록 군구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 사회복지관 추가 활용가능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도 추가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36.3㎡이상이어야 함.</li> <li>- '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li> <li>-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li> </ul> </li> </ul>								

항 목	내 용
-----	-----

<b>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b>	<p>○ <b>교육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④,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강화군은 ⑥ 포함)</b></p> <p>①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초등학교정교사나 중학교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 제 2항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따른 직업상담사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p> <p>②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p> <p>③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p> <p>④ 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 등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자</p> <p>㉠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직업탐색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p> <p>㉡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직업탐색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p> <p>㉢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직업탐색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p> <p>⑤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취득한 자격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⑥ 강화군만 해당 : 인문학, 사회과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소지자로서 학위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직업탐색프로그램 경력이 1년 이상인자</p> <hr/> <p>○ <b>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b></p> <p>① 인문학(문학, 역사학, 철학), 사회과학(사회학, 정치·외교학, 법학, 종교학, 도덕학, 인류학, 경영학, 심리학, 지리학, 교육학, 행정학, 여성학, 언론·방송·매체학, 사회복지학, 아동청소년학, 관광학), 교육학, 자연과학(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천문학, 해양학, 지학)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p> <p>㉠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p> <p>㉡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p> <p>㉢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체험분야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p> <p>② 교육프로그램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p> <p>* ①에서 규정하는 전공 외에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	---

※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해당 학위 및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해당하는 것만 인정가능함.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pqi.or.kr](http://pqi.or.kr)(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조회바람

항 목	내 용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월 16만원 (정부지원 70~80% / 본인부담 20~3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28,000원(80%)	112,000원(70%)
	본인부담금	32,000원(20%)	48,000원(30%)	
		<b>▶ 회차별 금액</b> [정부지원금] 1등급:32,000원씩 / 2등급:28,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8,000원씩 / 2등급:12,000원씩 산정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b>▶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b> <b>→ 12개월 중 비전형성서비스 4개월+직업탐색서비스 8개월 시행</b>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서비스 횟수	
	기 본 서 비 스	사전사후 검사	이용자 연령에 맞는 검사도구를 선택하여 총 2종 실시 ▷ 비전형성서비스 검사도구(택 1 이상) -자아존중감심리검사, SLT자기조절학습검사 ▷ 직업탐색교육서비스 검사도구(택 1 이상) -홀랜드진로발달검사, 진로인식검사, 진로적성검사 <b>→ 검사결과지 별도첨부</b>	연 2회
		비전형성 서비스 (총 4개월)	-교육프로그램 : 자존감회복, 라이프코칭, 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자기이해증진	4개월 (12회) 월 3회 회당 120분
			-비전체험프로그램 : 비전형성서비스와 관련된 외부 체험 실시	4개월 (4회) 월 1회 회당 360분 이상
직업탐색 서비스 (총 8개월)		-교육프로그램 : 진로정보탐색, 직업 세계의 이해, 진로설계	8개월 (24회) 월 3회 회당 120분	
	-직업탐색체험서비스 : 직업탐색교육서비스와 관련된 외부 체험 실시	8개월 (8회) 월 1회 회당 360분 이상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학부모 진로교육 (자녀 진로지도 방법, 직업세계의 이해과정 등) -전화, 상담, 집합교육 등의 형식으로 진행	월 1회 제공 (제공기록지 기록 필수) (바우처 결제불가)		

**▶ 서비스 제공절차**

- ① 1단계 : 이용자의 현재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검사 실시(비전 1종, 직업 1종 총 2종 이상)
- ② 2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교육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제공  
매월 학부모 진로교육서비스(자녀 진로지도방법, 직업세계의 이해과정 등) 실시
- ③ 3단계 : 서비스 종결 및 만족도검사, 사후검사 실시(비전 1종, 직업 1종 총 2종 이상)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p> <p>※ 단, 강화군, 중구 용유도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을 추가확보시설로 활용이 가능함 (군구 사전승인 필수)</p> <p>⇒ 추가확보시설 신고 시,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시설이용확인서’ 별도 제출</p>
---------------------	--

항 목	내 용
-----	-----

**[추가 제출서류 : 시설이용확인서]**

- ▷ 필수 명시 사항
  - 이용일자, 시간, 장소, 양측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의무 및 서명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
  -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용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 수립하여 함께 제출
- ▷ 사업별서식 제5호 활용
- ▷ 타 제공기관과 시설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각 기관별 이용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
- ▷ **학교/사회복지관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 제공기관이 가입주체 (대인/대물 보상)

○ **서비스 집단규모**

- 교육프로그램 1:10이하(제공인력 1명당 10명이하의 이용자 매칭)
- 체험활동프로그램 1:15이하(제공인력 1명당 15명이하의 이용자 매칭)

○ **사전·사후 검사**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이며, 이용자 연령에 맞는 검사도구를 선택하여 실시한 후, 검사 결과지 구비 (21년 2월 수정)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검사도구 (각 서비스당 1종 이상 실시, **총 2종** 필수 실시)

서비스명	검사도구
비전형성서비스	자아존중감심리검사, SLT자기조절학습검사 중 1종 이상 실시
직업탐색서비스	홀랜드진로발달검사, 진로인식검사, 진로적성검사 중 1종 이상 실시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

(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주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 **부모교육 및 상담** 내용 반드시 제공기록지에 작성 : **실시방법, 제공내용 등 구체적 기록**

○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비전형성·직업탐색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 유의사항**

- 반드시 **체험프로그램과 연계된 교육내용**이어야 함. ... **절대 다른활동으로 대체될 수 없음**
- 서비스 세부 매뉴얼 예시에 준하는 교육 실시(붙임자료 참고)
- 초등학생(저학년/고학년), 중학생에 따라 이용자의 연령 수준에 맞도록 매뉴얼 구성 및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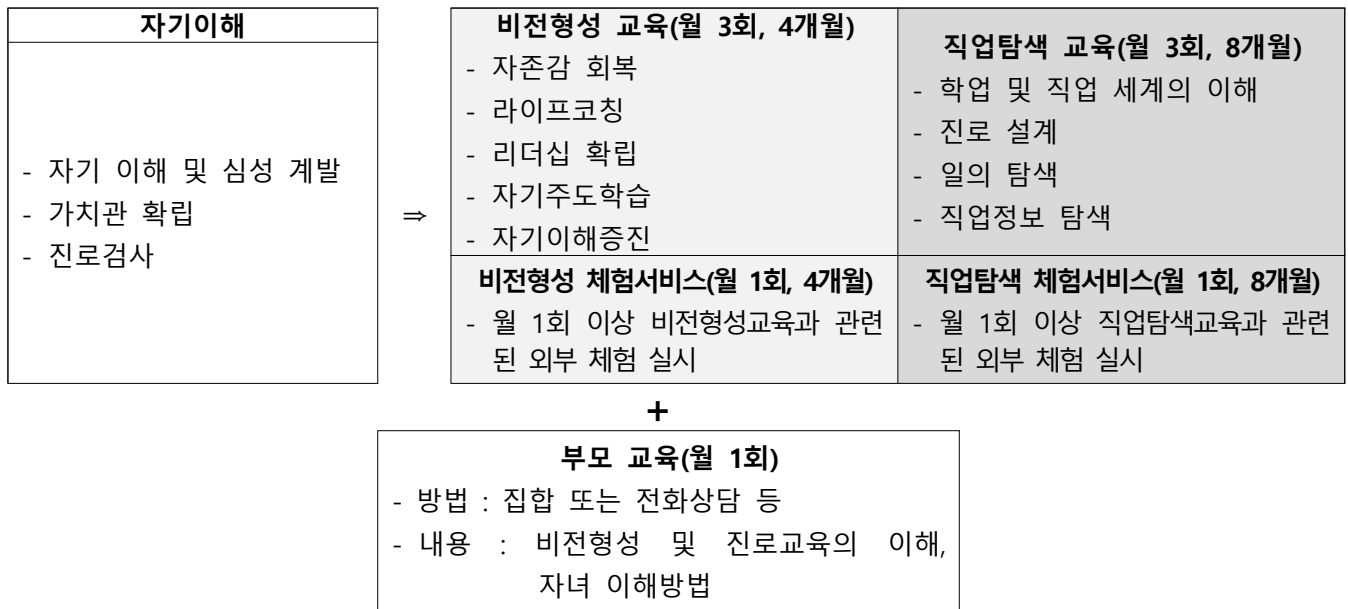
항 목	내 용
	<p>○ 비전형성·직업탐색 <b>체험프로그램</b> 진행 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드시 <u>교육프로그램과 연계된 체험활동</u>이어야 함. ... <b>절대 다른활동으로 대체될 수 없음</b></li> <li>- 서비스 세부 매뉴얼 예시에 준하는 교육 실시(붙임자료 참고)</li> <li>- <b>7천원 이상의 유료 상품(체험비 및 입장료 등)</b> 실시 계획을 포함할 것</li> <li>- 등록 군구가 승인한 정식 제공인력이 아닌 <u>자원봉사자나 인턴 투입 불가</u></li> <li>- <b>제공기관 안전관리 준수사항 (21년 2월 수정)</b></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b>구비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임대계약서(자차인 경우 제외) : 양측의 안전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명시</li> <li>▷ 차량보험가입증명서(용도:영업용)</li> <li>▷ 차량등록증</li> <li>▷ 체험활동 개요 및 일지</li> <li>▷ 보호자동의서(사업별서식제25호)</li> <li>▷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u>사전 안전교육일지</u></li> <li>▷ 비상연락망</li> <li>▷ 여행자보험 서류(당일 참여자 전체 가입)</li> <li>▷ 체험시설 안전사항 확인 기록지(자체 서식 활용)</li> </ul>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상시로 자체 차량 운행 시, 등록 군구에 사전 보고 필수(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 임대인 경우 차량임대계약서 제출)</p> </div> <p>○ 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u>앞당겨서</u> 실시할 수는 없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 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u> 할 수 없음.</li> </ul> <p>○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연 2회이상)</p>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p>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p>○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li> <li>- 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사업별서식 제4호 참고)</li> </ul> <p>○ 제공기관 등록 시, <b>비전형성&amp;직업탐색 모듈을 포함한</b>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u>서비스 내용</u>'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 비전형성서비스 4개월분(교육/체험), 직업탐색서비스 8개월분(교육/체험) 포함</p> </div>

## (붙임 1) 아동청소년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 참고자료

### 1. 사업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

- 「아동청소년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는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과 더불어 진로탐색을 통해 '다양한 일에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와 '직업의 기능 및 중요성 이해'를 도와 진로발달을 도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비전형성, 진로교육과 체험서비스가 서로 연계되어야 함.
- 서비스의 효과성 측정을 위하여 사전·사후 검사 실시
  - 검사 유형
    - 진로종합검사, 진로심리검사(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 [www.jinhak.or.kr](http://www.jinhak.or.kr))
    - 직업심리검사 등(워크넷 [www.work.go.kr](http://www.work.go.kr))
    - 진로인성검사, 자아가치관 등(한국 가이던스 [www.guidance.co.kr](http://www.guidance.co.kr))
    - SLT자기조절학습검사(한국 가이던스 [www.guidance.co.kr](http://www.guidance.co.kr))
- 사업 세부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저학년/고학년), 중학생에 따라 각 수준에 맞도록 매뉴얼 구성 필요

### 2. 월별 사업 흐름



### 3. 직업탐색 프로그램 관련 사이트

- 진로정보망 커리어넷 [www.career.go.kr](http://www.career.go.kr)
- 서울진학진로정보센터 [www.jinhak.or.kr](http://www.jinhak.or.kr)
- 한국 가이던스 [www.guidance.co.kr](http://www.guidance.co.kr)
- 워크넷 [www.work.go.kr](http://www.work.go.kr)

**비전형성서비스 매뉴얼 예시 (총 4개월)**

회기	분류	내용	회기	분류	내용
1	비전 교육 1	<p>&lt;워밍업&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성원과 라포형성을 위한 레크레이션</li> <li>-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의 비전형성서비스 안내</li> </ul> <p>&lt;사전검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홀랜드 진로발달검사, 진로인식검사, 진로적성검사 중 1종 이상 실시</li> <li>- 자아존중감심리검사, SLT자기조절학습검사 중 1종 이상 실시</li> <li>※ 각 1종 씩, 총 2종을 필수로 실시</li> </ul>	2	비전 교육 2	<p>&lt;자기이해와 탐색-나는 어떤 사람인가요?&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기소개 및 별칭 정하기</li> <li>- 나에 대해서 알아보기 : 마인드맵 만들기</li> <li>- 나의 장단점 찾기 : 장점 사과나무</li> <li>- 자신의 잠재역량 계발하기 : 내안의 숨은 보물찾기</li> </ul>
3	비전 교육 3	<p>&lt;자기이해와 탐색-나의 가치관과 꿈 찾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역할 찾기</li> <li>- 가치관 이해 및 설정하기</li> <li>- 나의 가치관 발견하기</li> <li>- 나의 꿈 설계하기</li> </ul>	4	체험	<p>&lt;비전형성체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코엑스 아쿠아리움 체험활동 : 해양 생태계 관찰 및 체험활동, 해양관련 직업 학습 체험, 실생활에서 해양 생태계 활용 적용 사례 관찰 체험</li> </ul>
5	부모 교육	<p>&lt;부모교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검사 결과 안내 및 상담</li> <li>- 비전형성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및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비전형성을 위한 부모역할코칭 상담</li> </ul>	6	비전 교육 1	<p>&lt;자기주도학습- 학습동기부여와 목표설정&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부해야하는 이유에 대한 탐색</li> <li>- 전략과목/취약과목 탐색 : 성적표 분석</li> <li>- 나만의 공부목표 설정 : 학습목표 수치화</li> </ul>
7	비전 교육 2	<p>&lt;자기주도학습-학습 방법의 중요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수업시간의 중요성과 교과서 중심의 공부법 : 학교수업 10대 원칙</li> <li>- 필기의 중요성과 효율적인 필기 방법</li> <li>- 에습·복습의 방법</li> </ul>	8	비전 교육 3	<p>&lt;자기주도학습-시간관리의 중요성&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관리와 학습 플래너 작성하는 방법 : 우선순위 정하기</li> <li>- 학습시간표 만들기 및 자투리 시간 활용법</li> </ul>
9	체험	<p>&lt;비전형성체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교 탐방 및 관계자 면담</li> </ul>	10	부모 교육	<p>&lt;학습분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의 학습 습관을 알아보고, 자기주도적이며 효율적인 공부 방법 제시</li> </ul>
11	비전 교육 1	<p>&lt;자기이해-나와 주변관계 이해하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 주변 사람 알아보기(가족, 친구, 선생님)</li> <li>- 내 주변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 알아보기</li> <li>- 이들과 함께 잘 지내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 알아보기</li> </ul>	12	비전 교육 2	<p>&lt;라이프코칭-올바른 소통방법 알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율적인 경청기술 익히기</li> <li>- 커뮤니케이션 스킬 습득하기</li> </ul>
13	비전 교육 3	<p>&lt;라이프코칭-나를 변화시키는 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해무익 행동 프로그램</li> <li>- 나만의 원칙 세우기</li> <li>- 긍정습관 만들기 : 긍정적인/부정적인 말들이 미치는 영향</li> </ul>	14	체험	<p>&lt;비전형성체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절교육 및 다도체험</li> </ul>
15	부모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를 변화시키는 부모의 라이프코칭 방법</li> </ul>	16	비전 교육 1	<p>&lt;리더십향상-리더의 자질 기르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해결능력 키우기 :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li> <li>- 타인 존중과 배려의 방법</li> <li>- 도전과 실천의 법칙</li> </ul>
17	비전 교육 2	<p>&lt;리더십향상-꿈을 경영하라!&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꿈에 대한 의지와 몰입의 원칙</li> <li>- 자기 경영의 법칙</li> </ul>	18	비전 교육 3	<p>&lt;나의 비전세우기&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문, 미전문 만들기</li> <li>- 롤링페이퍼 쓰기</li> </ul>
19	체험	<p>&lt;비전형성체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국제공항/공항철도 체험 : 공항시설 관찰 체험, 공항관련 직업군 탐색 및 관찰 체험</li> </ul>	20	부모 교육	<p>&lt;부모교육&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에게 리더십을 키워주는 방법</li> </ul>

직업탐색교육서비스 매뉴얼 예시(총 8개월)

회기	분류	내용	회기	분류	내용
1	진로 교육 1	<워밍업> -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의 직업탐색교육서비스 안내 - 사전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현재의 나 알기	2	진로 교육 2	<진로정보탐색-진로의 이해와 탐색> - 진로의 중요성 이해와 인식 -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알아보고 실천하기 - 일을 즐겁게 할 때 좋은 점 살펴보기
3	진로 교육 3	<진로정보탐색-나의 적성과 진로/인문사회영역 직업군 탐색> - 나의 위치는 어디인가? : 알고 싶은 나 - 나의 적성과 진로 찾기 : 성격과 진로와의 관계 - 인문사회영역 직업탐색	4	체험	<진로체험-인문사회영역> - 경찰체험 - 경찰박물관 견학 및 체험
5	부모 교육	<학부모 진로교육-내 자녀 이해하기> - 아동·청소년의 진로 발달을 위한 학부모 코칭	6	진로 교육 1	<진로정보탐색-나의 꿈 찾기> - 나의 흥미와 진로 찾기 : '꿈 찾기 보물지도' 그리기
7	진로 교육 2	<진로정보탐색-일을 왜 하지?> - 가정, 학급에서 할 수 있는 일 알기 - 가정, 학급에서 나의 역할 알기	8	진로 교육 3	<진로정보탐색-문화·예술 분야 직업군 탐색> - 문화·예술 분야 직업의 종류 - 문화·예술 분야 직업을 갖기 위해 해야 하는 일 - 직업과 관련된 활동(동영상자료 감상, 만들기 활동 등)
9	체험	<진로체험-문화·예술 영역> - 한국영화박물관 견학 및 체험프로그램	10	부모 교육	<학부모 진로교육> - 내 자녀 진로지도 방법
11	진로 교육 1	<진로체험-직업 가치관 찾기> - 나의 직업 가치관 찾기 : 직업선택 우선순위 정하기	12	진로 교육 2	<진로정보탐색-이런 사람을 닮고 싶어요> - 내가 존경하는 사람 찾아보기 - 존경하는 사람의 성공요인 찾기
13	진로 교육 3	<진로정보탐색-우리 주위에는 여러 가지 직업이 있어요./이공계직업 탐색> - 주변 사람들의 직업 알아보기 - 가족, 친척의 직업에 대해 조사하기 - 이공계 직업의 종류에 대해 탐색	14	체험	<진로체험-이공계영역> - 자동차 관련 직종 - 현대모터스튜디오 견학하기
15	부모 교육	<학부모 진로교육> - 직업세계의 이해	16	진로 교육 1	<진로정보탐색-미래의 나의 모습> - 나의 꿈 펼쳐보기 : 미래의 나의 명함 - 내가 꿈꾸는 나의 인생
17	진로 교육 2	<진로정보탐색-직업은 소중한요> - 나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직업 알아보기 - 직업의 소중함 알기	18	진로 교육 3	<진로정보탐색-나는 이런분을 닮고 싶어요./이공계 영역 탐색> - 우리 가족, 선생님의 본받을 점, 훌륭한 점 찾아보기 - 이공계 영역 직업군 탐색
19	체험	<진로체험-이공계영역> - 항공관련직종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박물관 견학 프로그램	20	부모 교육	<학부모 진로교육> - 직업의 다양성과 직업세계 변화
21	진로 교육 1	<진로정보탐색-직업의 다양성> - 일과 삶의 보람 : 직업에 대한 편견 버리기 - 퍼즐로 맞춰보는 직업 : 퍼즐과 연상되는 직업 찾기	22	진로 교육 2	<진로정보탐색-행복한 삶과 직업> - 행복한 삶과 직업과의 관계 알아보기 - 직업을 통한 자아실현의 중요성 알아보기
23	진로	<진로정보탐색-나의 꿈을 들려줄게요>	24	체험	<진로체험-인문사회영역>

**직업탐색교육서비스 매뉴얼 예시(총 8개월)**

회기	분류	내용	회기	분류	내용
	교육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되고 싶은 것 발표하기</li> <li>- 친구들의 미래의 꿈 알아보기</li> </ul> <p><b>&lt;사후검사&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홀랜드 진로발달검사, 진로인식검사, 진로적성검사 중 1종 이상 실시</li> <li>- 자아존중감심리검사, SLT자기조절학습검사 중 1종 이상 실시</li> <li>※ 각 1종 씩, 총 2종을 필수로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 공무원, 국회의원</li> <li>- 국회의사당 체험 프로그램 실시</li> </ul>
25	부모 교육	<p><b>&lt;학부모 진로교육&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에게 꿈을 키워주는 방법</li> <li>- 내 자녀 진로지도 방법</li> <li>- 사후검사 결과 안내</li> </ul>	.	.	<p style="text-align: center;">총 8개월분 실시</p>
	체험 프로그램 예시	<p><b>&lt;이공계영역&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질관리사(암사아리수정수센터 견학 및 체험)</li> <li>- 은행관련(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견학 및 체험)</li> <li>- 자동차 관련(현대모터스튜디오 견학)</li> </ul>	체험 프로그램 예시	<p><b>&lt;인문사회영역&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업군인(육군사관학교 견학 및 체험)</li> <li>- 기자 및 편집관련(신문사 견학)</li> <li>- 방송관련(MBC 견학 프로그램, KBS 견학 홀 견학 프로그램, 서울특별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스스로넷 체험 프로그램)</li> <li>- 안보, 경찰관련 직종(안보전시관 체험 및 견학)</li> <li>- 외교관련(외교사료관 견학)</li> <li>- 입법 공무원, 국회의원(국회의사당 체험)</li> </ul>	
	체험 프로그램 예시	<p><b>&lt;문화·예술영역&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니메이션관련 직종(서울애니메이션센터 체험교실)</li> <li>- 영화관련(한국영화박물관 견학)</li> <li>- 전통공예관련(한국문화의 집 체험)</li> </ul>	체험 프로그램 예시	<p><b>&lt;기타&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 사육사(서울대공원 체험)</li> <li>- 제과 및 제빵사(떡 박물관 체험)</li> <li>- 화장품관련(Space C 견학)</li> </ul>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제공기관이 실시 가능한 매뉴얼 구성 필요**

## 8 장애인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시·군·구 공동개발) / 사업코드 200305

항 목	내 용										
목 적	성인병이 조기 발병하여 질환을 오랜 기간 보유하다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운동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건강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마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	○	○	○	○	○	X	○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및 선정기준	만 13세 (2009년생) 이상의 등록 장애인(*연령:~2009.12.31.)									
	우선순위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자가 만13세인 경우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9세미만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⑤장애인등록증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22년 1월 변경)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b> 되어야 함.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19년 8월 변경)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b>[추가확보시설 인정범위]</b>            제공기관이 <b>등록된 군구와 동일한 소재의</b>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에 한하여 추가 활용가능(등록 군구의 사전승인 필수)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년도 추가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33㎡이상이어야 함.</li> <li>'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li> <li>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li> </ul> </li> </ul>									

항 목	내 용										
	<p style="text-align: center;">★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22년 1월 변경)</p>	<p>○ <b>맞춤형운동서비스 제공인력 자격요건 :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b></p> <p>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생활스포츠지도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장애인 대상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p> <p>②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3에 의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장애인 대상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p> <p>③ 체육학 관련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장애인 대상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p> <p>④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소지자</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단, ①,②,③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해당 자격 및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해당하는 것만 인정가능함.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b>기초검사 및 운동처방 서비스 제공인력(1인 이상 필수)</b></p> <p>- 체육학 또는 특수체육학 전공 <b>석사이상 학위취득 후, 장애인 대상 운동지도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b></p>									
서비스 가격/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p>▶ 월 19만원</p> <table border="1" data-bbox="470 963 1412 1108">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2등급)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70,000원</td> <td>150,000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000원</td> <td>40,000원</td> </tr> </tbody> </table>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21,250원씩 / 2등급:18,75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2,500원씩 / 2등급:5,000원씩 산정</p>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70,000원	15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70,000원	15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서비스 내용/제공절차	이용자별 제공기간	<p>12개월</p>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 ※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필독</p> <table border="1" data-bbox="311 1422 1460 2004">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 및 횟수</th> <th>서비스 횟수('19년 8월 변경)</th> </tr> </thead> <tbody> <tr> <td>기 본 서비스</td> <td> <p>(사전·사후 검사 해당)</p> <p>▶ 이용자별 다음의 검사 실시 -기초체력검사 또는 체성분검사(택 1)</p> <p>▶ 전문가와의 건강상담, 등록상담, 욕구판정, 운동처방</p> <p>▶ '맞춤운동서비스' 초기 1회 실시 이전에 반드시 1회 실시해야 함(사전검사 겸 운동처방)하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운동서비스 실시</p> <p>➔ 제공기록지에 내용 작성, 검사결과지 별도첨부</p> <p>※맞춤운동서비스로 대체 불가(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경고 및 환수조치됨)</p> </td> <td> <p>분기별 1회</p> <p>(공통) 1:5이하</p> </td> </tr> <tr> <td></td> <td> <p>맞춤운동 서비스</p> <p>근력운동 및 유산소 운동</p> </td> <td> <p>주2회씩 월8회(회당 60분)</p> <p>(공통) 1:5이하</p> </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서비스 횟수('19년 8월 변경)	기 본 서비스	<p>(사전·사후 검사 해당)</p> <p>▶ 이용자별 다음의 검사 실시 -기초체력검사 또는 체성분검사(택 1)</p> <p>▶ 전문가와의 건강상담, 등록상담, 욕구판정, 운동처방</p> <p>▶ '맞춤운동서비스' 초기 1회 실시 이전에 반드시 1회 실시해야 함(사전검사 겸 운동처방)하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운동서비스 실시</p> <p>➔ 제공기록지에 내용 작성, 검사결과지 별도첨부</p> <p>※맞춤운동서비스로 대체 불가(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경고 및 환수조치됨)</p>	<p>분기별 1회</p> <p>(공통) 1:5이하</p>		<p>맞춤운동 서비스</p> <p>근력운동 및 유산소 운동</p>	<p>주2회씩 월8회(회당 60분)</p> <p>(공통) 1:5이하</p>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서비스 횟수('19년 8월 변경)									
기 본 서비스	<p>(사전·사후 검사 해당)</p> <p>▶ 이용자별 다음의 검사 실시 -기초체력검사 또는 체성분검사(택 1)</p> <p>▶ 전문가와의 건강상담, 등록상담, 욕구판정, 운동처방</p> <p>▶ '맞춤운동서비스' 초기 1회 실시 이전에 반드시 1회 실시해야 함(사전검사 겸 운동처방)하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운동서비스 실시</p> <p>➔ 제공기록지에 내용 작성, 검사결과지 별도첨부</p> <p>※맞춤운동서비스로 대체 불가(부당이득으로 간주되어 경고 및 환수조치됨)</p>	<p>분기별 1회</p> <p>(공통) 1:5이하</p>									
	<p>맞춤운동 서비스</p> <p>근력운동 및 유산소 운동</p>	<p>주2회씩 월8회(회당 60분)</p> <p>(공통) 1:5이하</p>									

항 목	내 용
	<p>▶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1단계 : 제공기관 등록·상담 후 제공계약서 작성</p> <p>② 2단계 : 사전검사 실시</p> <p>③ 3단계 : 초기 맞춤형 운동처방실시, 운동처방내용을 토대로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p> <p>④ 4단계 : 맞춤형 운동서비스 및 기초검사/운동처방 실시</p> <p>⑤ 5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p>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 원칙 적용</p> <p>※ 제공기관이 <b>등록된 군구와 동일한 소재</b>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거주 시설'을 추가확보시설로 활용할 수 있음 (<b>군구 사전승인 필수</b>) → 2020년 변경 ⇒ 추가확보시설 추가 신고 시에는 '사회서비스제공자 시설확보현황 변경신청서(사업별 서식 제20호)'와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를 모두 제출해야 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추가 제출서류 : 시설이용확인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명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일자, 시간, 장소, 양측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의무 및 서명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li> <li>-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용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 수립하여 함께 제출</li> </ul> </li> <li>▶ 사업별서식 제5호 활용</li> <li>▶ 타 제공기관과 시설이용이 중복되는 경우, <b>각 기관별 이용사항을 모두 기재하여</b> 제출</li> <li>▶ <b>장애인거주시설</b>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 제공기관이 가입주체 (대인/대물 보상)</li> </ul> </div> <p>○ 서비스 집단규모 - 1:5 이하 실시 - 그룹화는 제공기관에서 <u>자율적으로 실시</u></p> <p>○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해당 회차의 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고, 제공기록지를 기록해야 함.</li> <li>■ <u>'기초검사 및 운동처방서비스'</u> 담당 제공인력은 분기별 1회 서비스 제공 후, 회당 금액 결제 및 제공기록지 기록</li> <li>■ <u>'맞춤운동서비스'</u> 담당 제공인력은 매주 정해진 서비스 횟수만큼 제공하고, 회당 금액 결제 및 제공기록지 기록</li> </ul> <p>○ 사전·사후검사 및 분기별 기초검사·운동처방서비스 실시방법 (총 4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li> <li>㉠ 사전검사(1회) : 맞춤운동서비스 초기 1회기 실시 이전에 실시</li> <li>㉡ 분기별 1회씩 총 2회 실시 : 기초검사, 건강상담, 욕구판정, 운동처방 등</li> <li>㉢ 사후검사(1회) : 서비스 종료일 이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자별 효과 측정 → 서비스 제공 시 활용 및 종결 상담 실시</li> <li>* 검사 결과지는 1부는 이용자 제공, 1부는 이용자별 관리파일에 함께 보관</li> <li>* <b>기초검사·운동처방서비스는 반드시 분기별 1회 실시해야 하며, 맞춤운동서비스로 대체할 수 없음.(미준수 시, 경고 및 환수조치)</b></li> <li>* 이용자별 기초검사·운동처방 실시 후 이용자 욕구 및 처방결과에 따른 맞춤운동서비스 실시</li> </ul> </li> </ul>

항 목	내 용
-----	-----

**(예시) 1월에 시작하는 이용자 A에 대한 실시과정**

- ㉠맞춤운동 1회기 시작 이전에 기초검사·운동처방 1회 실시(사전검사에 해당)
- ㉡맞춤운동 1회기 시작 후, 2분기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기초검사·운동처방 1회 실시
- ㉢2분기 기초검사·운동처방 실시 후, 맞춤운동 실시
- ㉣3분기에 해당하는 시점에서 기초검사·운동처방 1회 실시
- ㉤3분기 기초검사·운동처방 실시 후, 맞춤운동 실시
- ㉥종료월 이내 기초검사·운동처방 1회 실시 및 종결(사후검사에 해당)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				○			○

- ➔기초검사·운동처방을 **맞춤운동서비스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경고 및 환수조치함**
- ➔기초검사·운동처방은 반드시 분기별 실시해야 함(미실시의 경우에도 기준정보 위반에 해당)

○ 맞춤운동서비스 실시방법

- 맞춤운동서비스는 월 8회 제공이 원칙이나, 분기별 기초검사·운동처방서비스를 실시하는 월에는 1회씩 축소하여 제공
- \* 맞춤운동서비스를 기초검사·운동처방서비스로 대체할 수 없음.

**(예시)**

● : 기초검사·운동처방    ▲ : 맞춤운동서비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회 ▲7회	▲8회	▲8회	▲8회	●1회 ▲7회	▲8회	▲8회	▲8회	●1회 ▲7회	▲8회	▲8회	●1회 ▲7회

- ➔ 다른 활동으로 대체하여 실시하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간주하여 경고 및 환수조치함.

○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
-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기초검사 및 운동처방서비스 내용도 반드시 제공기록지에 작성
- **제공인력 서명 시, '기초검사 및 운동처방서비스'와 '맞춤운동서비스' 각각의 제공인력 이 직접 서명해야 함.(실제 제공된 서비스 내용, 참여 제공인력 및 서명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
-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

항 목	내 용
	<p>○ <b>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u>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u></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li> </ul> <p>○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연 2회이상)</p> <p><b>○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p>
<p>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p>○ <b>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li> <li>- 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보호대책 안' 수립 필수 (<b>사업별서식 제4호 참고</b>)</li> </ul> <p>○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b>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9 노인수중운동교실 (사·군·구 공동개발) / 사업코드 050805

항 목	내 용									
목 적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 도모									
서비스 실시지역 (22년 1월 변경)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	○	○	○	○	○	○	X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 이용자는 거주 군·구와 무관하게 실시지역 내 이용 가능한 제공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22년 1월 변경)									
서비스 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연령 및 선정기준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 ①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1957년생) 이상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연령 : ~1957.12.31.) ② 기초연금수급자 ③ 6개월 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  ☞ ③은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								
	우선순위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노인수중운동교실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어르신 관절건강지킴(계양구)서비스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⑤우선순위선정에 따른 필요서류 -[우선 선정] 의료급여 사례관리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추천공문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22년 1월 변경)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u>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u> 되어야 함.  <div style="text-align: right;">다음 페이지에 계속</div>									

항 목	내 용
	<p><b>집단활동형 시설기준 충족</b></p> <p><b>[22년 1월 변경사항]</b></p> <p>등록 군·구 내에 <b>사무실과 서비스 제공장소(수영장)이 모두 소재</b>해야 함.</p> <p>①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제공기관 중 사무실과 수영장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동일 군·구 내에 소재하도록 조치해야 함.(등록 군·구에 변경신고 필수)</p> <p>② 2022년 1월 1일부터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제공기관은 변경 규정을 즉시 적용함.</p> <p>☞ <b>202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등록 제공기관이 동일한 시설기준을 충족한 상태</b>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전용공간(수영장) : 85.8㎡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p><b>[전용공간(수영장)을 별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b>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 별도 제출  ⇒자세한 내용은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참고</p>
	<p><b>★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b></p> <p><b>(22년 1월 변경)</b></p> <p><b>제공인력 기준</b></p> <p>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수영)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수영)  ***수영 이외의 자격종목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②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9조의 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수영)  ***수영 이외의 자격종목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③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노인 대상 수중운동 지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경력은 학위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을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서비스 가격/제공기간	<p><b>서비스 가격</b></p> <p>▶ 월 12만원  [정부지원금] 11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11회기:9,160원씩 / 12회기:9,240원으로 산정  [본인부담금] 1~11회기:800원씩 / 12회기:1,200원으로 산정</p> <p><b>이용자별 제공기간</b></p> <p>12개월</p>

항 목	내 용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25 349 1468 707"> <thead> <tr> <th data-bbox="325 349 477 394">구 분</th> <th data-bbox="477 349 1262 394">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62 349 1468 394">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5 394 477 573">기본서비스</td> <td data-bbox="477 394 1262 573"> <b>1. 사전사후검사 :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건강상태 점검</b>            - 전체 이용자별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b>→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b> </td> <td data-bbox="1262 394 1468 573">           분기 1회            (회당 60분)            (바우처결제불가)         </td> </tr> <tr> <td data-bbox="325 573 477 707"></td> <td data-bbox="477 573 1262 707"> <b>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b>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td> <td data-bbox="1262 573 1468 707">           주 3회씩            월 12회            (회당 90분)         </td> </tr> </tbody> </table> <p>※ 1회 90분 내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p>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단계 : 이용자의 욕구파악</li> <li>② 2단계 : 기초체력 및 체성분검사 실시 및 상담 (사전검사 실시)</li> <li>③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li> <li>④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사후검사 실시)</li> </ol>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b>1. 사전사후검사 :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건강상태 점검</b> - 전체 이용자별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b>→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b>	분기 1회 (회당 60분) (바우처결제불가)		<b>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b>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 3회씩 월 12회 (회당 9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b>1. 사전사후검사 :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건강상태 점검</b> - 전체 이용자별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b>→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b>	분기 1회 (회당 60분) (바우처결제불가)								
	<b>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b> - 수중 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주 3회씩 월 12회 (회당 90분)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집단활동형</li> <li>○ 서비스 집단규모 1: 25 이하</li> <li>○ 사전·사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li> <li>-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li> <li>☞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상담일지 별도첨부)</li> </ul> </li> <li>○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li>- 분기별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건강상태점검 기록내용, 검사결과지&amp;상담일지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li> </ul> </li> <li>○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b>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b>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li> <li>○ 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li> </ul> </li> </ul>									

항 목	내 용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 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p>-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u> 할 수 없음.</p> <p>○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p> <p><b>○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p>						
<p>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b>(22년 1월 변경)</b></p>	<p>★○ 제공기관은 <b>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군·구에 사무실과 서비스 제공장소(수영장)이 모두 소재해야 하며, '서비스 실시지역'내에서 이용권을 선정받은 모든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변경 전</th> <th style="width: 10%; text-align: center;">➔</th> <th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변경 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이 동구, 수영장이 중구인 형태로 중구에 제공기관 등록 가능</li> <li>· 동구 이용자는 동구 소재 제공기관만 이용 가능</li> </ul> </td> <td></td> <td style="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구에 제공기관을 등록하려면 사무실, 수영장 모두 중구에 마련해야 함.</li> <li>· 동구 이용자는 동구 소재 제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군구 소재 제공기관 이용 가능(단, <b>제공기관의 유무 사전 확인 필요</b>)</li> </ul> </td> </tr> </tbody> </table> <p>① <b>2021년 12월 31일까지</b> 등록된 제공기관 중 사무실과 수영장 소재지가 상이한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동일 군·구 내에 소재하도록 조치해야 함.(등록 군·구에 변경신고 필수)</p> <p>② <b>2022년 1월 1일부터</b> 신규 등록하고자 하는 제공기관은 변경 규정을 즉시 적용함.</p> <p>☞ <b>2023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등록 제공기관이 동일한 시설기준을 충족한 상태여야 함.</b></p> <p>○ 서비스 제공장소(수영장)에 대한 추가 제출서류 : 수영장을 임대하여 활용하는 경우, '시설이용확인서' 제출</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추가 제출서류 : 시설이용확인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명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일자, 시간, 장소, 양측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의무 및 서명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li> <li>- 이용자에게 대한 안전관리대책(이용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 수립하여 함께 제출</li> </ul> </li> <li>▷ 사업별서식 제5호 활용</li> <li>▷ 타 제공기관과 시설이용이 중복되는 경우, <b>각 기관별 이용사항을 모두 기재하여</b> 제출</li> <li>▷ 수영장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 제공기관이 가입주체 (대인/대물 보상)</li> </ul> </div> <p>○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인/대물 보상)</li> <li>- 서비스 제공장소(수영장)에 대한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인/대물 보상)</li> </ul>	변경 전	➔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이 동구, 수영장이 중구인 형태로 중구에 제공기관 등록 가능</li> <li>· 동구 이용자는 동구 소재 제공기관만 이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구에 제공기관을 등록하려면 사무실, 수영장 모두 중구에 마련해야 함.</li> <li>· 동구 이용자는 동구 소재 제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군구 소재 제공기관 이용 가능(단, <b>제공기관의 유무 사전 확인 필요</b>)</li> </ul>
변경 전	➔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이 동구, 수영장이 중구인 형태로 중구에 제공기관 등록 가능</li> <li>· 동구 이용자는 동구 소재 제공기관만 이용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구에 제공기관을 등록하려면 사무실, 수영장 모두 중구에 마련해야 함.</li> <li>· 동구 이용자는 동구 소재 제공기관 뿐만 아니라 타 군구 소재 제공기관 이용 가능(단, <b>제공기관의 유무 사전 확인 필요</b>)</li> </ul>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등록 시, <u>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u>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u>서비스 내용</u>'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li> </ul>

## ㉔ 장애아동 학습지원서비스 (시·군·구 공동개발) / 사업코드 210205

항 목	내 용									
목 적	장애아동 기본학습과 관련된 홈티칭 방식의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통합력 향상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마추출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	○	○	○	○	○	X	X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만 5세(2017년생)이상~만 18세(2004년생)이하인 자 (*연령:2004.01.01.~2017.12.31.)								
	선정기준	소득 및 연령기준을 충족하면서 다음 ①,②,③,④,⑤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등록장애인 ②특수교육대상아동(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특수학급에 입급되어있는 학생도 가능함)으로 특수교육대상아동임을 증빙하는 학교장 추천서 또는 특수학급 입급 확인서(학교장발행) 제출가능자 ③특수교육 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교육청발행) 제출가능자 ④특수학급 입급자격에 해당하나 ②,③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확인서 또는 유치원·어린이집 내 '장애아통합반' 재원증명서 제출가능자 ⑤현재 일반 유치원·어린이집에 등원 중이면서 '장애아통합반' 대기증명서 제출가능자 ('17년 8월 추가)								
	우선순위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8세이하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⑤ 다음 중 택 1하여 제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특수교육대상아동 : 다음중 택1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서류여야 함) ■ 특수교육대상아동임을 증빙하는 학교장 추천서 ■ 학교장 발행 '특수학급 입급확인서' ■ 교육청 발행 '특수교육 대상자 배치결과 통보서' ■ 장애로 인한 취학유예확인서 ■ 유치원·어린이집 내 '장애아통합반' 재원증명서 ■ '장애아통합반' 대기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7년 8월 추가)										

항 목	내 용															
<p>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p>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b>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11 409 1465 660"> <tr> <td data-bbox="311 409 486 660"> <p>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p> </td> <td data-bbox="486 409 1465 660"> <p>'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서비스 제공역량을 갖춘 <b>사회적 경제조직에 한함</b></p> <p>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311 683 1465 801"> <tr> <td data-bbox="311 683 486 801"> <p>제공인력 기준</p> </td> <td data-bbox="486 683 1465 801"> <p>'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특수아동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 사회서비스 전문교육기관에서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양성교육'을 120시간 이상 수료한 자</p> </td> </tr> </table>	<p>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p>	<p>'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서비스 제공역량을 갖춘 <b>사회적 경제조직에 한함</b></p> <p>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p>제공인력 기준</p>	<p>'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특수아동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 사회서비스 전문교육기관에서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양성교육'을 120시간 이상 수료한 자</p>											
<p>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p>	<p>'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서비스 제공역량을 갖춘 <b>사회적 경제조직에 한함</b></p> <p>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p>제공인력 기준</p>	<p>'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특수아동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생교육법' 제2조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중 사회서비스 전문교육기관에서 '장애통합교육보조원 양성교육'을 120시간 이상 수료한 자</p>															
<p>서비스 가격/ 제공기간</p>	<p>▶ 월 18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p> <table border="1" data-bbox="475 862 1452 1008"> <thead> <tr> <th data-bbox="475 862 646 929">구분</th> <th data-bbox="646 862 1045 929">(1등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th> <th data-bbox="1045 862 1452 929">(2등급) 중위소득 100%초과~140%이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75 929 646 963">정부지원금</td> <td data-bbox="646 929 1045 963">162,000원(90%)</td> <td data-bbox="1045 929 1452 963">144,000원(80%)</td> </tr> <tr> <td data-bbox="475 963 646 1008">본인부담금</td> <td data-bbox="646 963 1045 1008">18,000원(10%)</td> <td data-bbox="1045 963 1452 1008">36,000원(20%)</td> </tr> </tbody> </table>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40,500원씩 / 2등급:36,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4,500원씩 / 2등급:9,000원씩 산정</p> <p>이용자별 제공기간 : 12개월(1회 재판정 가능 / 최대 24개월까지 지원)</p>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2등급) 중위소득 10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90%)	144,000원(80%)	본인부담금	18,000원(10%)	36,000원(2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중위소득 100%이하	(2등급) 중위소득 10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90%)	144,000원(80%)														
본인부담금	18,000원(10%)	36,000원(20%)														
<p>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22년 1월 변경)</p>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00 1243 1465 1948"> <thead> <tr> <th data-bbox="300 1243 414 1276">구분</th> <th data-bbox="414 1243 1292 1276">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292 1243 1465 1276">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00 1276 414 1545"> <p>기본 서비스</p> </td> <td data-bbox="414 1276 1292 1545"> <p>★1. 사전·사후검사 : 아동 연령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            ▶ 미취학아동 : 포테이지검사(필수), KISE-BAAT 또는 NISE-B-ACT(택 1) 총 2종 시행            ▶ 취학아동 : KISE-BAAT 또는 NISE-B-ACT 시행(택 1)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p> <p>※ 취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이용자별 파일 별도 보관 (예) 이용자신청 시 제출한 증명서류 사본 등</p> </td> <td data-bbox="1292 1276 1465 1545"> <p>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p> </td> </tr> <tr> <td data-bbox="300 1545 414 1859"></td> <td data-bbox="414 1545 1292 1859"> <p>2. 인지학습 / 일상생활훈련            ▶ 국어, 수학 등 인지 학습 진행, 교재 및 보조교재 사용하여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인사, 대소변 훈련, 의복 착·탈의, 식사지도, 위생관리 및 버스타기, 시장놀이 등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일상생활 훈련 지도            → 상담일지 별도첨부 (2번&amp;3번 일괄 작성 가능)</p> </td> <td data-bbox="1292 1545 1465 1859"> <p>월 4회(주 1회) 회당 40분</p> </td> </tr> <tr> <td data-bbox="300 1859 414 1948"></td> <td data-bbox="414 1859 1292 1948"> <p>3. 학부모 상담 및 서비스 수행 내용 설명, 욕구조사            → 상담일지 별도첨부(2번&amp;3번 일괄 작성 가능)</p> </td> <td data-bbox="1292 1859 1465 1948"> <p>월 4회(주 1회) 회당 10분</p> </td> </tr> <tr> <td data-bbox="300 1948 414 2007"></td> <td data-bbox="414 1948 1292 2007"> <p>4. 월별 사례회의 : 사례회의 실시 사항 별도 관리            → 사례회의 기록지 별도첨부</p> </td> <td data-bbox="1292 1948 1465 2007"> <p>월 1회 (바우처 결제불가)</p> </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p>기본 서비스</p>	<p>★1. 사전·사후검사 : 아동 연령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            ▶ 미취학아동 : 포테이지검사(필수), KISE-BAAT 또는 NISE-B-ACT(택 1) 총 2종 시행            ▶ 취학아동 : KISE-BAAT 또는 NISE-B-ACT 시행(택 1)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p> <p>※ 취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이용자별 파일 별도 보관 (예) 이용자신청 시 제출한 증명서류 사본 등</p>	<p>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p>		<p>2. 인지학습 / 일상생활훈련            ▶ 국어, 수학 등 인지 학습 진행, 교재 및 보조교재 사용하여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인사, 대소변 훈련, 의복 착·탈의, 식사지도, 위생관리 및 버스타기, 시장놀이 등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일상생활 훈련 지도            → 상담일지 별도첨부 (2번&amp;3번 일괄 작성 가능)</p>	<p>월 4회(주 1회) 회당 40분</p>		<p>3. 학부모 상담 및 서비스 수행 내용 설명, 욕구조사            → 상담일지 별도첨부(2번&amp;3번 일괄 작성 가능)</p>	<p>월 4회(주 1회) 회당 10분</p>		<p>4. 월별 사례회의 : 사례회의 실시 사항 별도 관리            → 사례회의 기록지 별도첨부</p>	<p>월 1회 (바우처 결제불가)</p>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p>기본 서비스</p>	<p>★1. 사전·사후검사 : 아동 연령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진행            ▶ 미취학아동 : 포테이지검사(필수), KISE-BAAT 또는 NISE-B-ACT(택 1) 총 2종 시행            ▶ 취학아동 : KISE-BAAT 또는 NISE-B-ACT 시행(택 1)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p> <p>※ 취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이용자별 파일 별도 보관 (예) 이용자신청 시 제출한 증명서류 사본 등</p>	<p>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p>														
	<p>2. 인지학습 / 일상생활훈련            ▶ 국어, 수학 등 인지 학습 진행, 교재 및 보조교재 사용하여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 인사, 대소변 훈련, 의복 착·탈의, 식사지도, 위생관리 및 버스타기, 시장놀이 등 장애아동 특성에 맞는 일상생활 훈련 지도            → 상담일지 별도첨부 (2번&amp;3번 일괄 작성 가능)</p>	<p>월 4회(주 1회) 회당 40분</p>														
	<p>3. 학부모 상담 및 서비스 수행 내용 설명, 욕구조사            → 상담일지 별도첨부(2번&amp;3번 일괄 작성 가능)</p>	<p>월 4회(주 1회) 회당 10분</p>														
	<p>4. 월별 사례회의 : 사례회의 실시 사항 별도 관리            → 사례회의 기록지 별도첨부</p>	<p>월 1회 (바우처 결제불가)</p>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항 목	내 용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	<p>▶ 서비스 제공절차</p> <p>1단계: 신청된 대상자 초기상담 및 사전검사 실시(취학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총 2종)</p> <p>2단계: 선정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p> <p>3단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사후검사(총 2종)</p>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형태 : 재가방문형</li> <li>○ 서비스 집단규모 1:1 (이용권자가 한가정의 형제자매의 경우, 한 제공인력이 형제자매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li> <li>○ 사전·사후 검사 : '서비스내용 및 제공절차'에 명시된 사항대로 준수하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li> <li>-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li> <li>☞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li> </ul> </li> <li>※ 취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이용자별 파일 별도 보관 (예) 이용자신청 시 제출한 증명서류 사본 등</li> <li>○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li>-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상태·평가 등은 <b>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b></li> </ul> </li> <li>○ 월별 제공인력 사례회의 실시 : 사례회의 기록지 별도 관리·보관</li> <li>○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b>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b>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 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li> <li>○ 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li> </ul> </li> <li>○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li> <li>○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li> </ul>

항 목	내 용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대인/대물 보상)</li> <li>-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 보상)</li> </ul> </li> <li>○ 등록 신청 시 <u>연간 서비스 매뉴얼 별도 제출(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상담 매뉴얼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u>서비스 내용</u>'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li> <li>○ 제공기관 등록 시,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인증서, 지정서 등) 제출(21년 7월 추가)</li> </ul>

## ㉑ 성인심리상담서비스 (사·도 개발) / 사업코드 180305

항 목	내 용										
목 적	성인 심리정서지원 및 가족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상담서비스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	○	○	○	○	○	○	○	○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22년 1월 변경)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연령 (22년 1월 변경)	만 19세(2003년생) 이상인자 (*연령:~2003.12.31.)									
	★ 우선순위 (22년 1월 변경)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성인심리상담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의 보호자, <b>임산부(산모수첩, 임신확인서 택 1 제출), 자녀연령이 만 3세미만인 출산모</b>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구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 중복제한 (22년 1월 변경)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미추홀구)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22년 1월 변경)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자가 만18세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신청자가 만19세이상인 경우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⑤ [우선 선정]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22년 1월 추가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b>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다음페이지에 계속											

항 목	내 용																		
<b>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b>	<p><b>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b></p> <p>① 가정학, 아동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 취득 이후 성인 대상 상담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p> <p>② 가족상담 및 치료 관련 학회에서 수여하는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취득 이후 해당 자격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는 ②의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으로 인정불가</p> <p>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상담 자격증 소지자로 자격 취득 이후 해당 자격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p> <p>④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로서 자격 취득 이후 성인대상 상담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학위 및 자격 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i.or.kr">pqi.or.kr</a>(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조회바람</p>																		
<b>서비스 가격/ 제공기간</b>	<p>▶ 월 20만원(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p> <table border="1" data-bbox="470 891 1460 1041">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th> <th>(2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80,000원</td> <td>160,000원</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000원</td> <td>40,000원</td> </tr> </tbody> </table>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45,000원씩 / 2등급:40,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5,000원씩 / 2등급:10,000원씩 산정</p> <p><b>이용자별 제공기간</b> 6개월 (1회 재판정가능, 총 12개월까지 지원)</p>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	(2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이하	(2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b>서비스 내용/ 제공절차</b>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11 1265 1468 1848"> <thead> <tr> <th>서비스 구분</th> <th>서비스종류</th> <th>서비스내용</th> <th>제공시간</th> <th>제공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본 서비스</td> <td>사전사후 검사</td> <td>· [21년 7월 변경]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검사 실시(MMPI-2, HTP, KFD, SCT, BDI, STAI, PTSD 등 활용)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90분</td> <td>연 2회 *1:1</td> </tr> <tr> <td>서비스 제공</td> <td>- 개인 심리정서지원, 의사소통사정 및 문제해결중심적 개입 - 가족정서과정-분화수준, 삼각관계의 수정을 통한 가족구성원간의 다세대 관계향상, 가족조각을 통한 의사소통방식 이해, 가족의 체계와 경계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위계구조 설정, 상호간 정서행동 수정 - 부모자녀 상호간 이해, 부모역할 상담, 부부관계 향상 도모 ※ 제공횟수를 준수하여 서비스 실시 (주2회이상 실시할 수 없음/보강 제외) ➔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회당 60분 이상</td> <td>주 1회씩 월 4회  *1:1</td> </tr> <tr> <td>- 가족상담 진행(바우처 결제불가)</td> <td></td> <td>회당 60분</td> <td>요청 시</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단계 : 가족욕구사정 및 주된 호소문제 파악 후 구성원 간 합의된 목표설정→ 사전검사</li> <li>2단계 : 목표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li> <li>3단계 : 서비스 제공(개인심리정서지원 등 문제해결중심 개입)</li> <li>4단계 : 사후검사 및 종결상담</li> </ol>	서비스 구분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 검사	· [21년 7월 변경]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검사 실시(MMPI-2, HTP, KFD, SCT, BDI, STAI, PTSD 등 활용)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90분	연 2회 *1:1	서비스 제공	- 개인 심리정서지원, 의사소통사정 및 문제해결중심적 개입 - 가족정서과정-분화수준, 삼각관계의 수정을 통한 가족구성원간의 다세대 관계향상, 가족조각을 통한 의사소통방식 이해, 가족의 체계와 경계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위계구조 설정, 상호간 정서행동 수정 - 부모자녀 상호간 이해, 부모역할 상담, 부부관계 향상 도모 ※ 제공횟수를 준수하여 서비스 실시 (주2회이상 실시할 수 없음/보강 제외) ➔ 상담일지 별도첨부	회당 60분 이상	주 1회씩 월 4회  *1:1	- 가족상담 진행(바우처 결제불가)		회당 60분	요청 시
서비스 구분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 검사	· [21년 7월 변경] 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검사 실시(MMPI-2, HTP, KFD, SCT, BDI, STAI, PTSD 등 활용)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90분	연 2회 *1:1															
	서비스 제공	- 개인 심리정서지원, 의사소통사정 및 문제해결중심적 개입 - 가족정서과정-분화수준, 삼각관계의 수정을 통한 가족구성원간의 다세대 관계향상, 가족조각을 통한 의사소통방식 이해, 가족의 체계와 경계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위계구조 설정, 상호간 정서행동 수정 - 부모자녀 상호간 이해, 부모역할 상담, 부부관계 향상 도모 ※ 제공횟수를 준수하여 서비스 실시 (주2회이상 실시할 수 없음/보강 제외) ➔ 상담일지 별도첨부	회당 60분 이상	주 1회씩 월 4회  *1:1															
	- 가족상담 진행(바우처 결제불가)		회당 60분	요청 시															

항 목	내 용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u>에서만 서비스 제공(추가확보시설 활용불가)</li> </ul> </li> <li>○ 서비스 집단 규모 1:1 (제공인력 1명당 1명의 이용자에 서비스 제공)</li> <li>○ 사전·사후 검사 : <b>2종 이상 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li> <li>-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li> </ul> </li> <li>- <b>성격, 우울, 불안, 강박,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검사 실시(MMPI-2, HTP, KFD, SCT, BDI, STAI, PTSD 등 활용)</b> - 21년 7월 추가</li> <li>- 제공기관에서 <b>직접</b>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b>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b>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1회기와 7월 마지막째주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p> </div> </li> <li>○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b>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li>-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상태·평가 등은 <b>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b></li> </ul> </li> <li>○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b>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b>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li> <li>○ 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b>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b></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b></li> </ul> </li> <li>○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li> </ul> <p><b>○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p>

항 목	내 용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li> </ul> </li> <li>○ 제공기관 등록 시, 세부 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li> </ul>

## ☑ 오감쑥쑥 서비스 (사·도 개발) / 사업코드 290505

항 목	내 용									
목 적	아동 시기의 다양한 통합놀이 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상상력과 창의력,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력, 바른인성 함양, 다양한 삶의 가치와 태도의 이해력을 길러 주며,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주 고자 한다.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	○	○	○	○	○	○	○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만 4세(2018년생)~만 6세(2016년생)이하 아동 (*연령:2016.01.01.~2018.12.31.)								
	우선순위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오감쑥쑥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꼬마작가만들기 프로젝트, 발달재활서비스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 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⑤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b> 되어야 함.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b>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 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 놀이 및 미술활동 : ①, ②, ③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사 ②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③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동화구연 : ①, ②, ③, ④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 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동화구연 자격증 소지자 ②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사 ③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④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정교사 ▶ ①에 대해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i.or.kr">pqi.or.kr</a>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조회바람									

항 목	내 용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13만원 (정부지원 60~80% / 본인부담 20~4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04,000원(80%)	91,000원(70%)	78,000원(60%)
본인부담금	26,000원(20%)	39,000원(30%)	52,000원(40%)		
* 2019년도부터 본인부담금 차등화 확대					
▶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26,000원씩 / 2등급:22,750원씩 / 3등급:19,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6,500원씩 / 2등급:9,750원씩 / 3등급:13,000원씩 산정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서비스 횟수	
	기 본 서 비 스	사전사후검사	자존감·사회성 등 검사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놀이지도	통합 놀이 활동		월 1회(40분)
		미술활동	미술 교구를 이용한 활동		월 1회(40분)
동화구연		동화 구연		월 2회(40분)	
▶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사전검사를 통한 이용자 특성 파악 ② 2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					
기타 등록조건 및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재가방문형				
	○ 서비스 집단 규모 : 기본서비스 1:1 진행 - 형제자매가 같이 신청한 경우 → 1:2 서비스 인정(단, 회당 60분 이상 제공) - 쌍둥이+형제자매가 동시 신청한 경우 → 쌍둥이 1:2 서비스 인정(회당 60분이상)되나, 형제자매는 다른 시간에 40분 제공해야 함.				
	○ 사전·사후 검사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				

항 목	내 용
	<p>○ 보강 실시 방법(21년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li> </ul> <p>○ 결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b>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b>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 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p>○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p> <p>○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p>
<p>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p>○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대인/대물 보상)</li> <li>-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 보상)</li> </ul> <p>○ 제공기관 등록 시, <b>세부 개입서비스 내용을 포함한</b>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u>서비스 내용</u>'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 13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 (시·군·구 공동개발) / 사업코드 170305

항 목	내 용										
목 적	유아기 아동이 주 양육자와 함께 다양한 통합놀이 활동을 통해 감각인지·신체운동·의사소통 등 아동의 발달, 양육자와의 건강한 애착형성을 도와줌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여 주고자 한다.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	○	○	○	○	○	X	X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선정기준	만 2세(2020년생)~만 3세(2019년생)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 (*아동연령:2019.01.01.~2020.12.31.)									
	우선순위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해당 서비스 이용권은 자녀가 아닌 <b>부모에게 부여</b> 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⑤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서비스 대상이 1인인 경우, 부모 중 1명이 신청하고 서비스에 참여 ※서비스 대상이 2인인 경우, 부모 2명이 각각 신청하고 서비스에 참여 ※서비스 대상이 3인 이상이거나, 2인 이상인데 한부모가정인 경우, 조부모가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b> 되어야 함.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제공인력 기준	다음 ①, ②, 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사</li> <li>"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소지자</li> <li>"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유아체육, 아동놀이, 영유아발달 관련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이후 해당 자격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li> </ol> ※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자격 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j.or.kr">pqj.or.kr</a>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조회바람										

항 목	내 용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중위소득 120%이하 (2등급) 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90,000원(90%) 80,000원(80%)
본인부담금	10,000원(10%) 20,000원(20%)		
이용자별 제공기간	▶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22,500원씩 / 2등급:20,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2,500원씩 / 2등급:5,000원씩 산정		
	12개월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		
	구분	서비스 내용 및 횟수	서비스 횟수
	기 본 서비스	사전사후검사 및 상담 ▶ 다음 ①, ②를 모두 제공한 후, 상담서비스 진행 ① 자녀 사전사후검사 : 아동발달기초검사지원 (Denver검사 등) ② 부모 사전사후검사 : 양육스트레스검사 등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통합놀이활동 ▶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발달단계별 통합 놀이활동 및 부모상담(아동발달, 양육스트레스 등 관련) 제공  양육자 자조모임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주 1회씩 월 4회 (회당 50분)  연 4회 (바우처 결제불가)
▶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사전검사 실시(검사도구 : 양육스트레스 검사, 덴버검사 등 2종 필수) ② 2단계 : 욕구 및 이용자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 종결 시 초기와 동일한 검사를 이용해 효과 측정(총 2종)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 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서비스 제공(추가확보시설 활용불가)  ○ 서비스 집단 규모 : 부모+자녀 1팀 (이용권 신청부모가 직접 참여) ■ 만 2세(2020년생) → 1:5팀 ■ 만 3세(2019년생) → 1:8팀  ※서비스 대상이 1인인 경우, 부모 중 1명이 신청하고 서비스에 참여 ※서비스 대상이 2인인 경우, 부모 2명이 각각 신청하고 서비스에 참여 ※서비스 대상이 3인 이상이거나, 2인 이상인데 한부모가정인 경우, 조부모가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 부모와 자녀가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하며, 부모 단독 또는 자녀 단독으로 서비스를 제공·이용하는 경우 기준정보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함.(21년 설명추가)  ○ 사전·사후 검사 (자녀/부모 각 1종씩 총 2종 실시)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li> <li>☞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li> <li>○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ul> </li> <li>○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b>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b>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li> <li>○ 보강 실시 방법(21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u>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u></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 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li> </ul> </li> <li>○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li> <li>○ <b>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li> </ul>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li> </ul> </li> <li>○ 제공기관 등록 시, <u>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u>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li> </ul>

## Ⅳ 치매예방'인지건강 프로젝트'(시·군·구 공동개발) / 사업코드 100205

항 목	내 용									
목 적	인지건강관리를 통해 치매 예방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치매 조기 발견 및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도모함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X	○	○	○	○	○	○	X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및 연령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1957년 생)이상 노인 (*연령 : ~1957.12.31.) ②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순위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치매예방 '인지건강 프로젝트'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미추홀구)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b> 되어야 함.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교육학, 사회복지학, 작업치료학, 미술관련학과, 간호학, 심리상담학 <u>전문학사</u> 이상 전공자이면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치매, 노인인지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명시된 전공학과 이외 학과는 인정되지 않음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학위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함. ▶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i.or.kr">pqi.or.kr</a> (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조회바람									

항 목	내 용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b>▶ 월 16만원</b> [정부지원금] 144,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b>▶ 회차별 금액</b> [정부지원금] 18,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2,000원씩 산정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b>▶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b>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구분	서비스 종류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b>사전사후 검사</b>  <b>서비스 제공 (1~4. 병행하여 회당 80분이상)</b>	- 서비스 시작 및 종결 시 사전·사후 검사 실시 : 노인인지기능검사, 우울척도검사 <b>2종 실시</b> <b>→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b>  <b>1. 인지건강학습지 (회당 20분)</b> -언어, 수학, 한문, 사고력, 기억일기, 추억하기, 손그림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평상 시 사용하지 않는 뇌를 자극하여 활성화함으로써 인지기능 저하에 따른 치매를 예방  <b>2. 심리지원서비스 (회당 20분)</b> -노인의 심리를 이해하고 다양한 욕구를 탐색하여 맞춤형 심리지 원서비스를 제공  <b>3. 인지건강 뇌체조 (회당 10분)</b> -심폐기능 향상하고 뇌로 가는 혈액을 증가시켜 뇌활성화를 돕는 인지건강 뇌체조를 실시  <b>4. 인지건강 보드게임 (회당 30분)</b> - 게임별 과제해결 과정을 통해 뇌의 영역들을 자극하여 인지기능 향상 및 유지를 도움. 가족 및 집단 활동을 통해 놀이문화 형성
<b>▶ 서비스 제공절차</b> ① 1단계 : 사전검사(총 2종) 및 욕구조사를 통해 서비스의 구체적 계획 수립 ② 2단계 : 월별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 종결 및 사후검사 실시 (총 2종)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b>○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b> - <b>제공기관의 등록된 전용공간</b> 에서만 서비스 제공(추가확보시설 활용불가)  <b>○ 서비스 집단규모 1:5 이하</b> (사전사후검사는 1:1로 실시)  <b>○ 사전·사후 검사 : 노인인지기능검사, 우울척도검사 총 2종</b>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1:1로 실시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 후 1개월 이내 <b>2종</b>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에 <b>2종</b>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장소, 제공인력,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li>- 작품모음 전시회(연 1회)도 실시 후, 일지 및 사진자료 등 별도 증빙서류 관리 필수 ('17년 8월 추가)</li> </ul> </li> <li>○ <b>결제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b>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b>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 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li> <li>○ <b>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u>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u></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u> 할 수 없음.</li> </ul> </li> <li>○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연 2회이상)</li> <li>○ <b>기타 세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li> </ul>
<p>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li> </ul> </li> <li>○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u>서비스 내용</u>'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li> </ul>

## 나를 찾는 5060(시·군·구 공동개발) / 사업코드 190205

항 목	내 용									
목 적	인생의 전환기를 맞은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악기연주 및 정서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가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고취하고, 자기개발에 대한 동기부여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마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	○	○	X	○	○	○	○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이면서 만 50세(1972년생)이상 ~ 만 64세(1958년생)이하인 자 (*연령: 1958.01.01. ~ 1972.12.31)								
	우선순위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나를 찾는 5060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b> 되어야 함.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 제공인력 기준의 경우 (1)과 (2)를 모두 충족해야 함.	제공인력 기준(1)	○ 클래식(음악)교육 제공인력 -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 전공 악기 증빙 필수 - 특히 학력증명서에 전공악기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성적증명서, 졸업연주회 팸플릿 등 학위소지자 및 전공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								
다음 페이지에 '제공인력 기준(2)' 계속										

항 목	내 용														
	<p><b>제공인력 기준(2)</b></p>	<p>○ 사전사후검사·정서지원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p> <p>②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p> <p>③ 심리, 상담, 음악·미술·예술재활, 가족·사회복지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중장년층 대상 정서지원프로그램 제공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p> <p>④ <b>(강화군에 해당)</b> 심리, 상담, 음악·미술·예술재활, 가족·사회복지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로서, 학위취득 이후 중장년층 대상 정서지원프로그램 제공경력이 300시간 이상인 자</p> <p>※③과 ④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써,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j.or.kr">pqj.or.kr</a>(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조회바람</p>													
<p>서비스 가격/ 제공기간</p>	<p>서비스 가격</p>	<p>▶ 월 16만원 (정부지원 70~90% / 본인부담 10~30%)</p> <table border="1" data-bbox="459 842 1453 992">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h>(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44,000원(90%)</td> <td>128,000원(80%)</td> <td>112,000원(7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6,000원(10%)</td> <td>32,000원(20%)</td> <td>48,000원(30%)</td> </tr> </tbody> </table>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18,000원씩 / 2등급:16,000원씩 / 3등급:14,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2,000원씩 / 2등급:4,000원씩 / 3등급:6,000원씩 산정</p> <p>이용자별 제공기간</p> <p>12개월</p>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90%)	128,000원(80%)	112,000원(70%)	본인부담금	16,000원(10%)	32,000원(20%)	48,000원(3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90%)	128,000원(80%)	112,000원(70%)												
본인부담금	16,000원(10%)	32,000원(20%)	48,000원(30%)												
<p>서비스 내용/ 제공절차</p>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00 1256 1473 1794"> <thead> <tr> <th>구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본서비스</td> <td>사전사후검사 : 이용자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의 실시 → <b>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b></td> <td>연 2회 <b>집단규모 1:1</b></td> </tr> <tr> <td>음악이론 및 실기 : 트럼펫, 색소폰, 드럼 중 택 1하여 개인 또는 그룹지도</td> <td>주 1회 (회당 60분) ***집단규모 1:5이하</td> </tr> <tr> <td>정서지원프로그램 - 음악·예술재활 프로그램 - 나의 삶 돌아보기, 미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 등 자아성찰 프로그램과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관계형성 및 심화활동 실시</td> <td>주 1회 (회당 60분) ***집단규모 1:5이하</td> </tr> <tr> <td></td> <td>1. 함께하는 악기연주(합주)회 실시 (반기별 1회) : 이용자 개인 또는 집단이 직접 참여하는 악기연주(합주)회 실시 2. 이용자별 사례회의 실시 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 '서비스 제공보고서' 제공(월 1회)</td> <td>※ 1~2 모두 시행해야하며, <b>제공기록지 기록 및 별도 증명서류관리 필수 (바우처 결제 불가)</b></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사전검사를 통한 이용자 욕구사정 및 주 호소문제 파악</p> <p>② 음악이론 및 실기, 정서지원프로그램 각각 실시 - 연주(합주)회, 사례회의 및 서비스 제공보고서 제공 병행</p> <p>③ 종료 시 사후검사 실시하고 종결상담 및 서비스 제공 마무리</p>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사전사후검사 : 이용자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의 실시 → <b>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b>	연 2회 <b>집단규모 1:1</b>	음악이론 및 실기 : 트럼펫, 색소폰, 드럼 중 택 1하여 개인 또는 그룹지도	주 1회 (회당 60분) ***집단규모 1:5이하	정서지원프로그램 - 음악·예술재활 프로그램 - 나의 삶 돌아보기, 미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 등 자아성찰 프로그램과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관계형성 및 심화활동 실시	주 1회 (회당 60분) ***집단규모 1:5이하		1. 함께하는 악기연주(합주)회 실시 (반기별 1회) : 이용자 개인 또는 집단이 직접 참여하는 악기연주(합주)회 실시 2. 이용자별 사례회의 실시 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 '서비스 제공보고서' 제공(월 1회)	※ 1~2 모두 시행해야하며, <b>제공기록지 기록 및 별도 증명서류관리 필수 (바우처 결제 불가)</b>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사전사후검사 : 이용자의 심리·정서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의 실시 → <b>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b>	연 2회 <b>집단규모 1:1</b>													
	음악이론 및 실기 : 트럼펫, 색소폰, 드럼 중 택 1하여 개인 또는 그룹지도	주 1회 (회당 60분) ***집단규모 1:5이하													
	정서지원프로그램 - 음악·예술재활 프로그램 - 나의 삶 돌아보기, 미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 등 자아성찰 프로그램과 집단프로그램을 통한 새로운 사회적관계형성 및 심화활동 실시	주 1회 (회당 60분) ***집단규모 1:5이하													
	1. 함께하는 악기연주(합주)회 실시 (반기별 1회) : 이용자 개인 또는 집단이 직접 참여하는 악기연주(합주)회 실시 2. 이용자별 사례회의 실시 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 '서비스 제공보고서' 제공(월 1회)	※ 1~2 모두 시행해야하며, <b>제공기록지 기록 및 별도 증명서류관리 필수 (바우처 결제 불가)</b>													

항 목	내 용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li> <li>○ 서비스 집단규모는 1:5이하 ※ 사전사후검사는 1:1로 진행해야 함에 유의</li> <li>○ 사전·사후 검사 ( 집단규모 1:1로 진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li> <li>- 사전검사 :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기관 보관</li> <li>-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2회기 중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주 2회기 중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div> </li> <li>○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ul> </li> <li>○ 약기연주(합주)회, 월별 서비스제공보고서 별도 구비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기연주(합주)회 : 참석자, 활동내용, 활동사진 등 자율서식 활용하여 작성</li> <li>- 월별 서비스제공보고서 : 사례회의 후 자율서식 활용하여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보호자)에 배부하고, 1부는 제공기관 보관</li> </ul> </li> <li>○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li> <li>○ 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li> </ul> </li> <li>○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li> <li>○ <b>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li> </ul>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li> </ul> </li> <li>○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이론 및 실기(2종 이상), 정서지원프로그램 각각에 대한 매뉴얼 구성 필요</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예) 색소폰 매뉴얼 1부, 트럼펫 매뉴얼 1부, 정서지원프로그램 매뉴얼 1부 총 3부 제출</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li> </ul>

## ㉔ 섬마을 행복나눔 서비스 (시·군·구 자체개발) / 사업코드 290105

항 목	내 용									
목 적	문화 사각지대에 있는 도서지역 아동에게 클래식 악기레슨과 정서발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마추출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X	X	X	X	X	X	X	X	X	○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만 7세(2015년생)~만 18세(2004년생) 이하 아동 (*연령:2004.01.01.~2015.12.31.)								
	우선순위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섬마을 행복나눔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재판정 이용자에 대한 순위적용은 해당 군 예산상황에 맞게 별도 관리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li> <li>■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li> </ul>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8세이하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b>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b>집단활동형 시설기준 충족</b> ※ 모든 서비스 제공장소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 공공시설(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에 한하여 인정함.(21년 7월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b>[전용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b>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 별도 제출                      ⇒자세한 내용은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참고                 </div>								
다음 페이지 계속										

항 목	내 용
-----	-----

<b>제공인력 기준</b> (모두 충족)	<p>○ 정서프로그램 및 문화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학위 취득 이후 전공과 관련한 임상경력 300시간이상 보유자도 인정</p> <p>②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민간자격 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은 학사학위 이상자도 인정</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div> <p>○ 클래식악기교육 제공인력</p> <p>-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p> <p>※ 전공 악기 증빙 필수 - 특히 학력증명서에 전공악기가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 기타 증빙이 가능한 서류(성적증명서, 졸업연주회 팸플릿 등 학위소지자 및 전공악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 유의</p>
---------------------------	--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p>▶ 월 22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10%;">구분</th> <th style="width:40%;">(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 style="width:50%;">(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0원(90%)</td> <td style="text-align: center;">180,000원(8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00원(10%)</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20%)</td> </tr> </tbody> </table>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25,000원씩 / 2등급:22,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2,500원씩 / 2등급:5,000원씩 산정</p>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200,000원(90%)	18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200,000원(90%)	18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1회 재판정 가능 / 최대 24개월까지 지원)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			
	구분	서비스 항목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사전사후검사	아동과 부모 각각에 대한 사전사후검사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클래식 악기교육	클래식 이론 및 바이올린·클라리넷·플룻 등 악기 그룹지도	주 1회 (60분)
		가족정서프로그램 및 상담	▷ 아동 : 음악과 미술을 활용한 자기표현 활동 및 놀이 ▷ 부모 : 부모교육 및 상담 실시 → 상담일지 별도첨부	주 1회 (60분)
1. 문화프로그램 :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노래교실 운영(월 1회 /120분) 2. 청소년 오케스트라 : 아동 대상 오케스트라 구성·운영(연 중) 3. 행복음악회 : 제공인력과 이용자로 구성된 오케스트라가 지역주민을 위한 음악회 개최(연 1회) 4. 이용자별 사례회의 및 보호자에 '서비스 제공보고서' 제공 (월 1회)		※ 1~4 모두 시행해야 하며, 제공기록지 기록 및 별도 증빙 서류관리 필수 (바우처 결제불가)		

항 목	내 용
	<p>▶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1단계 : 아동과 부모 각각에 대한 사전검사 실시(총 2종) 및 계획수립</p> <p>② 2단계 : 정서 및 클래식 프로그램 서비스 실시</p> <p>③ 3단계 : 월별 정서순화프로그램 담당자 및 클래식 프로그램 담당자의 사례회의를 통해 아동의 변화를 체크하고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안내</p> <p>④ 4단계 : 사후검사 실시(총 2종) 및 종결</p>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형태 : 집단활동형으로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시설이용확인서' 제출</p> <p>※ 모든 서비스 제공장소는 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관, 공공시설(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에 한하여 인정함.(21년 7월 추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b>[추가 제출서류 : 시설이용확인서]</b></p> <p>▷ 필수 명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일자, 시간, 장소, 양측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의무 및 서명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li> <li>- 이용자에게 대한 안전관리대책(이용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 수립하여 함께 제출</li> </ul> <p>▷ 사업별서식 제5호 활용</p> <p>▷ 타 제공기관과 시설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각 기관별 이용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p> <p>▷ 서비스 진행장소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 제공기관이 가입주체 (대인/대물 보상)</p> </div> <p>○ 서비스 집단규모 1:4 이하</p> <p>※단, 이용자는 초·중·고등학생별로 그룹화하여 진행</p> <p>○ 사전·사후 검사 : 아동과 부모 모두에 대해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li> <li>-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li> <li>☞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li> <li>- 검사도구 : 아동의 심리·성격, 정서 순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를 선택하여 실시</li> </ul> <p>○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li> <li>-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상태·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 기록지와 함께 보관</li> <li>- 매월 클래식악기 제공인력과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 간 사례회의를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보고서' 작성 → 1부는 보호자에게 제공, 1부는 이용자 파일에 보관 (점검 시 확인사항)</li> <li>- 문화프로그램, 청소년 오케스트라운영, 행복음악회 실시 후 별도 증빙자료 작성하여 구비(점검 시 확인사항)</li> </ul> <p>○ 결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항 목	내 용
	<p>○ 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 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u> 할 수 없음.</li> </ul> <p>○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p> <p><b>○ 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p>
<p>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p>○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li> <li>-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인/대물 보상)</li> </ul> <p>○ 제공기관 등록 시, 정서순화 및 음악 프로그램 <b>각각</b>에 대한 <u>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u>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u>서비스 내용</u>'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17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시·군·구 자체개발) / 사업코드 100105**

항 목	내 용									
목 적	노인의 신체·정신건강·사회참여증진을 통해 활기차고 즐거운 삶을 지원하고자 함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마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X	X	○	X	X	X	X	X	X	X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서비스 대상 <b>(22년 1월 변경)</b>	소득 및 연령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b>기준중위소득 140% 이하</b> 의 만 65세(1957년생) 이상인 자 (*연령:~1957.12.31.) ② 기초연금수급자								
	선정기준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발급이 가능한 자 ②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부터 추천서와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노인자살위험검사 결과지를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는 자(검사결과지 동봉) ③보건소 소속 방문건강관리사로부터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추천서 발급이 가능한 자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선정기준 ①~③의 경우 전문가가 병원,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21년 추가)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특히,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u>정신의료기관</u> 입원자는 절대 불가함.								
	우선순위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 중복제한 <b>(22년 1월 변경)</b>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젝트,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b>성인심리상담서비스(22년 1월 추가)</b>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⑤-1.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⑤-2.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정신건강전문요원·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 추천서(21년 추가)와 노인자살 위험검사 결과지 ⑤-3.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보건소 소속 방문건강관리사의 추천서 ➔ ⑤-1, ⑤-2, ⑤-3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됨.									

항 목	내 용																
	※ 추천서 "사업별서식 제18호" 활용(2019 변경)																
<b>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b>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b>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04 477 1465 965"> <tr> <td data-bbox="304 477 480 719"> <b>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b> </td> <td data-bbox="480 477 1465 719"> <b>재가방문형+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td> </tr> <tr> <td data-bbox="304 741 480 965"> <b>제공인력 기준</b> </td> <td data-bbox="480 741 1465 965"> <b>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li> <li>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li> <li>③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li> <li>④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li> </ul> </td> </tr> </table>	<b>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b>	<b>재가방문형+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b>제공인력 기준</b>	<b>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li> <li>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li> <li>③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li> <li>④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li> </ul>												
<b>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b>	<b>재가방문형+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b>제공인력 기준</b>	<b>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li> <li>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li> <li>③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li> <li>④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li> </ul>																
<b>서비스 가격/ 제공기간</b>	<table border="1" data-bbox="296 992 1469 1301"> <tr> <td data-bbox="296 992 440 1227"> <b>서비스 가격</b> </td> <td data-bbox="440 992 1469 1227"> <b>▶ 월 14만원</b>            [정부지원금] 126,000원            [본인부담금] 14,000원   <b>▶ 회차별 금액</b>            [정부지원금] 31,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3,500원씩 산정         </td> </tr> <tr> <td data-bbox="296 1227 440 1301"> <b>이용자별 제공기간</b> </td> <td data-bbox="440 1227 1469 1301">           12개월         </td> </tr> </table>	<b>서비스 가격</b>	<b>▶ 월 14만원</b> [정부지원금] 126,000원 [본인부담금] 14,000원  <b>▶ 회차별 금액</b> [정부지원금] 31,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3,500원씩 산정	<b>이용자별 제공기간</b>	12개월												
<b>서비스 가격</b>	<b>▶ 월 14만원</b> [정부지원금] 126,000원 [본인부담금] 14,000원  <b>▶ 회차별 금액</b> [정부지원금] 31,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3,500원씩 산정																
<b>이용자별 제공기간</b>	12개월																
<b>서비스 내용/ 제공절차</b>	<p>▶ <b>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서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지속적 사례관리를 통해 신체·정서·건강분야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li> </ul> <table border="1" data-bbox="296 1435 1465 1883"> <thead> <tr> <th data-bbox="296 1435 376 1473">구 분</th> <th data-bbox="376 1435 1158 1473">서비스 내용</th> <th data-bbox="1158 1435 1318 1473">서비스 횟수</th> <th data-bbox="1318 1435 1465 1473">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96 1473 376 1653"> <b>기본 서비스</b> </td> <td data-bbox="376 1473 1158 1653"> <b>▷ 심리정서 1종 + 신체평가 1종 → 총 2종 실시</b>            -심리정서 : 우울(GDSSF-K), 자살(SSI), 사회적응생활만족척도 중 택 1            -신체평가 : Inbody, ADL 중 택 1  <b>→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b> </td> <td data-bbox="1158 1473 1318 1653">           연 2회         </td> <td data-bbox="1318 1473 1465 1653">           분야별 1종 (총 2종) 의무 실시         </td> </tr> <tr> <td data-bbox="296 1653 376 1771"> <b>분야별서비스 성취도평가</b> </td> <td data-bbox="376 1653 1158 1771"> <b>▷ 정서지원서비스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b>  <b>→ 상담일지 별도첨부 (분야별서비스와 일괄작성)</b> </td> <td data-bbox="1158 1653 1318 1771">           주 1회씩            월 2회            (회당 60분)         </td> <td data-bbox="1318 1653 1465 1771"> <b>재가방문형</b> </td> </tr> <tr> <td data-bbox="296 1771 376 1883"></td> <td data-bbox="376 1771 1158 1883"> <b>▷ 자살예방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치매예방서비스, 대인관계증진서비스 중 이용자가 택 2하여 제공</b>  <b>→ 상담일지 별도첨부 (정서지원서비스와 일괄작성)</b> </td> <td data-bbox="1158 1771 1318 1883">           주 1회씩            월 2회            (회당 60분)         </td> <td data-bbox="1318 1771 1465 1883"> <b>기관방문형</b> </td> </tr> </tbody> </table> <p>▶ <b>서비스 제공절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단계 : 서비스 대상자 심리정서·신체평가를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사전검사(총 2종)</li> <li>② 2단계 : 정서지원서비스 및 이용자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서비스 선택하여 제공</li> </ul>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비 고	<b>기본 서비스</b>	<b>▷ 심리정서 1종 + 신체평가 1종 → 총 2종 실시</b> -심리정서 : 우울(GDSSF-K), 자살(SSI), 사회적응생활만족척도 중 택 1 -신체평가 : Inbody, ADL 중 택 1 <b>→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b>	연 2회	분야별 1종 (총 2종) 의무 실시	<b>분야별서비스 성취도평가</b>	<b>▷ 정서지원서비스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b> <b>→ 상담일지 별도첨부 (분야별서비스와 일괄작성)</b>	주 1회씩 월 2회 (회당 60분)	<b>재가방문형</b>		<b>▷ 자살예방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치매예방서비스, 대인관계증진서비스 중 이용자가 택 2하여 제공</b> <b>→ 상담일지 별도첨부 (정서지원서비스와 일괄작성)</b>	주 1회씩 월 2회 (회당 60분)	<b>기관방문형</b>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비 고														
<b>기본 서비스</b>	<b>▷ 심리정서 1종 + 신체평가 1종 → 총 2종 실시</b> -심리정서 : 우울(GDSSF-K), 자살(SSI), 사회적응생활만족척도 중 택 1 -신체평가 : Inbody, ADL 중 택 1 <b>→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b>	연 2회	분야별 1종 (총 2종) 의무 실시														
<b>분야별서비스 성취도평가</b>	<b>▷ 정서지원서비스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b> <b>→ 상담일지 별도첨부 (분야별서비스와 일괄작성)</b>	주 1회씩 월 2회 (회당 60분)	<b>재가방문형</b>														
	<b>▷ 자살예방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치매예방서비스, 대인관계증진서비스 중 이용자가 택 2하여 제공</b> <b>→ 상담일지 별도첨부 (정서지원서비스와 일괄작성)</b>	주 1회씩 월 2회 (회당 60분)	<b>기관방문형</b>														

항 목	내 용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③ 3단계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요구 조사, 사후검사(총 2종)</p>	
	<p>○ 서비스 형태 : 재가방문형(정서지원)+기관방문형(분야별서비스)</p> <p>○ 서비스 집단규모 원칙은 1:1임 (대인관계증진서비스는 3개월간 준수) (단, 대인관계증진서비스(3개월 이후) 및 문화여가서비스의 경우 집단활동형(1:8)도 선택적 가능)</p> <p>○ 사전·사후 검사 : 총 2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li> <li>-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li> <li>- 검사도구 : 심리정서분야 택 1, 신체평가분야 택 1</li> <li>☞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li> <li>-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주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p> </div> <p>○ ‘문화여가서비스’ 진행 시 제공기관 준수사항 (21년 수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비서류</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임대계약서(자차인 경우 제외) : 양측의 안전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명시</li> <li>▶ 차량보험가입증명서(용도:영업용)</li> <li>▶ 차량등록증</li> <li>▶ 체험활동 개요 및 일지</li> <li>▶ 보호자동의서(사업별서식제25호)</li> <li>▶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사전 안전교육일지</li> <li>▶ 비상연락망</li> <li>▶ 여행자보험 서류(당일 참여자 전체 가입)</li> <li>▶ 체험시설 안전사항 확인 기록지(자체 서식 활용)</li> </ul>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상시로 자체 차량 운행 시, 등록 군구에 사전 보고 필수(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임대인 경우 차량임대계약서 제출)</p> </td> </tr> </tbody> </table> <p>○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li>- 서비스 세부 내용 및 대상자에 대한 상태·평가 등은 <b>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b></li> </ul> <p>○ 결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b>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b>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 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구비서류
구비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임대계약서(자차인 경우 제외) : 양측의 안전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명시</li> <li>▶ 차량보험가입증명서(용도:영업용)</li> <li>▶ 차량등록증</li> <li>▶ 체험활동 개요 및 일지</li> <li>▶ 보호자동의서(사업별서식제25호)</li> <li>▶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사전 안전교육일지</li> <li>▶ 비상연락망</li> <li>▶ 여행자보험 서류(당일 참여자 전체 가입)</li> <li>▶ 체험시설 안전사항 확인 기록지(자체 서식 활용)</li> </ul> <p style="color: red; font-weight: bold;">※상시로 자체 차량 운행 시, 등록 군구에 사전 보고 필수(차량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제출 / 임대인 경우 차량임대계약서 제출)</p>		

항 목	내 용
	<p>○ <b>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u>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u></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 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li> </ul> <p>○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연 2회이상)</p> <p>○ <b>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p>
<p>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p>○ <b>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대인/대물 보상)</li> <li>-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 보상)</li> </ul> <p>○ 제공기관 등록 시, <u>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u>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u>서비스 내용</u>'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18 도시지역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예술교육서비스 (사군구 공동개발) / 사업코드 170205**

항 목	내 용									
목 적	문화에 소외된 도시지역 36개월 미만 영유아의 정서발달 지원 및 주 양육자와의 애착형성, 놀이를 통한 부모교육을 위한 예술교육 서비스를 실행함으로써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경감 및 가족관계 강화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마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X	X	X	X	X	X	X	X	○	○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및 연령	<b>기준중위소득 120% 이하</b> 가구의 12개월 ~ 만 4세(2018년생) 이하 영유아 (*연령 : 2018.01.01.~ 생후 12개월) * 2019년부터 자녀에게 이용권 부여 및 최소 연령기준 상향조정								
	우선순위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도시지역 영아와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예술교육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해당 서비스 이용권은 부모가 아닌 <b>자녀에게 부여</b> 되어야 함.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⑤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b> 되어야 함. ※ 2021년부터 옹진군, 강화군 모두 '기관방문형' 적용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항 목	내 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b>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b></td> <td> <p>○ 퍼포먼스놀이/부모교육세미나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유아교육법" 제 22조 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②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이후 해당 자격 관련 영유아 대상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학위 취득 이후 전공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4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학위취득 이후 전공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도 인정</p> <p>②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4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학위 이상자도 인정</p>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위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i.or.kr">pqi.or.kr</a>(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조회바람</p>	<b>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b>	<p>○ 퍼포먼스놀이/부모교육세미나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유아교육법" 제 22조 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②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이후 해당 자격 관련 영유아 대상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학위 취득 이후 전공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4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학위취득 이후 전공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도 인정</p> <p>②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4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학위 이상자도 인정</p>		
<b>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b>	<p>○ 퍼포먼스놀이/부모교육세미나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유아교육법" 제 22조 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②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이후 해당 자격 관련 영유아 대상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학위 취득 이후 전공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4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 이상 전공자로 학위취득 이후 전공 관련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도 인정</p> <p>②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 단, 지방자치법 제2조에 의한 "군" 단위 지역과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43호"에 의한 '성장촉진지역'은 학사학위 이상자도 인정</p>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서비스 가격</td> <td> <p>▶ 월 10만원 [정부지원금] 9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 강화군 22,500원씩 산정(월 4회) - 용진군 45,000원씩 산정(월 2회) [본인부담금] - 강화군 2,500원씩 산정(월 4회) - 용진군 5,000원씩 산정(월 2회)</p>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이용자별 제공기간</td>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12개월</td> </tr> </table>	서비스 가격	<p>▶ 월 10만원 [정부지원금] 9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 강화군 22,500원씩 산정(월 4회) - 용진군 45,000원씩 산정(월 2회) [본인부담금] - 강화군 2,500원씩 산정(월 4회) - 용진군 5,000원씩 산정(월 2회)</p>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 가격	<p>▶ 월 10만원 [정부지원금] 9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 강화군 22,500원씩 산정(월 4회) - 용진군 45,000원씩 산정(월 2회) [본인부담금] - 강화군 2,500원씩 산정(월 4회) - 용진군 5,000원씩 산정(월 2회)</p>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항 목	내 용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p>※ 2019년부터 웅진군, 강화군 '퍼포먼스놀이' 서비스 제공시간/횟수 개별 규정</p> <table border="1" data-bbox="311 454 1481 880"> <thead> <tr> <th data-bbox="311 454 395 504">구분</th> <th data-bbox="395 454 1074 504">서비스 내용</th> <th colspan="2" data-bbox="1074 454 1481 504">서비스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11 504 395 779" rowspan="2">기본 서비스</td> <td data-bbox="395 504 1074 622">           ▷ 사전사후검사 : 이용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td> <td colspan="2" data-bbox="1074 504 1481 622">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td> </tr> <tr> <td data-bbox="395 622 1074 779">           ▷ 퍼포먼스놀이            · 부모·유아가 함께하는 음악놀이, 신체활동, 오감자극 미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 놀이교육            → 상담일지 별도첨부         </td> <td data-bbox="1074 622 1278 779">           [웅진군]            월 2회            (회당80분)         </td> <td data-bbox="1278 622 1481 779">           [강화군]            주 1회씩            월 4회            (회당 40분)         </td> </tr> <tr> <td data-bbox="311 779 395 880"></td> <td data-bbox="395 779 1074 880">           ▷ 예술교육, 가족정서지원, 부모교육 세미나         </td> <td colspan="2" data-bbox="1074 779 1481 880">           각 분기별 1회(90분)            (바우처 결제불가)         </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 사전사후검사 : 이용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 퍼포먼스놀이 · 부모·유아가 함께하는 음악놀이, 신체활동, 오감자극 미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 놀이교육 → 상담일지 별도첨부	[웅진군] 월 2회 (회당80분)	[강화군] 주 1회씩 월 4회 (회당 40분)		▷ 예술교육, 가족정서지원, 부모교육 세미나	각 분기별 1회(90분) (바우처 결제불가)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 사전사후검사 : 이용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 퍼포먼스놀이 · 부모·유아가 함께하는 음악놀이, 신체활동, 오감자극 미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퍼포먼스 놀이교육 → 상담일지 별도첨부	[웅진군] 월 2회 (회당80분)	[강화군] 주 1회씩 월 4회 (회당 40분)													
	▷ 예술교육, 가족정서지원, 부모교육 세미나	각 분기별 1회(90분) (바우처 결제불가)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단계 :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사전검사</li> <li>② 2단계 : 음악놀이 및 퍼포먼스놀이 프로그램 실시</li> <li>③ 3단계 : 예술교육, 가족정서지원, 부모교육 세미나 분기별 실시</li> <li>④ 4단계 : 서비스 만족도조사 실시, 사후검사</li> </ol> <p>○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p> <p>○ 서비스 집단규모는 1:8팀 이하(자녀와 부모 2인 1팀 구성)        ※ 자녀가 2인 이상이면서 이용권을 부여받은 경우, 부모 1명이 동행 가능 (2019년 변경)</p> <p>○ 사전·사후 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li> <li>-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li> <li>☞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li> </ul> <p>○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li>-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상태·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b>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b></li> </ul> <p>○ 결제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b>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b>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u>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u></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li> </ul> </li> <li>○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연 2회이상)</li> <li>○ <b>기타 세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li> </ul>
<p>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li> </ul> </li> <li>○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b>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u>서비스 내용</u>'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li> </ul>

## Ⅳ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 (시·군·구 공동개발) / 사업코드 130205

항 목	내 용									
목 적	청소년기 충분한 신체활동 및 균형적인 영양제공, 학교생활 유연성관리를 매개로 활발한 신체 및 두뇌활동을 유도함으로써 스트레스 요인을 경감시켜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능력과 자아존중감을 증진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마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	X	X	X	X	○	X	X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면서 만 6세 이상(2016년생)~만 15세(2007년생) 이하의 초·중학교 재학생 (*연령:2007.01.01.~2016.12.31.)								
	우선순위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즐거운 아침, 행복한 학교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									
	신청자가 만14세미만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li> <li>■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li> </ul>								
	신청자가 만14세이상~만15세이하인 경우	카드사에 신청(카드사 별도 문의)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b> 되어야 함.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b>집단활동형 시설기준 충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69.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b>[전용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경우]</b> 시설이용확인서(사업별서식 제5호) 별도 제출 ⇒자세한 내용은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도 추가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69.3㎡이상이어야 함.</li> <li>- '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li> <li>-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li> </ul> </li> </ul>										

항 목	내 용										
	<p><b>제공인력 기준</b></p> <p>다음 ①,②,③,④,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③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또는 "동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④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⑤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체육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j.or.kr">pqj.or.kr</a>(<a href="#">민간자격정보서비스</a>) 에서 조회바람</p>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p>▶ 월 15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p> <table border="1" data-bbox="480 723 1453 891">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35,000원(90%)</td> <td>120,000원(8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5,000원(10%)</td> <td>30,000원(20%)</td> </tr> </tbody> </table>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6,750원씩 / 2등급:6,000원씩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750원씩 / 2등급:1,500원씩 산정</p> <p>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p>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35,000원(90%)	120,000원(80%)	본인부담금	15,000원(10%)	30,000원(20%)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35,000원(90%)	120,000원(80%)									
본인부담금	15,000원(10%)	30,000원(20%)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20 1167 1469 1563"> <thead> <tr> <th>구 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본 서비스</td> <td>▶ 사전사후검사 : 개별운동능력검사, 체성분검사, 학교적응유연성검사, 자아존중 감척도검사, 영양지수(NQ검사) (총 5종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r> <td>▶ 아침맞춤형 신체활동서비스(회당 30분) ▶ 아침영양제공(회당 15분)</td> <td>주 5회 (회당 45분)</td> </tr> <tr> <td>▶ 부모교육 및 상담 (제공기록지 기록 필수) - 전화, 상담, 집합교육 등의 형식으로 진행 - 월별 서비스제공 보고서(가정통신문) 배부</td> <td>월 1회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1단계 : 사전검사 총 5종 실시          ② 2단계 : 기본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매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내용 전달(보고서, 가정통신문 등)          ④ 4단계 : 사후검사(총 5종)를 통한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p>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 사전사후검사 : 개별운동능력검사, 체성분검사, 학교적응유연성검사, 자아존중 감척도검사, 영양지수(NQ검사) (총 5종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 아침맞춤형 신체활동서비스(회당 30분) ▶ 아침영양제공(회당 15분)	주 5회 (회당 45분)	▶ 부모교육 및 상담 (제공기록지 기록 필수) - 전화, 상담, 집합교육 등의 형식으로 진행 - 월별 서비스제공 보고서(가정통신문) 배부	월 1회 (바우처 결제불가)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 서비스	▶ 사전사후검사 : 개별운동능력검사, 체성분검사, 학교적응유연성검사, 자아존중 감척도검사, 영양지수(NQ검사) (총 5종 실시)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									
	▶ 아침맞춤형 신체활동서비스(회당 30분) ▶ 아침영양제공(회당 15분)	주 5회 (회당 45분)									
	▶ 부모교육 및 상담 (제공기록지 기록 필수) - 전화, 상담, 집합교육 등의 형식으로 진행 - 월별 서비스제공 보고서(가정통신문) 배부	월 1회 (바우처 결제불가)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형태 : 집단활동형으로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시설이용확인서' 제출</p> <p>○ 서비스 집단규모 1:20 이하</p> <p>○ 사전·사후 검사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p>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일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일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li> </ul> </li> <li>- 검사도구 : 개별운동능력검사, 체성분검사, 학교적응유연성검사, 자아존중감척도검사, 영양지수(NQ지수)검사 <b>총 5종</b></li> <li>○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b>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제공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li>- <b>부모교육 및 상담</b> 내용 반드시 제공기록지에 작성 : <b>실시방법, 제공내용 등 구체적 기록</b></li> </ul> </li> <li>○ <b>보고서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월별 서비스 제공 내용 전달</b></li> <li>○ <b>결제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b>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b>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li> <li>○ <b>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b>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b></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익월 말까지</b>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b>연달아서</b> 할 수 없음.</li> </ul> </li> <li>○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연 2회이상)</li> <li>○ <b>기타 세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li> </ul>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li> <li>-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인/대물 보상)</li> <li>- 서비스 제공장소(학교)에 대한 추가 제출서류</li> </ul> </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b>[추가 제출서류 : 시설이용확인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명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일자, 시간, 장소, 양측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의무 및 서명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li> <li>-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용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 수립하여 함께 제출</li> </ul> </li> <li>▷ 사업별서식 제5호 활용</li> <li>▷ 타 제공기관과 시설이용이 중복되는 경우, <b>각 기관별 이용사항을 모두 기재하여</b> 제출</li> <li>▷ <b>서비스 제공장소</b>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 제공기관이 가입주체 (대인/대물 보상)</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등록 시, <b>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b>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li> </ul>

## ☒ 도서지역 어르신 삶의 질 활력증진서비스 (사·군·구 공동개발) / 사업코드 190105

항 목	내 용									
목 적	여가문화가 상대적으로 소외지역인 도서지역 어르신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정서지원하고 건강유지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마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X	X	X	X	X	X	X	X	○	○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및 연령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1957년 생)이상 노인 (*연령 : ~1957.12.31.) ②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순위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도서지역 어르신 삶의 질 활력증진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input type="checkbox"/>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22년 1월 변경)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b>									
	★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22년 1월 변경)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b>강화군, 옹진군 기준 상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화군 : 102.3㎡ 이상</li> <li>- 옹진군 : 69.3㎡ 이상 - (22년 1월 변경)</li> </ul> </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9년도 추가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102.3㎡이상(강화군), 69.3㎡이상(옹진군)이어야 함.</li> <li>- '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li> <li>-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li> </ul> </li> </ul>								
다음페이지에 계속										

항 목	내 용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22년 1월 변경)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27 302 502 772"> <p style="text-align: center;">★  <b>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22년 1월                변경)</b></p> </td> <td data-bbox="502 302 1476 772"> <p>○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 민간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전문학사이상인 자</p> <p>○ 여가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b>여가활동 관련 민간 자격</b> 자격 소지자                ③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④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p> <p>○ 건강관리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전문자격(간호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보건교육사, 영양보호사) 소지자                ② 보건복지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 이수한자                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치매관리 또는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p> </td> </tr> </table>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i.or.kr">pqi.or.kr</a>(<b>민간자격정보서비스</b>) 에서 조회바람</p>	<p style="text-align: center;">★  <b>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22년 1월                변경)</b></p>	<p>○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 민간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전문학사이상인 자</p> <p>○ 여가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b>여가활동 관련 민간 자격</b> 자격 소지자                ③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④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p> <p>○ 건강관리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전문자격(간호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보건교육사, 영양보호사) 소지자                ② 보건복지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 이수한자                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치매관리 또는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p>																				
<p style="text-align: center;">★  <b>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                (22년 1월                변경)</b></p>	<p>○ 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 민간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학과 전문학사이상인 자</p> <p>○ 여가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④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b>여가활동 관련 민간 자격</b> 자격 소지자                ③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                ④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p> <p>○ 건강관리프로그램 제공인력 : 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가전문자격(간호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보건교육사, 영양보호사) 소지자                ② 보건복지부 지정교육기관에서 치매전문교육 이수한자                ③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치매관리 또는 심리상담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p>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27 828 454 952">           서비스            가격         </td> <td data-bbox="454 828 1476 952"> <p>▶ 월 15만원                [정부지원금] 14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11회기:11,660원씩 / 12회기:11,74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11회기:800원씩 / 12회기:1,200원씩 산정</p> </td> </tr> <tr> <td data-bbox="327 952 454 1153">           이용자별            제공기간         </td> <td data-bbox="454 952 1476 1153">           12개월         </td> </tr> </table>	서비스 가격	<p>▶ 월 15만원                [정부지원금] 14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11회기:11,660원씩 / 12회기:11,74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11회기:800원씩 / 12회기:1,200원씩 산정</p>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 가격	<p>▶ 월 15만원                [정부지원금] 140,000원                [본인부담금] 10,000원</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11회기:11,660원씩 / 12회기:11,74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11회기:800원씩 / 12회기:1,200원씩 산정</p>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22년 1월 변경)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27 1198 454 1254">서비스 구분</th> <th data-bbox="454 1198 598 1254">서비스종류</th> <th data-bbox="598 1198 1101 1254">서비스내용</th> <th data-bbox="1101 1198 1292 1254">서비스 제공횟수</th> <th data-bbox="1292 1198 1476 1254">집단규모</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7 1254 454 1758" rowspan="4">           기본서비스            (주 3회씩            월 12회)         </td> <td data-bbox="454 1254 598 1377">           사전사후            검사         </td> <td data-bbox="598 1254 1101 1377">           이용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 <b>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b> </td> <td data-bbox="1101 1254 1292 1377">           연 2회            (<b>바우처 결제불가</b>)         </td> <td data-bbox="1292 1254 1476 1377">           1:1         </td> </tr> <tr> <td data-bbox="454 1377 598 1500">           심리지원         </td> <td data-bbox="598 1377 1101 1500">           음악, 미술, 놀이 등 예술활동을 통한            심리정서지원            → <b>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b> </td> <td data-bbox="1101 1377 1292 1500">           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         </td> <td data-bbox="1292 1377 1476 1500">           1:10이하         </td> </tr> <tr> <td data-bbox="454 1500 598 1624">           여가프로그램         </td> <td data-bbox="598 1500 1101 1624">           노래교실, 쉬위댄스(스트레칭)            → <b>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b> </td> <td data-bbox="1101 1500 1292 1624">           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         </td> <td data-bbox="1292 1500 1476 1624">           ★            [강화]1:30이하            [웅진]1:20이하         </td> </tr> <tr> <td data-bbox="454 1624 598 1758">           건강관리         </td> <td data-bbox="598 1624 1101 1758">           건강증진서비스, 건강체크            → <b>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b> </td> <td data-bbox="1101 1624 1292 1758">           주 1회씩            월 4회            (회당30분이상)         </td> <td data-bbox="1292 1624 1476 1758">           1:10이하         </td> </tr> </tbody> </table> <p>사례관리 : 개인별 상담 및 서비스 연계(요청 시 또는 필요시) - <b>바우처 결제불가</b></p>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단계 : 개인욕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및 사전검사 실시</li> <li>② 2단계 : 심리지원, 여가프로그램, 건강관리서비스 제공</li> <li>③ 3단계 : 사후검사 실시 및 종결</li> </ol>	서비스 구분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횟수	집단규모	기본서비스 (주 3회씩 월 12회)	사전사후 검사	이용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 <b>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b>	연 2회 ( <b>바우처 결제불가</b> )	1:1	심리지원	음악, 미술, 놀이 등 예술활동을 통한 심리정서지원 → <b>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b>	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	1:10이하	여가프로그램	노래교실, 쉬위댄스(스트레칭) → <b>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b>	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	★ [강화]1:30이하 [웅진]1:20이하	건강관리	건강증진서비스, 건강체크 → <b>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b>	주 1회씩 월 4회 (회당30분이상)	1:10이하
서비스 구분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서비스 제공횟수	집단규모																			
기본서비스 (주 3회씩 월 12회)	사전사후 검사	이용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 <b>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b>	연 2회 ( <b>바우처 결제불가</b> )	1:1																			
	심리지원	음악, 미술, 놀이 등 예술활동을 통한 심리정서지원 → <b>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b>	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	1:10이하																			
	여가프로그램	노래교실, 쉬위댄스(스트레칭) → <b>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b>	주 1회씩 월 4회 (회당 60분)	★ [강화]1:30이하 [웅진]1:20이하																			
	건강관리	건강증진서비스, 건강체크 → <b>상담일지 별도첨부(전체 프로그램 일괄)</b>	주 1회씩 월 4회 (회당30분이상)	1:10이하																			

항 목	내 용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22년 1월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웅진군, 강화군 모두 추가확보시설 인정 불가(21년 7월 변경)</b></li> </ul> </li> <li>★○ 서비스 집단 규모(22년 1월 변경 : 여가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지원서비스 1:10 이하(강화군, 웅진군 공통)</li> <li>- 여가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화군 1:30 이하</li> <li>· <b>웅진군 1:20 이하</b></li> </ul> </li> <li>- 건강관리프로그램 1:10 이하(강화군, 웅진군 공통)</li> </ul> </li> <li>○ 사전·사후 검사 (1:1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li> <li>-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li> </ul> </li> </ul> </li> <li>○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li>-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상태·평가, 보호자 전달사항은 <b>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b></li> </ul> </li> <li>○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b>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b>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 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li> <li>○ 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li>-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u> 할 수 없음.</li> </li></ul> <li>○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연 2회이상)</li> <li>○ <b>기타 세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li>

항 목	내 용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대인/대물 보상)</li> </ul> </li> <li>○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li> </ul>

## ㉓ 꼬마작가 만들기 프로젝트 (사·군·구 공동개발) / 사업코드 290605

항 목	내 용									
목 적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통해 창의성과 문학적 표현, 논리적 언어표현과 기획능력 향상 및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마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	○	X	X	X	X	X	X	X	X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구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만 4세(2018년생)~만 12세(2010년생) 이하인 아동 (*연령:2010.01.01.~2018.12.31.)								
	우선순위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꼬마작가 만들기 프로젝트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오감쑥쑥서비스								
	유의사항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⑤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b>									
	[중구]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동구]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b>[추가확보시설 인정범위]</b>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시설, 학원을 제외한 시설에 한하여 등록 군구에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추가 활용가능                 </div>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항 목	내 용																					
<p>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p>	<p>[공통] 제공인력 기준</p>	<p>다음 ①,②,③,④,⑤,⑥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초·중등교육법 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1조에 의한 보육교사</p> <p>②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p> <p>③ 평생교육법 제24조에 의한 평생교육사</p> <p>④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독서지도사</p> <p>⑤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아동미술지도사</p> <p>⑥ 미술관련(시각디자인, 응용미술, 조형예술) 전공자로 다음 중 한가지를 충족한 자</p> <p>㉠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학위취득 이후 아동 대상 미술 관련 지도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취득 이후 아동 대상 미술 관련 지도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p> <p>㉢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취득 이후 아동 대상 미술 관련 지도 실무경력이 1개월 이상인 자</p> <p>※경력은 학위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j.or.kr">pqj.or.kr</a>(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조회바람</p>																				
<p>서비스 가격/ 제공기간</p>	<p>서비스 가격</p>	<p>▶ 월 13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p> <table border="1" data-bbox="470 1025 1460 1176"> <thead> <tr> <th>구분</th> <th>(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17,000원(90%)</td> <td>104,000원(8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13,000원(10%)</td> <td>26,000원(20%)</td> </tr> </tbody> </table>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29,250원씩 / 2등급:26,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3,250원씩 / 2등급:6,500원씩 산정</p> <p>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p>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17,000원(90%)	104,000원(80%)	본인부담금	13,000원(10%)	26,000원(20%)											
구분	(1등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17,000원(90%)	104,000원(80%)																				
본인부담금	13,000원(10%)	26,000원(20%)																				
<p>서비스 내용/ 제공절차</p>	<p>기 본 서비스</p>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470 1411 1476 1982">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서비스 내용</th> <th colspan="2">서비스횟수/집단규모</th> </tr> <tr> <th>미취학아동</th> <th>초등학생</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기 본 서비스</td> <td>○ 사전사후검사 : 증상 파악을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총 2종 실시) - 읽기능력검사(자체개발도구) - Rosenberg 자존감척도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 colspan="2">연 2회 <b>1:1 실시</b>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r> <td>* 1 ~ 3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td> <td></td> </tr> <tr> <td>1. 이야기 캐기(월 1회) - 책 읽기, 바꿔읽기, 상상하며 읽기 기법 등을 활용한 이야기 소재 발견하기 2. 이야기 풀리기(월 2회) - 연극, 만들기, 그리기 등 매체와 활동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만들어낸 이야기를 책으로 완성 3. 이야기 쌓기(월 1회) - 이야기 풀리기를 통해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소재들을 책이나 공연, 동영상 형태로 제작하여 발표</td> <td>주1회씩 월4회 (회당40분)</td> <td>주1회씩 월4회 (회당80분)</td> </tr> <tr> <td>▶ 활동내용 중 하나의 스토리북을 선정하여 나만의 책 출판식, 꼬마작가들의 전시회</td> <td></td> <td></td> <td>연 1회 (바우처 결제불가)</td> </tr> </tbody> </table>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집단규모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기 본 서비스	○ 사전사후검사 : 증상 파악을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총 2종 실시) - 읽기능력검사(자체개발도구) - Rosenberg 자존감척도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b>1:1 실시</b>  (바우처 결제불가)		* 1 ~ 3 상담일지 별도첨부			1. 이야기 캐기(월 1회) - 책 읽기, 바꿔읽기, 상상하며 읽기 기법 등을 활용한 이야기 소재 발견하기 2. 이야기 풀리기(월 2회) - 연극, 만들기, 그리기 등 매체와 활동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만들어낸 이야기를 책으로 완성 3. 이야기 쌓기(월 1회) - 이야기 풀리기를 통해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소재들을 책이나 공연, 동영상 형태로 제작하여 발표	주1회씩 월4회 (회당40분)	주1회씩 월4회 (회당80분)	▶ 활동내용 중 하나의 스토리북을 선정하여 나만의 책 출판식, 꼬마작가들의 전시회			연 1회 (바우처 결제불가)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집단규모																				
		미취학아동	초등학생																			
기 본 서비스	○ 사전사후검사 : 증상 파악을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총 2종 실시) - 읽기능력검사(자체개발도구) - Rosenberg 자존감척도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연 2회 <b>1:1 실시</b>  (바우처 결제불가)																				
	* 1 ~ 3 상담일지 별도첨부																					
	1. 이야기 캐기(월 1회) - 책 읽기, 바꿔읽기, 상상하며 읽기 기법 등을 활용한 이야기 소재 발견하기 2. 이야기 풀리기(월 2회) - 연극, 만들기, 그리기 등 매체와 활동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만들어낸 이야기를 책으로 완성 3. 이야기 쌓기(월 1회) - 이야기 풀리기를 통해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소재들을 책이나 공연, 동영상 형태로 제작하여 발표	주1회씩 월4회 (회당40분)	주1회씩 월4회 (회당80분)																			
▶ 활동내용 중 하나의 스토리북을 선정하여 나만의 책 출판식, 꼬마작가들의 전시회			연 1회 (바우처 결제불가)																			

항 목	내 용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p>▶ 서비스 제공절차</p> <p>① 1단계 : 사전검사(총 2종)를 통해 서비스의 구체적 계획 수립          ② 2단계 : 월별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 종결(사후검사 2종 실시)</p>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 원칙 적용</p> <table border="1" data-bbox="327 539 1474 770"> <thead> <tr> <th data-bbox="327 539 453 589">등록 구</th> <th data-bbox="453 539 1474 589">규정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7 589 453 638">중구</td> <td data-bbox="453 589 1474 638">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제공가능</td> </tr> <tr> <td data-bbox="327 638 453 770">동구</td> <td data-bbox="453 638 1474 770">           -추가확보시설 활용 가능하나, 등록 구에 사전 신고 필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시설, 사설학원은 서비스 제공장소가 될 수 없음            -추가확보 활용 시,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시설이용확인서' 제출         </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p> <table border="1" data-bbox="327 824 1474 1397"> <thead> <tr> <th data-bbox="327 824 453 873">등록 구</th> <th data-bbox="453 824 1474 873">등록 구에 따른 조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27 873 453 960">중구</td> <td data-bbox="453 873 1474 960">- 제공장소 및 이용자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td> </tr> <tr> <td data-bbox="327 960 453 1397">동구</td> <td data-bbox="453 960 1474 1397">           - 제공장소 및 이용자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b>추가확보시설 활용 시, 다음과 같이 조치</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추가 제출서류 : 시설이용확인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명시 사항</li> <li>- 이용일자, 시간, 장소, 양측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의무 및 서명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li> <li>-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용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 수립하여 함께 제출</li> <li>▶ 사업별서식 제5호 활용</li> <li>▶ 타 제공기관과 시설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각 기관별 이용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li> <li>▶ <b>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b> : 제공기관이 가입주체 (대인/대물 보상)</li> </ul> </div> </td> </tr> </tbody> </table> <p>○ 서비스 집단 규모 : <b>그룹화는 제공기관 편이에 맞추어 실시 (입학시기 등 고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취학아동 1:5 이하</li> <li>- 초등학생 1:8 이하</li> </ul> <p>○ 사전·사후 검사 : <b>총 2종 실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li> <li>-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li> <li>☞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li> </ul> <p>○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b>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li>-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상태·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b>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 기록지와 함께 보관</b></li> </ul>	등록 구	규정사항	중구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제공가능	동구	-추가확보시설 활용 가능하나, 등록 구에 사전 신고 필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시설, 사설학원은 서비스 제공장소가 될 수 없음 -추가확보 활용 시,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시설이용확인서' 제출	등록 구	등록 구에 따른 조치사항	중구	- 제공장소 및 이용자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동구	- 제공장소 및 이용자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b>추가확보시설 활용 시, 다음과 같이 조치</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추가 제출서류 : 시설이용확인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명시 사항</li> <li>- 이용일자, 시간, 장소, 양측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의무 및 서명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li> <li>-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용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 수립하여 함께 제출</li> <li>▶ 사업별서식 제5호 활용</li> <li>▶ 타 제공기관과 시설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각 기관별 이용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li> <li>▶ <b>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b> : 제공기관이 가입주체 (대인/대물 보상)</li> </ul> </div>
등록 구	규정사항												
중구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 / 등록된 전용공간에서만 제공가능												
동구	-추가확보시설 활용 가능하나, 등록 구에 사전 신고 필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종교시설, 사설학원은 서비스 제공장소가 될 수 없음 -추가확보 활용 시,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시설이용확인서' 제출												
등록 구	등록 구에 따른 조치사항												
중구	- 제공장소 및 이용자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동구	- 제공장소 및 이용자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 - <b>추가확보시설 활용 시, 다음과 같이 조치</b>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b>[추가 제출서류 : 시설이용확인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명시 사항</li> <li>- 이용일자, 시간, 장소, 양측 대표자의 안전관리책임의무 및 서명 등 구체적인 사항 포함</li> <li>-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이용자 안전교육 계획, 비상연락망 구축 등) 수립하여 함께 제출</li> <li>▶ 사업별서식 제5호 활용</li> <li>▶ 타 제공기관과 시설이용이 중복되는 경우, 각 기관별 이용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제출</li> <li>▶ <b>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상해보험(총 2종) 가입 필수</b> : 제공기관이 가입주체 (대인/대물 보상)</li> </ul> </div>												

항 목	내 용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결제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b>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b>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li> <li>○ <b>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 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li> </ul> </li> <li>○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연 2회이상)</li> <li>○ <b>기타 세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li> </ul>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li> <li>- 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이용아동보호 대책방안 수립 필수 (사업별서식 제4호 참고)</li> </ul> </li> <li>○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b>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li> </ul>

## 22 섬마을 꼬마작가서비스 (시·군·구 공동개발) / 사업코드 290705

항 목	내 용									
목 적	도서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실시하고 문학적 표현, 논리적 언어표현을 통해 정서발달 지원 및 창의성 향상을 도모함.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마추출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X	X	X	X	X	X	X	X	○	○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군마다 상이할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만 3세(2019년생)~만 9세(2013년생) 이하 아동 (*연령 : 2013.01.01.~2019.12.31.)								
	우선순위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섬마을 꼬마작가서비스를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⑤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b> 되어야 함.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제공인력 기준	<b>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b>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또는 "평생교육법" 제24조에 의한 평생교육사 또는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독서지도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li> <li>②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아동미술지도사</li> <li>③ 미술관련(시각디자인, 응용미술, 조형예술)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로 학위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 관련 지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li> <li>㉡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 관련 지도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li> <li>㉢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학위취득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미술 관련 지도 실무경력 1개월 이상인 자</li> </ul> </li> </ol>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③에서 규정하는 경력은 취득한 학위(전공)와 연관된 내용으로써, 해당 학위를 취득한 이후의 것만 인정가능                      (근로계약체결 후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div>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j.or.kr">pqj.or.kr</a>(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조회바람</p>								

항 목	내 용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15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35,000(90%)
		본인부담금	15,000(10%)
		▶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33,750원씩 / 2등급:30,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3,750원씩 / 2등급:7,500원씩 산정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u>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u>		
	구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횟수
	기 본 서비스	<p>○ 사전사후검사 : 증상 파악을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총 2중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읽기능력검사(자체개발도구)</li> <li>- Rosenberg 자존감척도</li> </ul> <p>➔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p> <p><b>* 1 ~ 3 상담일지 별도첨부</b></p> <p><b>1. 이야기 캐기(월 1회)</b> - 책 읽기, 바꿔읽기, 상상하며 읽기 기법 등을 활용한 이야기 소재 발견하기</p> <p><b>2. 이야기 굴리기(월 2회)</b> - 연극, 만들기, 그리기 등 매체와 활동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를 책으로 완성</p> <p><b>3. 이야기 쌓기(월 1회)</b> - 이야기 굴리기를 통해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소재들을 책이나 공연, 동영상 형태로 제작하여 발표</p>	<p>연 2회 <b>1:1 실시</b></p> <p>(바우처 결제불가)</p> <p>주1회씩 월4회 (회당 40분)</p> <p>***1:5이하</p>
		▶ 활동내용 중 하나의 스토리북을 선정하여 나만의 책 출판식, 꼬마작가들의 전시회	<p>연 2회 (바우처 결제불가)</p>
▶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사전검사(총 2중)를 통해 서비스의 구체적 계획 수립			
② 2단계 : 월별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 종결(종료 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사후검사 의무 실시-총 2중)			

항 목	내 용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li> <li>○ 서비스 집단 규모 1:5 이하 (그룹화는 제공기관 편이에 맞추어 실시)</li> <li>○ 사전·사후 검사 (총 2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li> <li>-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li> <li>☞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li> </ul> </li> <li>○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u>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li>-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상태·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u>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u></li> </ul> </li> <li>○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u>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u>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li> <li>○ 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u>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u></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 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u> 할 수 없음.</li> </ul> </li> <li>○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이용자·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 (연 2회이상)</li> <li>○ <b>기타 세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li> </ul>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li> <li>- 시설 인근 50m 이내에 청소년유해업소가 위치한 경우, '유해업소에 대한 이용아동보호대책안' 수립 필수 (사업별서식 제4호 참고)</li> </ul> </li> <li>○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li> </ul>

## 23 사회성증진을 위한 또래교실(시·군·구 자체개발) / 사업코드 210305

항 목	내 용									
목 적	사회성발달이 지연된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성 그룹활동을 통해 사회성기술과 사회적 감정기술을 향상 시켜 사회성을 증진하고 사회적일반화를 할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마추출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X	X	X	X	X	○	X	X	X	X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만 5세(2017년생) 이상 ~ 만 8세(2014년생) 이하 아동 (*연령:2014.01.01. ~ 2017.12.31.)								
	선정기준	<p>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발달장애 진단을 받은 의사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발달장애) 소지자 (의사진단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증빙)</p> <p>②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로부터 발달검사·사회성검사를 받아 사회성발달지연 소견을 받은 아동(자격증 사본 동봉-21년 2월 수정)</p> <p>③ 다음 자격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사회성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아동</p> <p>㉠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p> <p>㉡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p> <p>㉢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p>								
	유의사항	<p>□ 단, ①~③의 경우 전문가가 병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심리상담 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함. (21년 추가)</p> <p>□ “자격기본법”에 의한 ‘방과후지도’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의 추천서는 인정될 수 없음에 유의</p> <p>□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 권이 해지될 수 있음.)</p>								
	우선순위	<p>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p>2. 사회성증진을 위한 또래교실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p>								
	중복제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참좋은카드, 자녀언어발달사업(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p>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p> <p>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p> <p>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p> <p>④국민행복카드 발급 관련</p> <p>㉠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p> <p>㉡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p> <p>⑤-1. '선정기준①'과 관련하여 다음 중 택1하여 제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 진단서(발달장애)</p>									

항 목	내 용												
	<p>-장애인등록증(발달장애)</p> <p>⑤-2. '선정기준②'와 관련하여 다음 중 <b>택1</b>하여 제출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소견서(사회성발달 지연)와 자격증 사본</p> <p>⑤-3. '선정기준③'과 관련하여 다음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6개월이내 발급받은 <b>추천서</b> 제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보건교사 -“유아교육법” 제22조에 의한 유치원장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p> <p><b>*** ⑤-1, ⑤-2, ⑤-3 중 해당하는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됨.</b></p> <p>※ 추천서 “사업별서식 제18호” 활용</p>												
<p>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p>	<p>▶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b>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04 837 1474 1093"> <tr> <td data-bbox="304 837 480 1093"> <p>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p> </td> <td data-bbox="480 837 1474 1093"> <p><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td> </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304 1122 1474 1720"> <tr> <td data-bbox="304 1122 480 1720"> <p>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p> </td> <td data-bbox="480 1122 1474 1720"> <p>○ 발달검사 및 사회성검사 제공인력 -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p> <p>○ 사회성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제공인력 : 다음 ①,②에 해당하는 제공인력을 <b>모두 갖추어야 함 (선택X)</b></p> <p>①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로서 자격취득 이후 언어재활(심리 또는 상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② 특수체육학 전공 학사학위 이상인면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심리운동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민간자격 취득 이후 심리운동 제공경력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경력은 자격 및 학위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 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i.or.kr">pqi.or.kr</a>(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조회바람</p> </td> </tr> </table>	<p>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p>	<p><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p>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p>	<p>○ 발달검사 및 사회성검사 제공인력 -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p> <p>○ 사회성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제공인력 : 다음 ①,②에 해당하는 제공인력을 <b>모두 갖추어야 함 (선택X)</b></p> <p>①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로서 자격취득 이후 언어재활(심리 또는 상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② 특수체육학 전공 학사학위 이상인면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심리운동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민간자격 취득 이후 심리운동 제공경력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경력은 자격 및 학위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 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i.or.kr">pqi.or.kr</a>(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조회바람</p>								
<p>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p>	<p><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p>제공인력 기준 (모두 충족)</p>	<p>○ 발달검사 및 사회성검사 제공인력 - “국가기술자격법” 제13조에 의한 임상심리사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17조에 의한 정신건강임상심리사</p> <p>○ 사회성프로그램 및 부모교육 제공인력 : 다음 ①,②에 해당하는 제공인력을 <b>모두 갖추어야 함 (선택X)</b></p> <p>①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 2에 따른 언어재활사로서 자격취득 이후 언어재활(심리 또는 상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자</p> <p>② 특수체육학 전공 학사학위 이상인면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심리운동 관련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있고, 민간자격 취득 이후 심리운동 제공경력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함)</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경력은 자격 및 학위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 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 인정가능한 민간자격은 <a href="http://pqi.or.kr">pqi.or.kr</a>(민간자격정보서비스) 에서 조회바람</p>												
<p>서비스 가격/ 제공기간</p>	<p>▶ 월 16만원 (정부지원 70~90% / 본인부담 10~30%)</p> <table border="1" data-bbox="459 1809 1461 1973"> <thead> <tr> <th data-bbox="459 1809 592 1883">구분</th> <th data-bbox="592 1809 858 1883">(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th> <th data-bbox="858 1809 1209 1883">(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h data-bbox="1209 1809 1461 1883">(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59 1883 592 1928">정부지원금</td> <td data-bbox="592 1883 858 1928">144,000원(90%)</td> <td data-bbox="858 1883 1209 1928">128,000원(80%)</td> <td data-bbox="1209 1883 1461 1928">112,000원(70%)</td> </tr> <tr> <td data-bbox="459 1928 592 1973">본인부담금</td> <td data-bbox="592 1928 858 1973">16,000원(10%)</td> <td data-bbox="858 1928 1209 1973">32,000원(20%)</td> <td data-bbox="1209 1928 1461 1973">48,000원(30%)</td> </tr> </tbody> </table>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90%)	128,000원(80%)	112,000원(70%)	본인부담금	16,000원(10%)	32,000원(20%)	48,000원(3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2등급) 중위소득 12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3등급)중위소득 120%초과 ~ 14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90%)	128,000원(80%)	112,000원(70%)										
본인부담금	16,000원(10%)	32,000원(20%)	48,000원(30%)										

항 목	내 용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1등급:36,000원씩 / 2등급:32,000원씩 / 3등급:28,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등급:4,000원씩 / 2등급:8,000원씩 / 3등급:12,000원씩 산정</p>
이용자별 제공기간	12개월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u>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u>		
	구분	서비스 내용	
	기본 서비스	▷ 발달검사 및 사회성검사 : 이용자의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 실시 및 상담 → 검사결과지 별도첨부	연 2회 (회당 60분이상) ***1:1실시
		▷ 사회성프로그램 · 사회성 규칙, 행동조절, 사회성증진 관련 집단 프로그램 제공 ※ 상담일지 별도 작성 (필수)	주 1회씩 월 4회 (회당60분) ***1:4이하
▷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 부모 대상 집단교육 실시(실시방법 자율) · 아동에 대한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부모상담 병행 가능(필요시) ※ 상담일지 별도 작성(필수)		연 2회 <b>(바우처 결제불가)</b>	
▶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개인육구 파악 후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사전검사 ② 2단계 : 사회성 증진 서비스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이용만족도조사 실시, 사후검사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
	○ 서비스 집단규모는 1:4 이하 - 제공인력 1명 당 이용자 최대 4명까지 제공가능
	○ 사전·사후 검사(발달검사 및 사회성검사) - <b>1:1 실시</b> -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 -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 -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
	(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2회기 중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주 2회기 중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
○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와 상담일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 -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 -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아동에 대한 상태·평가, 부모 전달사항은 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사회성프로그램, 부모교육 및 상담 모두 상담일지 별도 작성)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결제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b>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b>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li> <li>○ <b>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u>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u></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 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li> </ul> </li> <li>○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li> <li>○ <b>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li> </ul>
<p>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li> </ul> </li> <li>○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b>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u>서비스 내용</u>'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li> </ul>

## ㉔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프로그램(시·군·구 자체개발) / 사업코드 210405

항 목	내 용																			
목 적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그룹형 사회성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상호작용을 향상시켜 사회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마추출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용진군										
	X	X	X	X	○	X	X	X	X	X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서비스 대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소득</td> <td>기준중위소득 140% 이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연령</td> <td>만 18세(2004년생) 이상 (*연령 : ~2004.12.31.)</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선정기준</td> <td>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발달장애인을 뜻함.</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우선순위</td> <td>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프로그램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유의사항</td> <td>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td> </tr> </table>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만 18세(2004년생) 이상 (*연령 : ~2004.12.31.)	선정기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발달장애인을 뜻함.	우선순위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프로그램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만 18세(2004년생) 이상 (*연령 : ~2004.12.31.)																			
선정기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한 발달장애인을 뜻함.																			
우선순위	1.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2.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사회성프로그램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유의사항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부터) ⑤장애인등록증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b>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b> 되어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b>시설/장비 기준</b> (모두 충족)                         </td> <td>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td> </tr> </table>										<b>시설/장비 기준</b> (모두 충족)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b>시설/장비 기준</b> (모두 충족)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3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다음 페이지에 계속																			

항 목	내 용
-----	-----

<b>제공인력 기준</b>	<p><b>다음 ①,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b></p> <p>①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관련 학사이상 전공자로서 다음 경력 중 한 가지를 증빙할 수 있는 자</p> <p>㉠ 학위취득 이후 발달장애인 대상 재활프로그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 학위취득 이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재활프로그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②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자격취득 이후 발달장애인 대상 재활프로그램 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경력은 학위 및 자격취득 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	--

<b>서비스 가격/ 제공기간</b>	<p>▶ 월 20만원 (정부지원 80~90% / 본인부담 10~20%)</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40%;">(1등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th> <th style="width: 45%;">(2등급)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td> <td>180,000원(90%)</td> <td>160,000원(80%)</td> </tr> <tr> <td>본인부담금</td> <td>20,000원(10%)</td> <td>40,000원(20%)</td> </tr> </tbody> </table>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구분	(1등급)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2등급)기준중위소득 140%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닌 자							
	정부지원금	180,000원(90%)	160,000원(80%)							
본인부담금	20,000원(10%)	40,000원(20%)								
<p>▶ 회차별 금액</p> <p>[정부지원금] 1등급:45,000원씩 / 2등급:40,000원씩 산정</p> <p>[본인부담금] 1등급:5,000원씩 / 2등급:10,000원씩 산정</p>										
<p><b>이용자별 제공기간</b></p> <p>12개월</p>										

<b>서비스 내용/ 제공절차</b>	▶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		
	<b>구 분</b>	<b>서비스 내용</b>	
	<b>기본서비스</b>	<p>1. 사전사후검사 : 총 2종 실시</p> <p>- 발달 및 사회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성숙도 검사, 그림검사, 사회성기술검사 등 선택하여 실시</p> <p>→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p>	<p><b>연 2회</b> (회당 60분) *집단규모 1:1</p>
		<p>2. 집단 사회성프로그램 실시</p> <p>- 미술, 음악 심리재활 등을 통한 사회성프로그램 제공</p> <p>- 문제행동 조절능력과 자기의사표현능력을 향상시키고 집단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 증진 도모</p> <p>→ 상담일지 별도첨부</p>	<p><b>주 1회씩</b> <b>월 4회</b> (회당 120분) *집단규모 1:4이하</p>
<p>3. 보호자 상담 및 가족상담 실시(요청 시)</p>		<p><b>요청 시</b> (회당 60분) (바우처 결제불가)</p>	
▶ 서비스 제공절차			
<p>① 1단계: 체계적인 평가·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사전검사 2종 의무 실시)</p> <p>② 2단계: 선정된 대상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 또는 혼합하여 서비스 제공</p> <p>③ 3단계: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재육구조사(사후검사 2종 의무 실시)</p>			

항 목	내 용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li> <li>○ 서비스 집단규모 1: 4 이하(단, 사전사후검사는 1:1로 실시)</li> <li>○ 사전·사후 검사 : 2종 이상 실시(사회성숙도 검사, 그림검사, 사회성기술검사 등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li> <li>-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li> <li>↳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li> <li>- 제공기관에서 직접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주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p> </div> </li> <li>○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li>- 서비스 세부 내용 및 이용자에 대한 상태·평가, 보호자 전달사항은 <b>상담일지 별도 작성 후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b></li> </ul> </li> <li>○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b>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b>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 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li> <li>○ 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b>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b></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 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 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익월 말까지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연달아서 할 수 없음.</b></li> </ul> </li> <li>○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li> <li>○ <b>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li> </ul>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 전체에 대한 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총 2종) 가입 필수 (대인/대물 보상)</li> </ul> </li> <li>○ 제공기관 등록 시,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서비스 내용'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li> </ul>

## Ⅳ 어르신 관절건강지킴 프로그램 (사·군·구 자체개발) / 사업코드 200405

항 목	내 용									
목 적	노인성 관절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체력향상 도모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마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X	X	X	X	X	X	○	X	X	X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및 선정기준	다음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만65세(1957년생) 이상인 자(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제외) (*연령 : ~1957.12.31.) ② 6개월 이내에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서비스 연계를 의뢰받은 자 (※추천공문 제출) ☞ 우선 선정 대상이며, 선정 결과를 담당자에게 알림								
	우선순위	1.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2. 신청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3. 어르신 관절건강지킴 프로그램을 생애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								
	중복제한	노인수중운동교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유의사항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 부터) ⑤[우선 선정]우선순위선정에 따른 필요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료급여 사례관리 연계 추천공문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b>기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추가확보시설 활용 불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 69.3㎡이상 전용공간 마련 필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li>■ 2019년도 추가 : 집단규모에 따른 적절한 전용공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공간(프로그램실) 1개실 면적이 69.3㎡이상이어야 함.</li> <li>- '19 신규 등록제공기관부터 적용</li> <li>- 기존 등록제공기관이 주소지 이전하는 경우 해당사항 적용됨</li> </ul> </li> </ul>								

항 목	내 용									
	<b>제공인력 기준</b> (모두 충족)	<p>다음 ①,②,③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p> <p>①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9조에 따른 생활스포츠지도사(태권도) 또는 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자격소지자로서 자격취득 이후 노인대상 태권도 제공경력이 1년이상인 자 ***태권도 이외의 자격종목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②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9조의 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태권도) 자격소지자로서 자격취득 이후 노인대상 태권도 제공경력이 1년이상인 자 ***태권도 이외의 자격종목은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p>③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학위 취득 이후 노인 대상 태권도 지도 경력이 1년 이상인 자</p> <p>※경력은 자격 및 학위 취득이후 근로계약체결하여 제공한 경력만 인정되며 인턴활동, 자원봉사 등의 경력을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p>								
<b>서비스 가격/ 제공기간</b>	<b>서비스 가격</b>  <b>이용자별 제공기간</b>	<p>▶ 월 12만원 [정부지원금] 108,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p> <p>▶ 회차별 금액 [정부지원금] 9,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000원씩 산정</p> <p>12개월</p>								
<b>서비스 내용/ 제공절차</b>	<p>▶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p> <table border="1" data-bbox="320 1211 1461 1570"> <thead> <tr> <th>구 분</th> <th>서비스 내용</th> <th>서비스 횟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기본서비스</td> <td>1. 사전사후검사 :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건강상태 점검 - 전체 이용자별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td> <td>분기 1회 (회당 60분)</td> </tr> <tr> <td>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맨손 또는 기구를 활용한 관절건강 기능향상 운동프로그램 제공</td> <td>주 3회씩 월 12회 (회당 90분)</td> </tr> </tbody> </table> <p>※ 1회 90분 내 준비 운동 및 정리 운동 시간 포함</p> <p>▶ 서비스 제공절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1단계 : 이용자의 욕구파악</li> <li>② 2단계 : 기초체력 및 체성분검사 실시 및 상담 (사전검사 실시)</li> <li>③ 3단계 : 개인별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li> <li>④ 4단계 : 개인별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li> <li>⑤ 5단계 : 사후관리 (사후검사 실시)</li> </ol>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1. 사전사후검사 :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건강상태 점검 - 전체 이용자별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분기 1회 (회당 60분)	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맨손 또는 기구를 활용한 관절건강 기능향상 운동프로그램 제공	주 3회씩 월 12회 (회당 90분)
구 분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기본서비스	1. 사전사후검사 :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건강상태 점검 - 전체 이용자별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 검사결과지 및 상담일지 별도첨부	분기 1회 (회당 60분)								
	2.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맨손 또는 기구를 활용한 관절건강 기능향상 운동프로그램 제공	주 3회씩 월 12회 (회당 90분)								
<b>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b>	<p>○ 서비스 형태 : 기관방문형</p> <p>○ 서비스 집단규모 1: 20 이하</p>									

항 목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전·사후 검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li> <li>-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li> <li>☞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li> </ul> </li> <li>○ <b>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 (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li>- <u>분기별 기초체력검사 및 체성분검사 등 건강상태점검 기록내용, 검사결과지</u> 제공기록지와 함께 보관</li> </ul> </li> <li>○ <b>결제방법</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u>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u>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li> <li>○ <b>보강 실시 방법(21년 2월 변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미제공일(결석일)이 포함되어 있는 주 내에서 자유롭게 보강 가능하나, <u>전 주 또는 그 이전으로 앞당겨서 실시할 수는 없음.</u></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예) 2월 둘째 주 목요일에 이용하기로한 이용자가 결석하여 보강해야 하는 경우  → 2월 둘째 주 월, 화, 수요일에도 보강이 가능하고 그 이후 시점에 자유롭게 보강일 지정 가능(단, 2월 첫째 주 또는 그 이전에 앞당겨서 할 수는 없음.)</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익월 말까지</u> 가능하고, 기존 제공요일에 <u>연달아서 할 수 없음.</u></li> </ul> </li> <li>○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li> <li>○ <b>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li> </ul>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및 서비스 제공장소에 대한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인/대물 보상)</li> </ul> </li> <li>○ 제공기관 등록 시, <u>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u>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u>서비스 내용</u>'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li> </ul>

## ㉔ 돌봄틈새제로서비스 (시·군·구 자체개발) / 사업코드 990405

항 목	내 용									
목 적	돌봄의 사각지대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서비스 실시지역	중구	동구	마추출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옹진군
	X	X	X	X	X	○	X	X	X	X
※ 제공기관/이용자의 유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서비스 대상	소득 및 연령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18세(2004년생)이상 (*연령:~2004.12.31.)								
	선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외자이면서 최근 6개월 이내에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5에 따른 사회복지관 소속 사례관리 담당자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단, 한 가구 당 1인 대표로만 신청가능함. (21년 7월 변경)								
	우선 순위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1인 가구								
	중복제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유의사항	병원 진료 대상자, 요양급여 서비스 대상자는 동시간대 서비스 실시 불가 (병원 입원 대상자는 퇴원 후에 서비스 제공. 단, 2개월 이상 미이용 시 이용권이 해지될 수 있음.)								
이용자 신청 구비서류	①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동의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④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만 75세이상은 이용자 희망 시, '사회서비스 전용카드' 발급가능 ('17. 8. 9.부터) ⑤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추천서(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소속 사례관리 담당자 작성) ※ 추천서 "사업별서식 제18호" 활용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기준	▶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등록 및 유지되어야 함.									
	시설/장비 기준 (모두 충족)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서비스 제공역량을 갖춘 부평구 소재 사회적 경제조직에 한함 재가방문형 시설기준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실 : 기본적으로 공통장비를 갖추고 기관장&amp;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이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함.(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면적이라면 등록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 유의)</li> <li>▪ 기타 설비, 비품 구비 필수</li> </ul>								
	제공인력 기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은 참여할 수 없음.								

항 목	내 용				
서비스 가격/ 제공기간	서비스 가격	▶ 월 30만원 [정부지원금] 270,000원 [본인부담금] 30,000원			
		▶ 회차별 금액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최소 이용해야 하는 회차 (2시간 / 회당)</th> <th style="width: 50%;">최소 이용 후, 추가 이용하는 경우 (2시간+<math>\alpha</math> / 시간당)</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 27,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3,000원씩 산정</td> <td>[정부지원금] 13,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500원씩 산정</td> </tr> </tbody> </table>	최소 이용해야 하는 회차 (2시간 / 회당)	최소 이용 후, 추가 이용하는 경우 (2시간+ $\alpha$ / 시간당)	[정부지원금] 27,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3,000원씩 산정
최소 이용해야 하는 회차 (2시간 / 회당)	최소 이용 후, 추가 이용하는 경우 (2시간+ $\alpha$ / 시간당)				
[정부지원금] 27,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3,000원씩 산정	[정부지원금] 13,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500원씩 산정				
이용자별 제공기간	6개월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22년 1월 변경)	▶ 서비스 내용 : 모든 서비스는 아래 내용에 준하여 실시되어야 함.		
	○ 증상과 기능수준과 욕구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제공		
	구분	서비스 종류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 사 및 상담	▶ 이용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도구 <b>2종</b> 실시 - 삶의 만족도 척도 - 자기효능감 척도  <b>→ 검사결과지 별도첨부</b>	연 2회
	기 본 서비스  증상에 따른 개입서비스	<b>※사전·사후 검사 및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상태를 파악 하여 제공</b>  ▶ 신체 수발지원 : 목욕 등 신체청결, 배설관리, 옷 갈아입히기, 식사도움 ▶ 건강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감염예방, 복약돕기, 안전관리 ▶ 가사지원 : 청소, 세탁, 취사 및 장보기, 양육보조 ▶ 사회적응 및 취업지원 : 외출동행, 정서지원, 응급상황대응, 관공서 등 업무대행	월 10회 (회당 최소 2시간, 최대 월 20시간 한도)  <b>*2시간 초과 시, 1시간 단위로 추가 이용 가능</b>
<b>☞ 월 한도 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 계약 이전의 미사용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음.(해당 사업 예외 적용) - 22년 1월 추가</b>			
	▶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욕구사정을 통해 서비스의 구체적 계획 수립(시작 시 사전검사 2종 의무 실시) ② 2단계 : 개인별 증상이나 기능의 수준에 따라 개입서비스를 선별·혼합하여 제공 ③ 3단계 : 서비스 성과 및 만족도 등을 측정함(종료시 사후검사 2종 의무 실시)		

항 목	내 용					
서비스제공 관련 유의사항 <b>(22년 1월            변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형태 : 재가방문형</li> <li>○ 서비스 집단 규모 1:1 (제공인력 1명당 1명의 이용자에 서비스 제공)</li> <li>○ 월 한도 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 계약 이전의 미사용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음.(해당 사업 예외 적용) - <b>22년 1월 추가</b></li> <li>○ 회당 최소 2시간 이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1시간 단위로 추가 이용 가능 (21년 7월 변경)            → '서비스 가격' 산정 시 회당 기준과 시간당 기준을 각각 구분해야 함에 유의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width: 8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최소 이용해야 하는 회차 (2시간 / 회당)</th> <th style="text-align: center;">최소 이용 후, 추가 이용하는 경우 (2시간+α / 시간당)</th> </tr> </thead> <tbody> <tr> <td>[정부지원금] 27,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3,000원씩 산정</td> <td>[정부지원금] 13,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500원씩 산정</td> </tr> </tbody> </table> </li> <li>○ 기본서비스 실시 관련 사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사업별서식 제17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록지는 서비스 시간, 주요 내용, 이용자 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 등을 기록</li> <li>- <b>이용자, 제공인력 모두 매회차마다 정자체로 서명해야 함</b></li> </ul> </li> <li>○ 결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지원금 : 매회 서비스 종료 직후, <b>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b>이 직접 결제</li> <li>- 본인부담금 : 이용하기로한 월말까지 이용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이용분은 회당 금액으로 나누어 환급 조치</li> </ul> </li> <li>○ 사전·사후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서비스를 통한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한 의무사항임.</li> <li>- 사전검사 : 서비스 시작월 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 실시                ☞ 결과지 이용자 배부 및 제공기관 보관</li> <li>- 검사도구 : 삶의 만족도 척도, 자기효능감 척도 총 2종 실시</li> <li>- <b>검사와 함께 이용자의 신뢰관계 형성 및 증상의 정도와 기능수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욕구 등 파악</b></li> <li>- 제공기관에서 <b>직접</b>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b>첫 회기와 마지막 회기 각 1회씩</b> 바우처 결제 가능            (단, 보건소 등 외부 타 기관에서 실시한 경우는 결제할 수 없음)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width: 8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주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td> </tr> </table> </li> </ul> </li> <li>○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보호자 등)와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이행(연 2회이상)</li> <li>○ <b>그 외 제공기관 운영규정은 '제공기관용 운영매뉴얼' 참고하여 서비스 제공바람</b></li> </ul>	최소 이용해야 하는 회차 (2시간 / 회당)	최소 이용 후, 추가 이용하는 경우 (2시간+α / 시간당)	[정부지원금] 27,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3,000원씩 산정	[정부지원금] 13,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500원씩 산정	(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주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
	최소 이용해야 하는 회차 (2시간 / 회당)	최소 이용 후, 추가 이용하는 경우 (2시간+α / 시간당)				
	[정부지원금] 27,0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3,000원씩 산정	[정부지원금] 13,500원씩 산정 [본인부담금] 1,500원씩 산정				
	(예) 2월부터 시작하는 이용자 ▶ 2월 첫째주 1회기와 다음해 1월 마지막째주 1회기에 기관 내에서 사전사후검사 및 해석·상담활동을 진행한 후, 바우처 결제를 할 수 있음.					

항 목	내 용
기타 제공기관 등록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비스 제공 관련 안전보험가입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공기관(사무실)에 대한 화재보험 (대인/대물 보상)</li> <li>- 이용자 자택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보장범위 등에 유의) (대인/대물 보상)</li> </ul> </li>   <li>○ 제공기관 등록 시, <b>세부 개입서비스 내용을 포함한</b> 연간 서비스 제공 매뉴얼 제출 (사업별서식 제6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기별 서비스 진행 절차, 서비스 내용, 검사 도구 등 포함하여 작성·제출</li> <li>- '서비스내용/제공절차'에 명시된 '<u>서비스 내용</u>'을 모두 반영하여 작성</li> </ul> </li>   <li>○ 제공기관 등록 시, 사회적경제조직 증빙서류(인증서, 지정서 등) 제출(21년 7월 추가)</li> </ul>

# 제 4 장

## 붙임문서

---

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통서식

---

II.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별 서식

---

[공통서식 제1호] 2022. 1. 변경

■ 사회복지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개정 2022.1.1>

(3쪽 중 1쪽)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 14일  
(첫만남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동거여부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장명	전화번호 (집/직장)
※ 배우자 관계 ( [ ] 법률혼 [ ] 사실혼 [ ] 사실상 이혼 )							
본인부담금 환급계좌	성명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제출처	사회보장급여 내용							
	[ ]보육료지원 • 유아학비지원 * 영아수당(보육료) 지원 포함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 어린이집(0~2세) 기본([ ]장애 [ ]다문화) [ ] 어린이집(0~2세) 연장 [ ] 어린이집 방과후 [ ] 어린이집(3~5세)([ ]장애 [ ]다문화) [ ] 장애아 보육료(6~12세) [ ] 유치원 유아학비(3~5세)([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0-2세)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만 0-1세 아동은 영아수당(보육료) 자격으로, 어린이집(0-2세)로 신청하면 됩니다.							
	[ ]기간병방문지원	지원대상자	신청요건(1개 선택)					서비스시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중증질환자 [ ] 희귀난치성질환자 [ ] 소년소녀가정 [ ] 월 24시간 [ ] 조손가정 [ ]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 ] 월 27시간 [ ]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 월 40시간					
	[ ]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지원대상자	장애 유형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 ] 미등록 (영유아)			
		장애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미등록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재활 [ ] 청능재활 [ ] 미술심리재활 [ ] 음악재활 [ ] 행동재활 [ ] 놀이심리재활 [ ] 재활심리 [ ] 감각발달재활 [ ] 운동발달재활 [ ] 심리운동 [ ] 기타( )						
[ ] 발달장애 인 부모 상담 지원	언어발달 지원 (비장애아동)	지원대상자	필요서비스 (중복 체크가능)	[ ] 언어발달진단 [ ] 언어재활 [ ] 기타 ( )				
		장애 유형	[ ] 뇌병변장애 [ ] 청각장애 [ ] 시각장애 [ ] 언어장애 [ ] 지적장애 [ ] 자폐성장애 (부모 또는 조부모)					
[ ] 발달장애 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	발달장애 인 부모 상담 지원	지원대상자	자녀와의 관계	[ ] 부 [ ] 모 [ ] 기타( )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 유형	장애 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 유형 및 정도	장애 유형	장애 정도	[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원 유형	[ ] 주간활동서비스 ([ ] 단축형 [ ] 기본형 [ ] 확장형) ※ 기본형/확장형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 [ ] 방과후활동서비스						
[ ] 지역사회 서비스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지원대상자		서비스명					
[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물품지원	지원대상자		지원신청	청소년본인 또는 부모, 주양육자 신청가능				
	지원대상자							

[ ]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자			
	긴급활동지원	[ ] 해당 (※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활동지원급여	신청유형	[ ] 신규신청 [ ] 변경신청 [ ] 갱신신청 [ ] 노인장기요양전환자 지원	
		변경신청 사유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장애상태의 변화	[ ] 학교생활
[ ] 직장생활			[ ] 취약가구	
[ ] 독거(1인)가구 (19세 이상)			[ ] 거주지 이전	
[ ]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 ] 조손가정 (19세 미만)			
	[ ] 한부모가정 (19세 미만)	[ ] 기타		
특별지원급여	[ ] 출산 [ ] 자립준비 [ ] 보호자일시부재([ ] 결혼 [ ] 사망 [ ] 출산 [ ] 입원 [ ] 지역사회보호자) (※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			
[ ]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자	출생정보	[ ] 국외출생 [ ] 복수국적	
	지급방식	[ ] 바우처(원칙) [ ] 현금(시설보호 아동일 경우) [ ] 지역화폐(조례로 정하는 경우)		
	카드정보 (국민행복카드)	보호자(카드 보유자)		
		[ ] BC(은행) [ ] 삼성 [ ] 롯데 [ ] KB국민 [ ] 신한		
※ 유의사항 - 신규신청자의 경우,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BC카드를 선택한 경우)를 선택합니다 -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				
보 건 소	지원대상자	출산(예정)일	년 월 일	
	지원 유형	[ ] 단태아([ ] 첫째아 [ ] 둘째아 [ ] 셋째아 이상), [ ] 쌍생아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단태아([ ] 인력1명 [ ] 인력2명) [ ] 삼태아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다태아		
	신청요건	기본 지원대상	[ ] 자격확인(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 ] 소득기준 이하	
		예외 지원 대상 (해당자만)	[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 ]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 ] 새터민 산모 [ ] 결혼이민 가정 [ ] 미혼모 산모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분만 취약지 산모 [ ] 기타(소득기준 완화 등)	
	서비스 제공 장소	[ ] 자택 [ ] 기타		
보건 소·주민 센터	지원대상자			
	지원 유형 (중복 체크 가능,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 가능)	기본지원대상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예외지원대상 (지자체자체 사업)	[ ] 기저귀([ ] 국기초 [ ] 차상위 [ ] 한부모 [ ] 기타) [ ] 조제분유([ ] 산모의 사망·질병 [ ]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 ] 기타)	
	서비스 제공 장소	[ ] 자택 [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확인 (√ 체크)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 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보육료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유아학비지원의 경우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유의 사항** 확인 (√ 체크)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공통서식 제2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8.1.1.)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발급 대상자	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미성년자 발급동의서	① 징구 ② 미징구 ※ 만14세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신청 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재발급사유	<input type="checkbox"/> 분실 <input type="checkbox"/> 훼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

카드 수령지	수령인	<input type="checkbox"/> 발급대상자 <input type="checkbox"/> 보호자(가족 등)	대상자와의 관계 : ※ 수령자가 보호자인 경우 기재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수령지	① 자택 ② 직장 ③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자택, 직장,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		
	자택	□□□□□	전화번호	-
	직장	□□□□□	전화번호	

본인 부담금 환급 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대상사업 :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주간보호·단기가사),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지원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신청대상** : 만14세미만 아동, 만75세이상 노인, 노인단기가사서비스 대상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중 발달장애인(지적·자폐), 지역사회서비스 대상자 중 정신건강 토탈케어, 장애인·노인 돌봄여행, 치매환자 가족여행

- 전자이용권(바우처) 사업 서비스 대상자(본인) 명의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
- 이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통서식 제4호]**

■ 사업운영 자체 서식 (적용 2016.11.30.)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카드발급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법정대리인	성명(한글)			
	생년월일		연락처	-

상기 본인(법정대리인)은 카드 발급 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

**안내 및 유의사항**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공통서식 제5호]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시·군·구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00년 00월 00일 신청하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000000사업)이용 시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동 사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1.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카드, 전자카드 포함)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에게 판매 대여하거나 그 권리를 이전하여서는 안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때에 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 사회서비스를 대신하여 대가성이 있는 금전 등 어떠한 물품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회당결제 방식(예외,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자살위험군예방서비스, 저소득 건강관리서비스)에 따라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당일 반드시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바우처카드 미소지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3. **1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의 미납** 또는 2개월이상 바우처 결제실적이 없는 경우(서비스 미이용)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타 군구 및 타 지역으로 전출시, 기존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역에서 재심사·선정되어야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아울러 제공인력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부당한 해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서비스 이용자격이 상실되고, 관련법에 따른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0000서비스) 신청인(또는 대리인) ( )는 위의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안내 받았으며 동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